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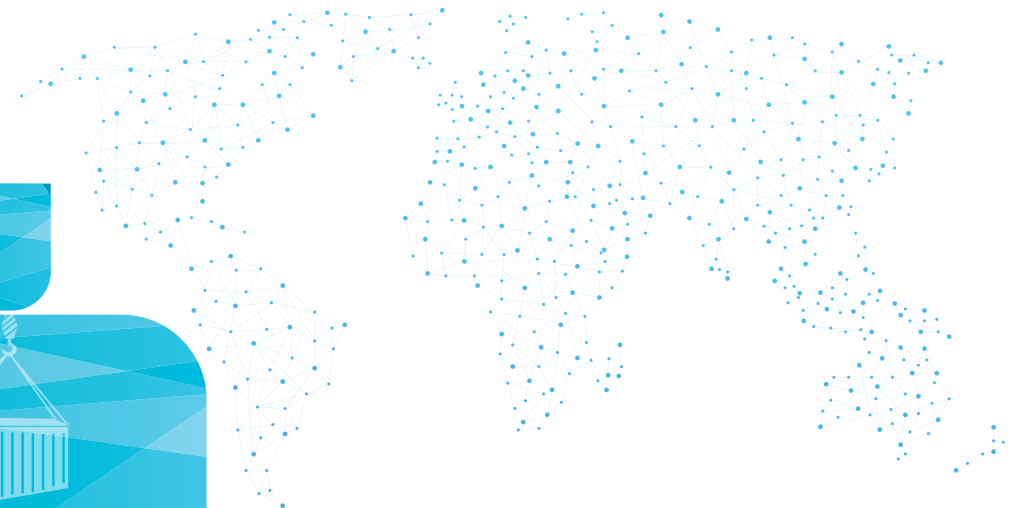
11-1613000-001179-14

www.molit.go.kr

2018

물류정책 업무편람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목 차

제1장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원	3
2. 기능 및 사무분장	4
3. 예산 현황	8
4. 소관 법령	9
5. 위원회	10
6. 관련단체	14

제2장 주요업무내용

1. 물류정책일반	21
가. 물류와 물류정책	21
나. 국가물류기본계획	29
2.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35
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35
나.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46
다. 공동물류지원사업	48
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49
마. 국제물류주선업 지원	50
3. 녹색물류 확산	52
가. 친환경 물류기업 지원	52
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53
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운영	55
라. 녹색물류협의기구 운영	57
4. 물류전문인력 양성	58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58
나.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61

5. 국제물류협력	63
가. 물류환경 변화와 국가간 협력	63
나. 한·중 교통물류협력회의	66
다. 복합일관수송	67
6. 물류시설 확충	70
가. 물류단지의 건설	70
나. 내륙물류기지	81
7.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93
가. 물류표준화	93
나. 물류정보화	105
8. 육상운송 관리	110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10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제도	113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	121
라.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124
마. 화물운송사업의 차고지	127
바. 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제도	131
사. 적재물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133
아. 화물자동차의 운임제도 변천과정	138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예정	139
차.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	140
카.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제도	143
타. 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	147
파. 기타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150

※ <별첨> 물류정책 주요통계

제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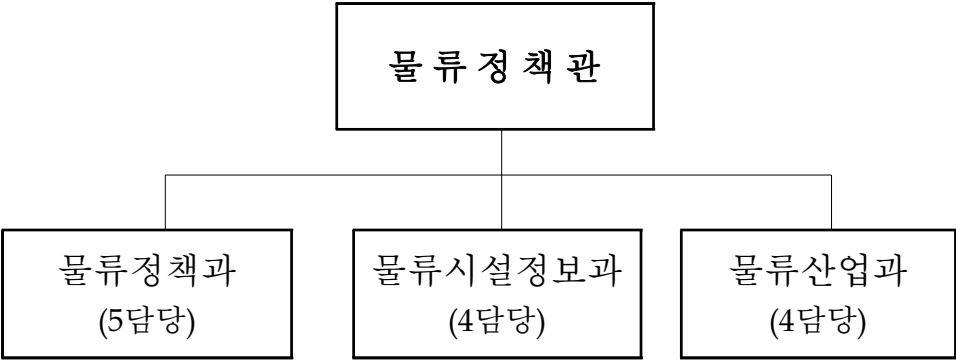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 1정책관 3과



나. 현원 (정원/현원 : 26/31명)

과 별	계	고공단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사무운영
합 계	26/31	1/1	1/2	2/1	4/0	9/12	7/9	1/4	1/2
물류정책과	11/13	1/1	1/1	0/0	2/0	4/5	2/3	1/1	0/2
물류시설정보과	7/8		0/1	1/0	1/0	2/3	2/3	0/1	1/0
물류산업과	8/10			1/1	1/0	3/4	3/4	0/1	

2. 기능 및 사무분장

가. 주요임무 및 역할



나. 기능 및 사무분장

물류정책과

사 무 명	담 당
1. 서무총괄(회의자료 등) 2. 예산 및 결산 3. 성과관리(BSC, 성과관리 시행계획)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운영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6. 물류제도 개선 총괄 7. 법안총괄 8. 녹색물류정책 총괄	행정사무관 선기운 시설주사 김중수
1. 물류정책 총괄 2. 국회 총괄 3.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물류시장 공생발전 정책 발굴 5. 회의준비(안전발굴 등) 6. 간부행사 자료 작성	시설사무관 최용현 행정주사 강미순
1.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및 활성화 2. 공동물류지원사업 및 활성화 3. 물류스타트업 육성 지원업무 4. 물류비 등 물류현황조사 등	행정사무관 백병성
1. 물류정책기본법 운영 2.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및 육성 3. 규제총괄 4.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 5. 우수물류기업인증제 운영 6.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관 업무 * 녹색물류 정책 총괄보조(신성일)	시설사무관 박형렬 시설주사 신성일
1. 양자·다자간 물류 국제협력 2. 한·중·일 복합운송체계 구축 3. 기업 해외진출 지원 4. 물류전문인력양성 5. 물류관리사 시험 관리	행정사무관 박정곤 시설주사보 김영두

물류시설정보과

사 무 명	담 당
1. 국회, 성과관리 등 서무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운용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운영 4. 일반물류터미널 관련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5. 물류인프라 규제개혁업무 총괄 6.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운영 7. 물류분야 R&D 및 고효율 첨단물류장비 기술개발 등	행정사무관 배기훈 행정주사 곽상훈
1.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 2.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3. 내륙물류기지 기반시설(인입철도 등) 건설 지원 4.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예결산 5. 화물분야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평가 6.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예산지원 7. 공영차고지 건설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시설사무관 운영진 전산주사 이현주
1. 물류정보화 총괄 2. 위험물운송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3.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 5. 물류창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RFID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산주사 유승우
1.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위원회 운영 3. 물류단지 및 물류창고 관련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4. 물류창고업 육성·등록 제도개선 5.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예산 지원	행정사무관 김진동 시설주사 심완용

물류산업과

사 무 명	담 당
○ 과 사무(BSC, 성과관리 등) 및 국회·예산자료 총괄 ○ 화물차 안전관련 업무 ○ 화물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정책 개발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화물운수 통계관리 및 체계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	행정사무관 어승복 시설주사 박권필
○ 화물연대에 관한 사항 - 화물연대 동향파악, 요구사항 검토 등 집단행동 예방 및 대응 - 군위탁 화물자동차 투입,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등 비상수송대책 수립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시 위기대응 매뉴얼 따른 조치 - 화물연대 구상권 청구 소송 등 집단운송거부 후속조치 - 군위탁 화물자동차 관리 및 예산지원 ○ 업종체계, 진입제도,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 화물운송 운임·요금 관련 사항 ○ 육상운송 재난 업무 ○ 신고포상제, 콜벤·레커차·퀵서비스 관련	행정사무관 김민선 행정주사 장인선
○ 택배 육성·발전 관련 업무 - 택배차량 공급 및 공급차량 관리 - 택배산업 제도화, 택배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 제도개선 및 운영 -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개선·시행 ○ 화물운송 실적신고시스템 개선·보완 및 운영 ○ 국제 협력 업무 - 도로화물운송 및 쿠파이어서비스 관련 FTA 등 대응 - 국제특송 관련 업무	행정사무관 김대성 전산주사 송영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제·개정 및 운영 업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행정규칙 제·개정 - 법령 유권해석(허가 및 신고, 양도양수·상속 등) - 지방이양업무에 관한사항 및 각종 민원 해석 등 ○ 운송·가맹·주선 운송사업 허가 및 공급기준 ○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및 공T/E충당, 차량 수급조절 ○ 위수탁(지입제), 대폐차(구조변경) 관련 업무 ○ 사업용 화물차 불법 등록·증차·운송 등 행정처분 업무 ○ 이사서비스 개선, 주선(이사) 관련 업무 ○ 자가용 유상운송 및 자가용 사용신고 업무	행정사무관 엄수연 시설주사 박준식 행정주사보 조우철

3.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감		비고
				%	
합 계	32,981	76,289	43,308	131.3	
■ 물류정책	15,285	18,161	2,876	18.8	
-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109	-	△109	-	
- 물류산업지원	2,970	3,010	40	1.3	
· 물류효율화 기반조성 사업	940	940	-	-	
·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1,100	1,100	-	-	
· 우수물류기업육성지원	930	970	40	3.2	
-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540	1,128	588	108.9	
-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확장진입도로	9,420	11,913	2,493	26.5	'18년 종료
- 친환경물류지원(에특)	2,246	2,110	△136	△6.1	
■ 국토교통 정보화	1,251	2,914	1,663	132.9	
- 국가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1,251	1,115	△136	△10.9	
· 국가물류정보망	612	504	△108	△17.6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구축	639	611	△28	△4.4	
- 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799	1,799	-	신규
■ 광역교통정책(지특)	16,445	55,214	38,769	135.7	
- 대중교통지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15,545	55,014	39,469	253.9	
- 대중교통지원 (군산물류단지진입도로 조성)	900	200	△700	△77.8	

4. 소관 법령

가. 총괄현황

법 률 명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 훈령
· 물류정책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물류단지 개발지침 · 물류단지 관리지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 ·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나. 주요내용

법 률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비고
· 물류정책기본법	1991.12.14 (구 화물유통 촉진법)	· 물류현황조사 및 물류기본계획 수립 · 물류시설·장비 확충 및 물류표준화·정보화 · 우수물류기업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관련 단체의 육성, 신기술 개발 및 보급 · 친환경적 물류 및 국제물류의 촉진 · 위험물질운송화물차량 안전관리	· 2007.8.3 전부개정<법명변경>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5.12.29 (구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 물류터미널사업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창고업의 육성 · 창고업 등록제 시행	· 2007.8.3 전부개정<법명변경>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61.12.30 舊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1997.8.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 육상화물운송 관리 및 관련사업의 육성	· 2008.3.21 전부 개정

5. 위원회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설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 구 성 : 총 23 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위 원 : 민간 위촉위원 10 인이내, 당연직위원 12 인
- ※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민간인 위원 임기 : 2년(현 위원 '2016.6.22일 위촉)
- 위원회의 기능 :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제2항)
 -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의장을 겸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위촉기준
 - 물류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 10명이내의 민간위원
- 위원장 :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에 한함)이 임명

○ 기 능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의 공동화·표준화·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국제물류분과위원회>

-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

- 설치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7
- 구 성 : 총 40명
 - 위원장 : 민간위원
 - 위 원 : 민간위원 위촉 39명
- *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회의 기능 : 물류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한 심의기구
 -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심의
 -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의 등
- 위원회 운영
 - 실수요검증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 가능
 - 위원 선정은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위촉기준
 -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회

○ 설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

○ 구 성 : 총 15인~ 30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민간 위촉위원 12인, 당연직위원 3인

※ 당연직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민간인 위원 임기 : 2년(현 위원 '2016.5.18일 위촉)

○ 위원회의 기능 : 녹색물류 정책 심의·조정

※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2항)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제안 및 심의·조정
-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 등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의장을 겸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위촉기준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협회·전문기관·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6. 관련단체

가. 협회

단체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설립 일자	설립 형태	설립근거	비고 (‘17 주요사업)
				설립목적	
한국통합 물류협회 (박근태)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2 금풍빌딩 7층,10층 (www.koila.or.kr) 02-786-6112 (02-712-0611)	’09.7.21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물류선진화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물류관련 현황조사, 연구, 진단,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물류전문인력의 양성·보급, 물류 혁신활동 등에 기여	· 국제물류산업전 개최 · 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 대행 ·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한국국제물류 주산업협회 (김병진)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307호 (www.kiffa.or.kr) 02-733-8000 (02-733-0700)	’70.11.23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 국제물류주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물류주산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 통계 작성·관리 ·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 훈련 · 국제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등
한국파렛트 컨테이너 협회 (이병성)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173 삼창B/D 211호 (http://www.kopal.or.kr) 02-715-1281~2 (02-715-1283)	’96.11.22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 파렛트 사용수준 향상 · 표준 파렛트 보급촉진 · 파렛트 사용자와 이용자의 공동이익 증진	
전국화물 터미널협회 (류귀현)	충북 청주시 지동동 476	’01. 1. 9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 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 하여 물류개선에 기여	

단 체 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설립 일자	설립 형태	설립근거	비고 (‘17 주요사업)
				설립목적	
전국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신한춘)	서울시 서초구 방배 동 753-5 화련빌딩 11층 (02-3477-3131)	‘57.9.20	사단 법인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0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 및 정부시책의 적극 추진을 통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	· 제도개선사업 · 조사연구활동 등
전국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안철진)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 로337가길 70 (02-587-0214)	‘93.3.11	사단 법인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0조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 및 정부시책 적극 추진	· 물류정보화 및 공동차고지 사업 지원 등
전국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전영승)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2가길 7, 2층(방배동, 호정빌딩) (02-572-0808)	‘92.7.3	사단 법인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 및 정부시책 적극 추진	·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 시행 등
전국화물 자동차운송 주선사업 연합회 (장진곤)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5-14 코오롱 에스텐빌딩 706호 (02-2082-8484)	‘93.1.8	사단 법인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 및 정부시책 적극 추진	· 법규 준수에 대한 계도활동 · 국가물류통합 정보망과 연계한 물류컨텐츠 제공
전국화물 차주연합회 (박준식)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 번길 52호 4층 (051-784-9501)	‘93.1.8	사단 법인	민법 32조 · 국가시책 협력 및 회원 상호 협동 공동이익 증진	· 물량 직거래 유치사업 등
전국화물 자동차운송 차주협회 (신행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다락탑연길 306 2층 (043-236-3400)	‘04.2.3	사단 법인	민법 32조 · 국가시책 협력 및 회원 상호 협동 공동이익 증진	

나. 학회·연구원 등(비영리법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및 연락처	설립 일자	설립 형태	설립 근거	비고
				설립 목적	
한국미래물류연구원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홍인오피스텔 2003 042-828-7377 (042-828-7379)	'97.8.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물류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 물류 관련 학술발표, 강연회 개최	· 학술연구
한국물류학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백석대학교 경영학부 이영찬 교수실 (http://klra21.org) 041-550-2440 (041-550-9172)	'04.2.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물류 및 상류, 전자상거래, 마케팅, 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이론적 체계구축 등	· 학술연구 · 학회 개최
녹색물류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 1420호	'08.10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물류와 환경분야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녹색물류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의 실현으로 국가물류정책 발전에 기여	· 학술연구 · 학회 개최
한국물류산업정책 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17 915호	'09.3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선진물류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 법령 및 물류정책의 연구와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물류정책발전에 기여	
한국종합물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1 BYC빌딩 603호 (http://glory.tnaru.com) 070-8233-4430 (0505-344-4443)	'05.5.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해운, 항만, 교통 등 물류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컨설팅 등	· 정책세미나 · 학술지발간
국제물류연구회	경기 안양시 관양동 1608 현대아이스페이스 317호 032-765-0778	'06.9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국제물류분야의 실천성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물류거점 역할 수행방안 모색	· 세미나 · 학술연구용역
한국로지스틱스학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8 산운마을 901-1203	'13.10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로지스틱스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국내 및 국제 학술 대회 개최, 국내외 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 회원사 교육 등 로지스틱스 발전에 기여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및 연락처	설립 일자	설립 형태	설립근거	비고
				설립목적	
물류산업진흥재단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1번지 도원빌딩 901호	'13.12	재단 법인	민법 제32조 중소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연구개발, 학술활동 등을 지원하고, 물류산업계의 유기 적인 상생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	
(사)한국물류관리사협회 (이현선)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68-29 창성빌딩 405호	'00.4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한국공인물류관리사의 권인을 보호 하고, 물류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업무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물류선지화와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	
한국물류창고업협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61번길 53	'06.12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기간산업 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여의도동) 정우빌딩 7층(15, 16호)	'14.7	재단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및 화물운송 사업 발전 등 도모	'103 비영리법인 '147 공익법인 전환
한국물류산업발전 연구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10층 11호(구로동, 마리오타워)	'10.8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회 창립으로 물류산업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 의제별 연구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홍보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전반 적인 발전에 기여	
한국물류과학기술 학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철기연 2동 202-1호	'13.9	사단 법인	민법 제32조 물류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정보교류를 통하여 물류비 절감, 친환경 물류, 스마트 물류 구현에 기여	

제 2 장

주요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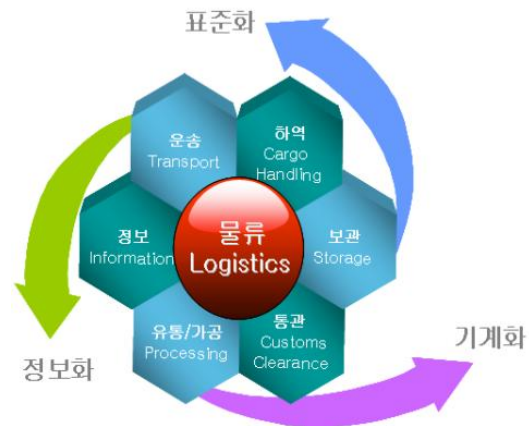
1. 물류정책일반

가. 물류와 물류정책

(1) 물류의 개념과 중요성

- **(개념)**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으로

- 구체적으로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등)·정보활동 등을 의미



- 최근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의 개념에서 원자재 조달에서 회수까지 포함하는 Logistics(불어로 병참)와 환경부하(環境負荷)의 저감(低減)을 고려하는 녹색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 **(중요성)** 물류의 효율화는 불필요한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 상승을 억제

- 생산비 절감은 한계가 있으나, 물류비는 관리혁신으로 대폭감축 가능

* Drucker교수(미)는 '경제의 암흑대륙', Parker교수(미)는 '비용절감을 위한 최후의 미개척 분야'로, 일본에서도 '제3의 이윤원' 등으로 표현

- 특히, 수출화물의 가격경쟁력은 물류비(주로 수송비)에 의해 크게 좌우

* '15년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10.7%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일본 9.42%('14), 미국 7.8%('15), 중국 15.8%('15))

(2) 우리나라 물류의 실태

□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

- (국가물류비) '15년 168조원으로 GDP대비 10.7%(국내물류비 기준)에 달해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단위 : 조원, %)

구분	'01	'03	'05	'07	'09	'10	'11	'12	'13	'14	'15
국가물류비	101.7 (80.7)	110.5 (88.0)	126.5 (94.6)	148.4 (106.1)	154.7 (116.9)	176.6 (132.9)	187.5 (151.5)	186.1 (149.6)	183.6 (152.0)	192.1 (162.8)	195.1 (168.0)
부가가치 총액	57.5 (52.9)	64.1 (58.7)	64.6 (58.4)	69.3 (61.3)	70.5 (65.7)	81.8 (75.6)	88.1 (82.2)	87.2 (81.8)	90.4 (84.9)	100.3 (93.9)	109.9 (102.9)
GDP대비 비중	14.8 (11.7)	13.6 (10.9)	13.8 (10.3)	14.2 (10.2)	13.4 (10.2)	14.0 (10.5)	14.1 (11.4)	13.5 (10.9)	12.9 (10.6)	12.9 (11.0)	12.5 (10.7)

* '2015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2017, 한국교통연구원), ()는 국내물류비 기준
 ** 2009~2010년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일부 통계 변경에 따라 기존 통계와 일부 차이 발생, 2010년의 경우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미발간으로 2009년과 2011년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 국가물류비의 기능별 비중(국제화물수송비 제외) 】

(단위 : %)

구분	수송비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 관리비
2005	75.15	17.26	2.20	1.91	3.49
2006	75.00	17.33	2.12	1.96	3.58
2007	73.33	19.43	2.17	1.88	3.20
2008	69.48	23.15	2.01	2.07	3.29
2009	73.13	22.51	2.16	1.86	0.34
2010	73.18	22.38	2.17	1.94	0.33
2011	69.89	22.37	2.11	1.92	3.70
2012	70.32	21.67	2.21	1.90	3.91
2013	70.52	21.46	2.27	1.90	3.85
2014	71.20	21.08	2.19	1.84	3.70
2015	71.05	21.23	2.17	1.92	3.63

□ 효율성이 낮은 자가(自家) 및 2자 물류 중심으로 3자 물류시장이 협소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저하

* 3자물류 활용률(%): ('04) 31.0, ('07) 42.2, ('08) 46.3, ('09) 48.2, ('10) 52.1, ('11) 56.0, ('12) 59.6, ('13) 65.3, ('14) 66.4, ('15) 67.0, ('16) 67.6, ('17) 68.2

** 3자물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아직까지 미국·유럽(80~90%), 일본(70%)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16년 기준 물류업체(약19.6만개)의 평균 매출액은 4.4억원에 불과

【 물류산업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율
업체수 (개)	전체	171,569	168,003	166,748	171,194	168,584	183,947	191,183	193,060	195,796	1.48%
	운송업	157,295	156,707	155,557	159,848	156,811	172,100	179,332	180,924	183,486	1.73%
	물류시설 운영업	1,172	1,356	1,306	1,247	1,173	1,206	1,273	1,412	1,314	1.28%
	물류 서비스업	13,102	9,940	9,885	10,099	10,600	10,641	10,578	10,724	10,996	-1.93%
종사자수 (명)	전체	566,292	556,279	549,630	581,673	573,620	587,330	583,853	601,538	612,931	0.88%
	운송업	468,351	473,878	466,685	499,139	486,226	497,589	493,815	507,048	513,472	1.03%
	물류시설 운영업	17,748	13,433	13,452	14,174	13,915	13,787	14,788	16,735	16,754	-0.64%
	물류 서비스업	80,193	68,968	69,493	68,360	73,479	75,954	75,250	77,755	82,705	0.34%
업체당 종사자수 (명)	전체	3.30	3.31	3.30	3.40	3.40	3	3	3	3	-0.59%
	운송업	2.98	3.02	3.00	3.12	3.10	3	3	3	3	-0.69%
	물류시설 운영업	15.14	9.91	10.30	11.37	11.86	11	12	12	13	-1.89%
	물류 서비스업	6.12	6.94	7.03	6.77	6.93	7	7	7	8	2.32%
매출액 (십억원)	전체	67,321	90,283	75,002	89,840	92,511	89,751	88,858	89,426	86,511	2.83%
	운송업	58,098	80,313	64,735	77,193	79,681	76,064	74,262	73,711	68,529	1.85%
	물류시설 운영업	1,355	1,755	1,655	2,101	2,151	2,432	2,698	3,078	3,760	12.01%
	물류 서비스업	7,869	8,215	8,613	10,546	10,679	11,255	11,898	12,637	14,222	6.80%
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전체	392	537	450	525	549	488	465	463	442	1.33%
	운송업	369	513	416	483	508	442	414	407	373	0.12%
	물류시설 운영업	1,156	1,294	1,267	1,684	1,834	2,017	2,119	2,180	2,862	10.60%
	물류 서비스업	601	826	871	1,044	1,007	1,058	1,125	1,178	1,293	8.90%

자료: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운수업조사보고서(2017.12)』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물류사업의 범위체계를 기준으로 정리

주) 2010년 운수업조사보고서 미발간

【 전체 산업에서의 물류산업 비중('16년) 】

구분	전체산업(A)	물류산업(B)	비중(% , B/A)
사업체수(개)	3,950,192	195,796	4.96%
종사자수(명)	21,259,243	612,931	2.88%
매출액(십억원)	3,667,699	86,511	2.36%

주: 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전체산업 매출액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활용
2. 물류산업 매출액 통계는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운수업조사(2007.12.)」에서 물류사업 부문만 별도 집계

- 국내 대형물류기업도 규모 등에서 글로벌 기업과 상당한 격차
- 글로벌비즈 매출액(15.34조원, 국내1위)은 세계 1위인 DHL 매출액(26.11십억\$)의 42.4% 수준

【 글로벌 3자 물류기업과 매출액 비교('16년) 】

순위	글로벌 3대 물류기업		국내 3대 전문물류기업	
	업체명(국적)	매출액(십억\$)	업체명	매출액(조원)
1위	DHL Supply Chain & Global Forwarding(독일)	26.11	글로벌비즈	15.34
2위	Kuehne+Nagel(독일)	20.29	CJ대한통운	6.08
3위	Nippon Express(일본)	16.98	롯데로지스틱스	3.19

※ 글로벌 : 암스트롱&어소시에이츠('17.8 발표, 3PL 매출만 해당), 국내 : 국내외 별도법인 포함

【 국내 10대 물류기업 매출현황(해운·항공사 제외, 단위 : 조원, 잠정) 】

순위	기업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본사 매출 ¹⁾	총매출 ²⁾	본사 매출	총매출	본사 매출	총매출	본사 매출	총매출	본사 매출	총매출
1	현대글로벌비즈	10.17	12.86	11.17	13.92	11.81	14.67	12.25	15.34	12.99	16.36
2	CJ대한통운	3.39	3.80	4.08	4.56	4.36	5.06	4.85	6.08	5.19	7.11
3	롯데로지스틱스	2.13	2.16	2.22	2.25	2.85	2.89	3.12	3.19	2.85	2.89
4	범한판토스	1.29	2.04	1.24	1.94	1.21	2.19	1.41	3.00	2.00	3.62
5	롯데글로벌로지스 (前 현대로지스틱스)	0.96	1.34	0.98	1.75	0.98	1.65	0.98	1.63	1.08	1.76
6	한진	1.26	1.50	1.30	1.53	1.54	1.64	1.58	1.76	1.61	1.81
7	삼성전자로지텍	1.08	1.08	0.98	0.98	0.90	0.90	0.88	0.88	0.97	0.97
8	동부익스프레스	0.66	0.81	0.66	0.82	0.56	0.72	0.55	0.70	0.51	0.51
9	세방	0.53	0.65	0.57	0.67	0.56	0.67	0.56	0.65	0.57	0.67
10	동방	0.50	0.64	0.51	0.63	0.52	0.63	0.47	0.58	0.41	0.51

1) 본사매출 : 해외법인 등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외 별도법인의 매출 제외

2) 총 매출 : 해외법인 등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외 별도법인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 World Bank에서 통관, 물류비용, 물류인프라 등 6개 지표를 평가한 각국의 물류경쟁력 순위('16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24위에 불과
- 독일(1위), 싱가포르(5), 미국(10), 일본(12), 대만(25), 중국(27)

□ 제조업의 지원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 → 제조업대비 낮은 정책지원

- * (예) ①물류시설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공장용지는 분리과세)
- ②물류업은 일반용 전기요금 부과(제조업은 산업용 부과)
- ③물류업은 외국인 취업제한(제조업은 업종구분없이 가능)

□ 화물운송 시장의 낙후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갈등요인으로 작용

- 다단계운송 및 지입제 관행화,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등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이 미흡

- 수송 효율이 낮은 도로중심의 수송체계, 녹색물류 활동에 대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노력 부족, 위험물 운송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 등

* 수단별 CO₂ 배출('08, CO₂ g/톤km) : 도로 259, 철도 13, 해운 83

【 국내화물 수송실적(국내, t-km기준) 】

(단위: 백만 톤-km, %)

구분	도 로			철도	해운	항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2003	68,590	29,783	98,373	11,057	33,884	166	143,480
	(47.80)	(20.76)	(68.56)	(7.71)	(23.62)	(0.12)	(100.00)
2004	70,461	30,596	101,057	10,641	25,840	164	137,701
	(51.17)	(22.22)	(73.39)	(7.73)	(18.77)	(0.12)	(100.00)
2005	73,679	31,994	105,673	10,108	26,590	151	142,522
	(51.70)	(22.45)	(74.15)	(7.09)	(18.66)	(0.11)	(100.00)
2006	76,005	33,003	109,008	10,554	26,478	145	146,184
	(51.99)	(22.58)	(74.57)	(7.22)	(18.11)	(0.10)	(100.00)
2007	73,365	31,857	105,222	10,927	27,998	129	144,276
	(50.85)	(22.08)	(72.93)	(7.57)	(19.41)	(0.09)	(100.00)
2008	70,726	30,711	101,437	11,566	29,590	103	142,696
	(49.56)	(21.52)	(71.09)	(8.11)	(20.74)	(0.07)	(100.00)
2009	69,089	30,000	99,089	9,273	25,249	111	133,722
	(51.67)	(22.43)	(74.10)	(6.93)	(18.88)	(0.08)	(100.00)
2010	71,682	31,126	102,808	9,452	23,281	107	135,648
	(52.84)	(22.95)	(75.79)	(6.97)	(17.16)	(0.08)	(100.00)
2011	72,845	31,631	104,476	9,997	27,220	115	141,808
	(51.37)	(22.31)	(73.67)	(7.05)	(19.20)	(0.08)	(100.00)
2012	77,763	33,766	111,529	10,271	25,804	109	147,713
	(52.64)	(22.86)	(75.50)	(6.95)	(17.47)	(0.07)	(100.00)
2013	82,680	35,902	118,582	10,459	30,476	104	159,621
	(51.80)	(22.49)	(74.29)	(6.55)	(19.09)	(0.07)	(100.00)
2014	86,911	37,739	124,650	9,564	29,900	111	164,224
	(52.92)	(22.98)	(75.90)	(5.82)	(18.21)	(0.07)	(100.00)
2015	92,302	40,080	132,382	9,479	31,841	112	173,815
	(53.10)	(23.06)	(76.16)	(5.45)	(18.32)	(0.06)	(100.00)
연평균증감률	2.51	2.51	2.51	▽1.28	▽0.52	▽3.23	1.61
전년대비증감률	6.20	6.20	6.20	▽0.89	6.49	0.90	5.84

주: 1. ()는 전체 대비 비중.

2.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KTDB)에서 2001-2014년 물동량 통계 전면 수정(2015)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역간 화물 통행량 분석』, 각 연도.

(3) 2018년 물류정책의 방향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물류 신산업 육성

- 물류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창업이전, 예비창업, 창업이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홍보 지원
- 생활물류 스타트업 투자협의회, 물류 스타트업 포럼 운영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마련

○ 융·복합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최신 물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이공계 전공자 참여를 확대하고 ICT 과정을 편성하는 등 사업 개편 및 일자리 매칭 강화

○ 물류기업 해외진출 네트워크 확대

- 우리와 최대 교역국 관계인 한-중, 한-일 간 국제물류 촉진차원에서 3국 공동 연구 형태로 복합운송(해상+육상)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물류분야 소비자 보호 및 화물운송시장 경쟁력 강화

○ 화물운송시장 경쟁력 강화

-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추진하여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속·과적 운전 관행 개선
-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업종 구분을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하여 화물운송시장 전반 경쟁력 강화

○ 물류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 택배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강력 범죄자의 종사자격 취득 제한, 손해 배상액 현실화, 본사우선배상 등 추진
- 국제이사 서비스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표준 계약서 및 보상처리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
- 콜밴 부당요금,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및 홍보강화 등 추진

□ R&D 확대 및 물류 인프라 구축

○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 물류 R&D 중장기 계획(17.8)에 의거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부처별로 산재한 개별 물류정보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운영중인 물류창고정보시스템, RFID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을 국가 물류통합정보센터와 통합

○ 물류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운영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물류 트렌드 대응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 단지 사업지정 추진
- 활용률이 저조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물류창고 신축 및 용도전환 등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 화물운송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모니터링 시범운영 실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및 노후차량 차령 제한 도입 검토
- 견인차의 난폭운전 처분을 신설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도로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부당요금 수취 처벌강화 및 요금기준 현실화 추진

○ 친환경 물류활동 지원

- 국내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및 물류·화주기업 친환경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기술, 장비 등 발굴·보급, 인식 제고사업 추진

나. 국가물류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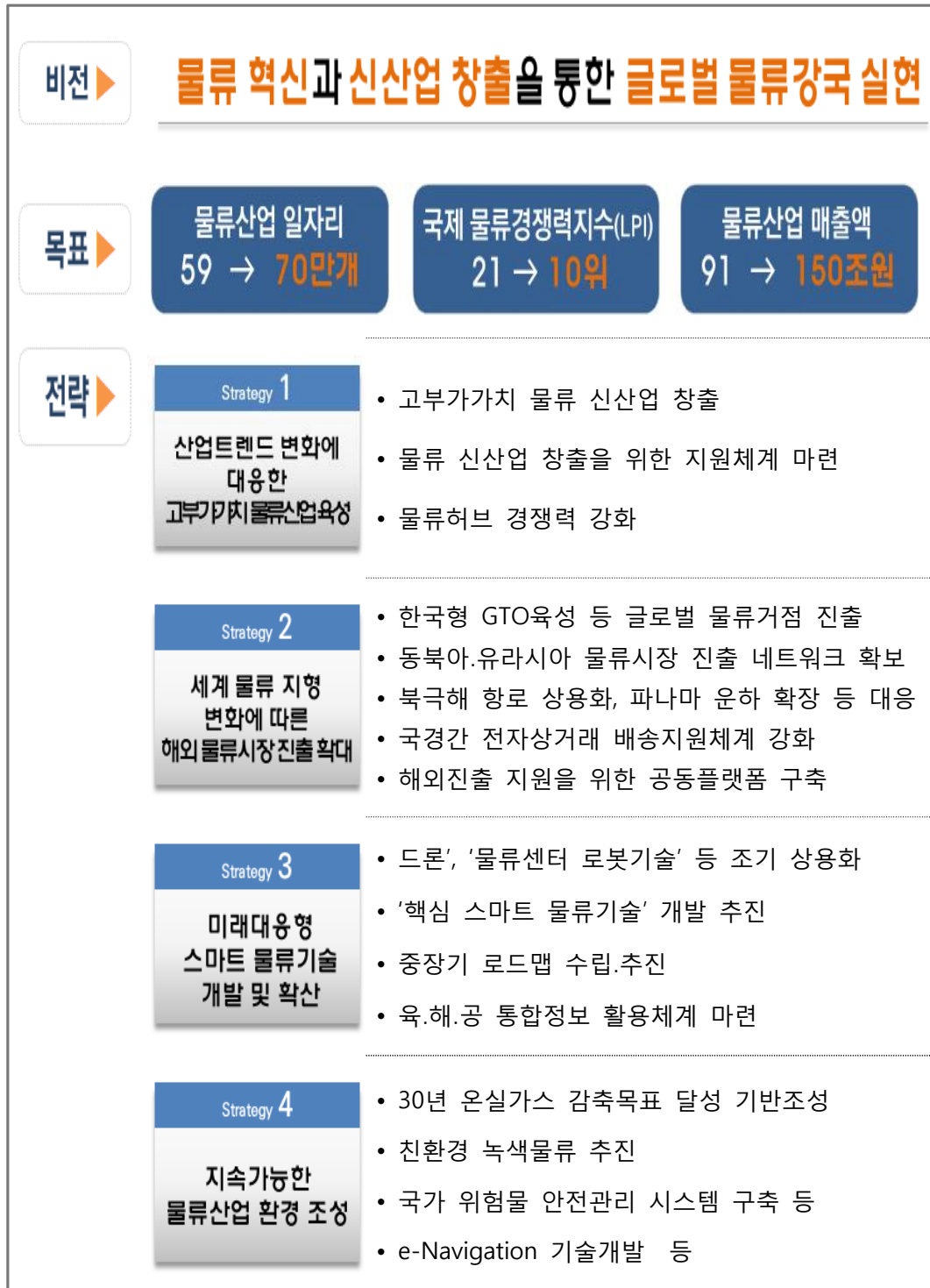
(1) 계획의 수립 근거 및 성격

-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성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계획
 - 장래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물류전략

(2) 계획의 기간 및 수립경위

-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 계획수립의 경위
 - 국가물류기본계획('00~'20) 수립: '00. 1
 - 1차 수정계획('06~'20) 수립: '06. 8
 - 2차 수정계획('11~'20) 수립: '11. 4
 - 국가물류기본계획('16~'25) 수립: '16. 8

(3)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4)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①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 (B2C 시장) 유통 등과 결합한 신선물류, 직구·역직구 물류, O2O 배송산업 등 물류 신산업 확대
- (B2B 시장) 부처 협업을 통해 군물류, 바이오 물류, 프로젝트 물류, 조달 물류 등 새로운 시장에 물류기업 진출을 지원
- (해운산업)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창출을 위해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이를 기초로 한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추진을 검토
- (물류연관 신산업) 물류와 IT·리츠 등을 결합한 신산업 육성

○ 물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규제완화) 화물 운송시장 진입제도, 업종체계 등을 개선하고, 新수송수단 (드론, 전기차 등) 상용화에 대비 관련 법령 정비
- (금융·세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물류 신사업 진출·창업시 세제활용, 금융·컨설팅 지원 추진
- (스타트업 육성) 창업공간 제공·전문컨설팅·투자연계 등을 지원
- (맞춤형 인프라) 신선물류를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천 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개장
-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개편하여 IT·머신러닝·빅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물류 전문인력 양성

○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 (항만)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기능 일원화, Intra Asia 전용부두 건설 등 세계 2대 환적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인천항 등은 차별화 전략 추진

- (해운) 국적선사 경영 정상화를 지원 하고, 초대형 ·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 지원 등 선대 개편에 대응
- (공항) 인천공항 3단계 배후단지를 확보하여 융복합 고부가가치 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화물터미널 확충에 BTS, BOT 등 적용
- (철도) 철도공사 물류부분에 전문 경영체계 도입

② 세계 물류지형 변화에 따른 해외 물류시장 진출 확대

- 한국형 GTO(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 등 글로벌 물류거점 진출
 - (항만공사) 물류기업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내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 물류거점 진출을 추진
 - (민간기업) 유망 해외 공항만 인프라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 개발협력사업 추진 및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동북아 ·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 네트워크 확보
 - (동북아) 중국과 단계적·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복합 운송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中 · 日과 협상
 - (유라시아)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유라시아 중점국가와 해운물류 협력 강화하여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
- 북극해 항로 상용화 추진 및 파나마 운하 확장 등 대응 추진
 - (북극해) 국적선사 북극해 항로 상업운항 지속 실시 및 노르웨이·덴마크·러시아 등 북극해 연안국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 (파나마·수에즈 등) 운하확장 등에 따른 국적선사 운하이용협력 대응 및 니카라과 운하 개발과 연계한 물류기업 투자 추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송지원체계 강화
 - (해외물류센터) 유망 수출국 공·항만에 해외공동물류센터 개설 확대 및 중국전역에 한국기업 생산 신선식품 배송망 구축

- (해운·항공) 카훼리선을 활용한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과 항공을 통한 우체국 특송서비스 **e-Parcel 활성화** 추진

○ 물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추진

- (서비스산업 지원) 해외진출 기업에 투자자금 지원, 현지 투자정보 제공 등을 주 역할로 하는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
- (물류 금융지원 플랫폼) 선박금융에 집중된 해양금융지원을 일반물류분야 확대, 물류리츠 제도를 통한 물류기업 투자지원 등 **활성화**

③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 현재 개발중인 ‘드론’, ‘물류센터 로봇기술’ 등의 조기 상용화

- (드론) 물류용 드론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
- (철도) 철도물류 효율화를 위해 수송효율이 높은 대용량 화차를 개발하고, 동북아 역내 복합물류 지원을 위한 **핵심기술**(이종궤간 극복기술 등) **개발**
- (해상) 선박운항, 적재화물, 항만물류정보 등을 연결하여 선박과 항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onnected Smart Ship** 개발(~'20년, 현대중공업)
- (물류센터)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여 물류센터내 ‘자동피킹 로봇’, ‘셔틀 로봇’ 등의 성능검증·인증 등 **상용화**를 지원

○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추진

- 물류로봇, 스마트 컨테이너, 인터모달 시스템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추진

- (육상·항공) 「물류 **R&D 로드맵**」 수립을 통해, 4대(VR, 자율물류, IoT, 웨어러블기기) 미래기술 **R&D** 개발전략 및 투자계획 마련

- (해상) '차세대 i-Port 2025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무인 자동화 기반 『고성능 신개념 하역시스템』 선도 기술 확보
- 육·해·공 통합정보 활용체계 마련
- (기본계획) 글로벌화, 빅데이터 등 ICT 기술발전, 물류보안 등 물류환경 변화를 담은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17)
- (빅데이터) 해운시황, 해운네트워크 변화, 항만내 화물이동 정보 등 육·해·공 물류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 (OD정보 개방) 국내 화물OD정보 조사주기 단축(5→1/2년, KOTI) 및 관세청 보유 수출입 OD정보 민간개방도 추진

4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 (중장기 로드맵) 신기후체제(Post-2030) 대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성과확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물류 정책성과 모니터링 강화, 감축실적 주기적 조사 실시 및 대안 추가발굴
- 친환경 녹색물류 추진
- (전환교통 촉진) 철도·연안해운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제도 정비 하고, 위험물 등 철도적합화물에 대한 전환 지원방안도 마련
- (수송수단·인프라 녹색화) 물류거점의 에너지 저감대책 수립하고 친환경 선박, 전기기관차 등 육해공 물류 수단·인프라의 녹색화 추진
-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 집중 관리권역 지정, 보안관련 인프라 확충 등 화물운송시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 e-Navigation 기술개발, 선사 등에 항만시설보안료 부과, ADS-B, MLAT 등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 등 추진

2.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 추진배경

- 물류분야의 6개 인증*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혼동과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야기

*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화물 정보망, 우수물류창고업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5.6.22)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도입('15.12.23)

□ 추진개요

- 성격이 유사한 5개 인증을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심사 대행기관 통합 운영
- 심사대행기관을 감축(5개→ 1개)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만 수행하도록 한정

《개편전》 6개 인증, 6개 심사기관

인증(6)	심사기관(5)
종합물류기업인증	교통연구원
우수화물운송업인증	능률협회
우수물류창고업인증	통합물류협회
우수국제주선업인증	국제주선협회
우수화물정보망인증	교통연구원
우수녹색물류기업인증	교통안전공단

⇒

《개편후》 2개 인증, 2개 심사기관

인증(2)	심사기관(2)
우수물류기업인증 (분야별로 인증)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1
우수녹색물류기업인증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1

□ 기대효과

- 물류기업의 안정화, 규모화, 종합화, 글로벌화라는 장기적 발전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하는 제도로 기대
- 견실한 중소기업의 공신력 확보와 더불어 우수업체 육성 및 물류기업 전반의 서비스질 제고 기대

□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공 통	리더십 및 경영전략	5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경영비전·연도별 경영목표·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증거서류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경영전파 활동·종업원 참여프로그램 시행 실적 등을 나타내는 서류
			물류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서비스 품질 방창·서비스 품질목표·서비스품질 수행 및 평가체계를 나타내는 서류
	사업 안정성	10	재무성과	자기자본이익률·부채비율·장기계약 매출액비율·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등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서류
	업무처리 역량	10	인력확보	전문인력확보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전문인력 교육시행 및 교육이수실적 관련 서류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법규준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 계	25		
종합물류 서비스기업	다양성	25	네트워크	국내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해외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매출구조	영위업종수를 나타내는 서류
				고객수를 나타내는 서류
	기업 규모	30	대상고객	최대고객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투자자본금 현황
				운송수단 현황
				물류시설 현황
				기타물류자산 현황
			매출	물류사업 총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물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발전 가능성	20	제3자 물류화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화	해외투자규모를 나타내는 서류
				해외매출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정보화	정보시스템 자산보유액을 나타내는 서류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투자율을 나타내는 서류
				공동이용 정보망 활용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국제물류 주선기업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전문능력	자기명의 B/L 발행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매출고객의 분포성을 나타내는 서류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화물운송추적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류
				업무 관련 국내외 단체가입 정도를 나타내는 서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화 정도	40	국제업무역량	권역별, 화물종류별 전문성을 나타내는 서류
				해외화주와의 거래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네트워크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물류창고 기업	자산	50	유형자산	창고시설현황, 장비확보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무형자산	정보시스템 보유 현황, 업무 메뉴얼 확보, 특허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화물확보 및 고용	15	입출고 실적, 국외화물 현황, 장기계약현황(1년 이상), 종사자고용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안전성	10	안전 및 보안관련 외주현황(보안업체 계약 등)을 나타내는 서류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험가입현황, 친환경 관리 등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운송 기업	조직 및 자원관리	25	화물운수시설 및 장비현황, 직영차량보유비율, 교육훈련 체계 및 이수현황, 복리후생 투자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운송정보 시스템	15	운송정보 시스템 현황, 고객응대 시스템 현황, 화주에 대한 정보제공 실적 등을 나타내는 서류	
	운송과정 관리	35	영업계획서, 직접운송비율, 고객불만 분석자료 및 개선실태, 사고예방 교육실태, 교통사고 피해예방 체계 확보 현황, 화물의 안전운송 실적, 배상보험 가입 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정보망 기업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	20	화물 및 차량정보관리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화물운송 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화물운송실적신고 지원 기능 지원 역량을 나타내는 서류	
	시스템 운영실태	15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실태, 화물정보망 시스템 구축실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	
	정보망 이용규모	10	1. 가입회원 상세현황자료 2.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1년) 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최근1년)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 인증기업 지원내용

지원사항	내 용	근 거	지원분야
물류시설 우선 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①항 및 ②항	전분야
자금 우선 지원	·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적용,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해외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및 부지확보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③항	전분야
자금 지원	· 국제물류주선업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용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④항 및 제49조	전분야
통관취급 법인 허용	· 관세 납세자에 대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과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	관세사법 제19조	종합물류서비스 기업
우선적 재정 지원	· 물류창고 건설, 보수, 개조, 개량, 기술개발 및 물류장비 투자 등의 경우 자금 일부 보조 또는 용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⑤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전분야
우선적 재정 지원	· 차고지, 사업의 정보화, 노후 차량 대체, 연료비 절감·환경친화적 시설·장비 투자, 휴게소 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일부 보조 또는 용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⑤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①항	전분야
	·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혹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교육세·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⑤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②항	전분야
화물자동차의 تون급 증가용 대폐차 기간 단축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존 1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폐차 미허용기간 감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③항	전분야
직접운송 인정	· 운송사업자가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⑤항	화물정보망

□ 인증기업 현황

○ 총괄표

(2017.12월 기준)

구분	종합물류 서비스기업	국제물류 주선기업	화물자동차 운송기업	화물정보망 기업	물류창고 기업	물류창고 기업 (항만구역 내)	총계
합계	19	25	53	2	30	6	135
2006년	6	-	-	-	-	-	6
2007년	1	-	-	-	-	-	1
2008년	-	-	9	-	-	-	9
2009년	-	-	6	-	-	-	6
2010년	1	-	5	-	-	-	6
2011년	1	-	3	-	-	-	4
2012년	2	-	8	-	10	-	20
2013년	6	-	7	-	9	-	22
2014년	1	18	7	1	2	2	31
2015년	-	7	5	1	7	2	22
2016년	1	-	2	-	-	1	4
2017년	-	-	1	-	2	1	4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분야(19개사)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06. 1차	(주)동방	이달근 김형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소공동) 한진빌딩 23층	2006. 06. 12	
	(주)한진	서용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남대문로 2가)	2006. 06. 12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이재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연지동 1-7) 현대그룹빌딩	2006. 06. 12	
	씨제이대한통운(주)	박근태 손관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	2006. 06. 12	
	(주)선광	심충식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34-2	2006. 06. 12	
2006. 2차	(주)동부익스프레스	서상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3층	2006. 11. 03	
2007	현대글로벌비스(주)	김경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2007. 11. 06	
2010	인터지스(주)	이인식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2010. 12. 27	
2011	범한판토스	최원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39F ~ 41F	2011. 12. 20	
2012	한솔로지스틱스(주)	민병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22층	2012. 12. 24	
	세방(주)	박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역삼동, 세방빌딩)	2012. 09. 27	
2013. 1차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박재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사옥)	2013. 06. 26	
	(주)케이씨티시	이준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16층	2013. 06. 26	
	동원산업(주)	이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275)	2013. 06. 26	
2013. 2차	(주)한익스프레스	이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서초동, 건축사회관 3,4층)	2014. 06. 25	
	장금상선(주)	정태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4 해남빌딩 신관 2층	2014. 06. 25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5(중앙동4가) 은산빌딩 8층	2014. 06. 25	
2014	하나로티앤에스(주)	정연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알앤디비센터 415호)	2014. 12. 02	
2016	한국파렛트풀(주)	서병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10	2016. 12. 09	

○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25개사)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14	(주)스카이로드	김영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2101호	2014. 10. 17	
	유센로지스틱스 코리아(주)	야토 유기후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16층(신한금융타워)	2014. 10. 17	
	우진글로벌 로지스틱스(주)	신형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801호	2014. 10. 17	
	(주)스카йма스터	문진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1909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2014. 10. 17	
	(주)고려해운항공	조흠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9, 10층 (대치동, 대치빌딩)	2014. 10. 17	
	퀀네앤드나겔(주)	정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41, 9층	2014. 10. 17	
	한솔로지스틱스(주)	민병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동 22층	2014. 10. 17	
	제일항역(주)	이정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4 서교제일빌딩	2014. 10. 17	
	선진로지스틱스(주)	정유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4층	2014. 10. 17	
	고려종합국제운송(주)	문병도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2014. 10. 17	
	무브맥스시스템(주)	이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301호	2014. 10. 17	
	(주)동진글로벌 로지스틱스	차태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대륭포스트타워3차 305호	2014. 10. 17	
	비투엘물류(주)	김창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1304호(가산동)	2014. 10. 17	
	케리항운(주)	홍성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901호	2014. 10. 17	
	(주)더블유제이씨	김명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305호	2014. 10. 17	
	(주)모락스	이도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0층	2014. 10. 17	
2015	(주)에이앤씨 인터내셔널	이호우 이봉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9 에이앤씨빌딩 8층	2014. 10. 17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5(중앙동4가) 은산빌딩 8층	2014. 10. 17	
	(주)엔엔알글로벌 로지스틱스코리아	여성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703호 (도화동 아크로타워 7층)	2015. 11. 20	
	(주)유엘에스	이현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니스센터 906호	2015. 11. 20	
	(주)오리엔트스타 로직스	유영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4층	2015. 11. 20	
	(주)한큐한신 익스프레스코리아	변종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5, 3층	2015. 11. 20	
	(주)로알지엘에스	김환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6, 3층 (성산동, 대명비즈니스 오피스텔)	2015. 11. 20	
	동서콘솔주식회사	이승희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5, 은산빌딩 15층	2015. 11. 20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박형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20층	2015. 11. 20	

○ 화물자동차 운송기업 분야(53개사)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08	주식회사 농협물류	이현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7층 (미근동, 임광빌딩)	2008. 07. 14	
	한솔로지스틱스(주)	민병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플빌 B동 22층	2008. 12. 30	
	(주)유성티앤에스	손현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4 (남부순환로 2583) 서희타워 9층	2008. 12. 30	
	주식회사 한국통운	김유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로 100	2008. 07. 14	
	로젠 주식회사	최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빌딩 강남사옥 11층, 12층	2008. 07. 14	
	(주)동부익스프레스	서상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3층	2008. 07. 14	
	삼영물류 주식회사	이상근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0	2008. 07. 14	
	삼화운수합자회사	정문승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03	2008. 12. 30	
	동원산업(주)	이명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275)	2008. 07. 14	
2009	(주)세아엘앤에스	조윤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48	2009. 12. 30	
	용마로지스(주)	허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 삼송빌딩 7층	2009. 12. 30	
	이그린하나물류 주식회사	유완식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7길51-3 (읍내동)	2009. 12. 30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오홍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2009. 12. 30	
	세창종합운수(주)	한상동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312	2009. 12. 30	
	엠앤엠통운(주)	조항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47	2009. 12. 30	
2010	금강물류(주)	박부택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58, 6층 (수정동, 금강신일빌딩)	2010. 12. 30	
	경동물류 주식회사	백영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2010. 12. 30	
	합동물류 주식회사	백영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29	2010. 12. 30	
	주식회사 명일	박명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35	2010. 12. 30	
	(주)삼성종합물류	김덕중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262	2010. 12. 30	
2011	(주)한익스프레스	이재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03	2011. 12. 30	
	주식회사 합동운수	최재목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435	2011. 12. 30	
	(주)퍼스트아이앤씨	이성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종고개로 333, 504호 (금천동, 하은프라자)	2011. 12. 30	
2012	(주)동우물류	정상용	경상남도 양산시 노포사송로 870	2013. 01. 18	
	성화기업택배(주)	이성화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2013. 01. 18	
	(주)미래로물류서비스	박관용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7 301,302호 (가운동, 아인스빌)	2013. 01. 18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12	주식회사 코리아로지스	김영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608호	2013. 01. 18	
	주식회사 제때	김광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3	2013. 01. 18	
	(주)국보	김영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505호	2013. 01. 18	
	(주)삼우에프앤지	송만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29	2013. 01. 18	
	(주)삼일	홍상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2013. 01. 18	
2013	삼보후레쉬주식회사	이영수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금화봉길 326-1	2013. 12. 03	
	(주)에이엔씨 익스프레스	이봉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9	2013. 12. 03	
	중동송유주식회사	김영우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231	2013. 12. 03	
	(주)코리아넷운수	최남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36 4층	2013. 12. 03	
	(주)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25	2013. 12. 03	
	(주)씨엠에프	박재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2013. 12. 03	
	주식회사 로텍스	정대식	전라남도 순천시 신대로 20	2013. 12. 03	
2014	삼원종합물류(주)	이승주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울로 660번길 8-1	2014. 12. 30	
	한국로지스폴(주)	서병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2014. 12. 30	
	창진특수냉동(주)	정철구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금화봉길 446	2014. 12. 30	
	(주)다코넷	최종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26	2014. 12. 30	
	대신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박성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6길 5	2014. 12. 30	
	(주)디티씨	양철웅 이강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001호(송도동, 송도센트로드)	2014. 12. 30	
	대도특수운수 주식회사	고달원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어산길 105	2014. 12. 30	
2015	주식회사 이안물류	이종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3, 12층 (관양동, 인덕원골드프라자)	2015. 12. 30	
	대한네트웍스 주식회사	한성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79 (20층, CSP)	2015. 12. 30	
	(유)태정물류	정성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24	2015. 12. 30	
	(주)국민트랜스	박동식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3층	2015. 12. 30	
	지에스엠비즈 주식회사	장인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43길 19	2015. 12. 30	
2016	흥기종합운수(주)	최진호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837	2016. 12. 09	
	(주)그린	박종길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693-10	2016. 12. 09	
2017	한국통운(주)	김춘수	경기도 여주시 먹곡동 주내로 841	2017. 11. 21	

○ 물류 창고기업 분야(30개사)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대상시설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12	주식회사 세이프앤2	홍호선	세이프인물류센터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장백로 20-32	2012.12.26	
	(주)문화유통박스	이석표	파주물류센터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42번길 120	2012.12.26	
	하이로지스(주)	유용식	하이로지스(주) 호남센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82-1	2012.12.26	
	(주)엘에스티	서삼영	엘에스티 품암물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5	2012.12.26	
	주식회사 농협물류	이현우	평택물류센터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98	2012.12.26	
	주식회사 더박스	마승철	서이천문서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83	2012.03.15	
	(주)한진	서용원	남서울종합물류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83번지	2012.12.26	
	현대로지스틱스(주)	이재복	오포신선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14	2012.12.26	
	(주)한진	서용원	셀라리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랑로 215 (항동4가)	2012.12.26	
	로젠 주식회사	최정호	이천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932번길 94 B동	2012.12.26	
2013	롯데로지스틱스(주)	이재현	롯데이천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311번길 91	2013.11.05	
	동원물류(주)	이동화	안성물류센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52-122	2013.11.05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박재익	아산물류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157	2013.11.05	
	동부로지스(주)	유용식	동부로지스(주) 원주물류센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057	2013.11.05	
	동원산업(주)	이명우	이천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63번길 141-27	2013.11.05	
	(주)유한D&S	이순섭	제주허브물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43 (화북일동)	2013.11.05	
	경동물류 주식회사	백영길	진천물류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83-13	2013.11.05	
	합동물류 주식회사	백영창	인천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길무로 202	2013.11.05	
	은산컨테이너 터미널(주)	양재생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대동로 37 (여곡동)	2013.11.05	
2014	주식회사 엔로지스	양복선	엔로지스 물류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00	2014.11.17	
	주식회사 오크라인	마승철	서이천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83	2014.11.17	
2015	(주)국보	김영철	아암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25(신흥동3가)	2015.10.13	
	(주)디피엘	최종록 최인석	덕평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31-35	2015.10.13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박재익	포항물류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광명산단로 15	2015.10.13	
	용마로지스(주)	허중구	안성물류센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뱀골길 9-32	2015.10.13	
	주식회사 어시스트코리아	양대환	(주) 어시스트 코리아 이천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 106번길 38-10	2015.10.13	
	(주)지엘에스	서정수	엘에스티 첨단물류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79	2015.10.13	
	(주)제양항공해운	김영록	종합물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8길 16	2015.10.13	
2017	삼영물류(주)	이상근	삼영물류 인천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0	2017.9.22	
	(주)영진공사	이강신 김승희	종합보세사업장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항동7가)	2017.9.22	

○ 물류창고기업 분야 - 항만구역 내(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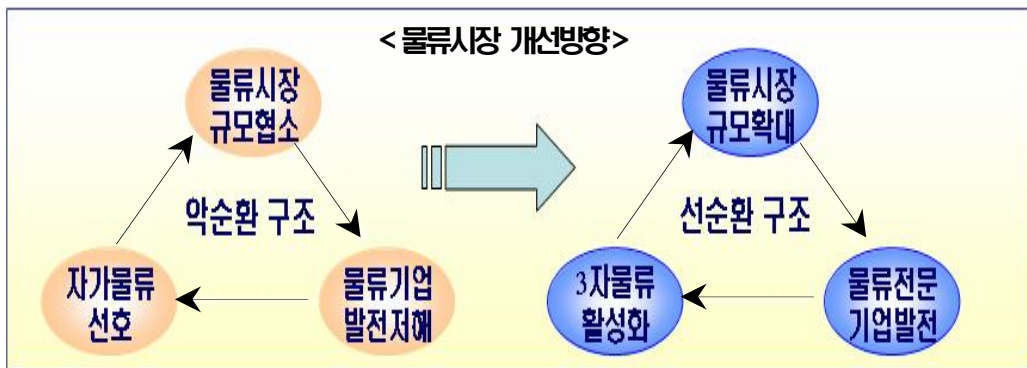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14	C&S국제물류센터	노흥덕	부산시 강서구 신항로 96-13(성북동 1499번지)	2014. 12. 18	
	CALT LOGIS 부산(주)	이종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6-15	2014. 12. 18	
2015	동부광양물류센터(주)	박성근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40(도이동)	2015. 12. 09	
	칼트로지스평택(주)	이종철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	2015. 12. 09	
2016	(주)대평	고재천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2(도이동)	2016. 12. 09	
2017	(주)미쓰이소코코리아	고한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2017. 11. 21	

○ 화물정보망기업 분야(2개사)

구분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최초 인증일	비 고
2014	(주)트럭공차정보	최규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 75(금곡동)	2014. 12. 30	
2015	(주)전국24시콜화물	윤수명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82번길 39-3(도화동, 도화프라자)	2015. 06. 30	

나. 제3자물류 건설팅 지원

- 자가·자회사 방식의 제조·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물류 활용을 유도하여 물류효율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물류시장의 규모 확대 등 물류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제3자물류 건설팅 지원을 추진
 -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영업기반 확대 → 서비스·경쟁력 향상 →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물류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사업목적

- 화주기업의 물류체계 진단과 개선안을 수립하는 건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제3자물류로의 전환을 유도(*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 제3항)

□ 지원내용

- 자가·자회사 물류방식의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물류로 전환하기 위해 소요되는 건설팅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보조
- 2017년까지 153개 화주기업-물류기업 컨소시엄에 48.8억원을 지원

□ 위탁대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물류 건설팅을 희망하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모집하여 상호간 매칭을 지원, 건설팅 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 제3자물류 컨설팅 : 기업의 물동량·인력·장비·재고관리·정보화 등 물류현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 발굴하여 제3자물류 활용 범위, 적합한 물류업체 선정 기준, 계약체결 등 물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물류컨설팅 절차 및 내용(예)>



□ 기대효과

○ 화주기업 측면에서는 전문물류기업(3자물류)에 물류업무를 위탁·운영으로 운송, 보관 등 체계적 관리로 물류비 절감 등 물류효율화에 기여

* 10년간('08~'17)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153건 지원, 물류비 절감액 293.3억원, 물류비 절감율은 13.4% 예상

○ 물류기업 측면에서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협업기회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문물류시장의 규모 확대 등 성장 기반을 마련

* 3자물류 활용율(%) : 65.3('13) → 66.4('14) → 67.0('15) → 67.6('16) → 68.2('17)

다. 공동물류지원사업

-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과 같이 물동량이 많고 교통 혼잡 지역의 경우 공동물류 시행 시 물류비 절감, 교통체증 감소

* 공동물류(물류공동화)란 물류·화주기업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것

- 공동물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공동물류 활성화를 유도

□ 사업목적

- 다수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물류사업을 지원하여 공동물류 활성화를 유도(*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항)

-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등에 따라 공동물류 활성화 유도로 공급망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과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 필요

□ 지원내용

- 물류 효율성 제고 및 교통체증 감소,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공동물류지원사업을 지원중('13~)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에 대한 공동물류 도입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50%이내)

□ 기대효과

- 공동물류 활용을 제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 절감, 물류서비스의 환경 개선 도모

* 5년간('13~'17)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21건을 지원(14.8억원)하여 물류비 절감액 127.1억원, 물류비 절감율은 13.0% 예상

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 추진배경

- FTA 체결 등 대외경제영토 확장, 생산·판매의 글로벌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공급망관리(G-SCM) 협력 필요
- 기업 경영범위의 확대와 함께 국내 물류시장의 만성적인 공급포화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 생존전략
- * 물류기업은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자금동원 역량, 지역 정보부족 등을 이유로 화주기업과 동반진출을 선호

□ 주요내용

-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신청시 심의 후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 기존 동반진출 방식(4개 유형) 외에 공모방식 상시화, 매칭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업 참여도 제고
- (물류기업 해외시장 정보제공) 현지물류 시장정보, 기업 지원현황 등 해외 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 수집·제공
- 유관기관(KOTRA, KMI 등)에 흩어져 있는 해외물류시장 정보를 일원화하며 기업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 해외물류시장에 대한 법률, 노무, 항만, 공항정보 등 제공
- *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http://www.worldlogis.net>)

□ 지원실적 : 5년간('14~'17) 컨설팅 28건, 14.4억원 지원

구분	'14	'15	'16	'17	'18
건수	5	6	9	8	8
소계(억원)	1.5	2.0	5.6	5.34	5.04
· 국토부	1.5	2.0	3.0	3.0	3.0
· 해수부			2.6	2.34	2.04

마. 국제물류주선업 지원

□ 국제물류주선업의 개념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현황

○ 연도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등록업체	1,690	1,909	2,082	2,209	2,254	2,352	2,636	2,742	2,968	3,245	3,459	3,482	3,526	3,704	3,875	4,117	4,269
증감현황	270	220	173	127	45	98	284	106	226	277	214	23	44	178	171	242	152

* 자료 : 17개 시도 보고자료

○ 자본규모별

(‘17. 12월 현재)

계	3억원	3억초과~10억원	10~50억원	50억원 이상
4,269	3,604	347	207	111

○ 시·도별

(‘17. 12월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제주	세종
4,269	2,427	650	42	392	25	20	31	4	444	133	27	59	10	5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개요

○ 등록기준(법 제43조제3항)

-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보유
-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등록신청시 첨부서류(시행규칙 제5조)

- ① 등록신청서
- ②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 ④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법제43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1. 법인의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3. 법인의 대표이사, 4.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변경등록기관(시행령 제51조) : 시·도지사

3. 녹색물류 확산

가. 친환경 물류사업 지원

□ 추진배경

- '30년까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24.6% 저감)를 달성하고, 화주·물류기업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11년~)

□ 주요사업내용('18. 21.1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 (녹색물류 전환사업, 18.6억원) 화주, 물류기업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지원(30~50%)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집중지원이 필요한 핵심사업으로 ①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②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기업이 자유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효과검증 사업을 지원
30~50%이내 / '18. 9.3억원	30~50%이내 / '18. 9.3억원

* 효과성 및 경제성, 시장수요, 중요도가 높은 통합단말기, 무시동히터 등 4개사업을 정부지정핵심사업으로 지정

- (물류에너지목표관리 운영, 2.5억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물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활동 등을 지원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확대('17. 230개사→'18. 260개사) 및 기존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행평가 추진

* (대상) 물류기업(화물차 50대 이상), 화주기업(연간에너지 사용량 1,200TOE 이상)

** (참여기업) 26개사('11)→108개사('13)→205개사('16)→230개사('17)→230개사('18 목표)

- (녹색물류전환사업 관리) 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리,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및 녹색물류홈페이지 운영 등

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추진배경

-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관리,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

구 분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	정부 강제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
목표 설정 및 이행	기업의 자발적 참여	정부에서 대상기업 지정
패널티 부여	미 부과	개선명령 후 부과(과태료)

- 우리나라에서는 '98년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도입하였으며, 고유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 강제적인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결정
 - *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보고(제6차 녹색위, '09.11)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과 수송분야의 사업장이나 업체, 건물·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
 - * 에너지 목표관리제 : 에너지 사용 저감 또는 효율성 제고목표를 기업과 정부간 협의설정,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등을 통해 달성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에너지 목표관리제 근거 마련
 -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11.3)

- **(자발적 협약)** '30년까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24.6% 저감)를 달성하고, 기업의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차 50대 이상 물류기업, 연간에너지사용량 1,200toe이상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10.9~)
- 국토교통부와 물류, 화주기업 등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활동을 추진
 - * 삼성웰스토리, 동원산업, 한진, 홈플러스 등 '17.까지 230개 업체 참여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방법 】

구분	실시방안
관리범위 설정	기업 물류경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녹색물류경영 범위를 설정
에너지 등 산정	범위내 물류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화물수송량 수정, 이해관계자간 자료 제공 및 교환
감축목표 설정	물류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를 정부와 협의 설정
전환사업 실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물류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실적 및 효과분석	녹색물류 전환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정부 보고 및 평가

- 기업별로 매년 물류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1~2%씩 감축, '20년까지 10~20% 개선 목표
 - * BAU(Business As Usual) : 장래예측배출량 전망치, Post-2020의 물류분야 중 도로부문의 연평균 성장률 5.9% 적용
- **(강제 협약)** 정부 강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 근거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14.10)
 - 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이 연평균 200테라줄(TJ : 4,778TOE),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탄소톤 이상인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동법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 지정기준 】

구분	~'11.12.31	'12.1.1~	'14.1.1~
에너지 소비량(TJ)	500	350	200
온실가스 배출량(kilotonnes CO2-eq)	125	87.5	50

- 지정업체는 정부와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연간 실적과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
 - * 목표 준수실적이 미흡한 관리업체에 대해 개선명령(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이행결과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받아 보고 및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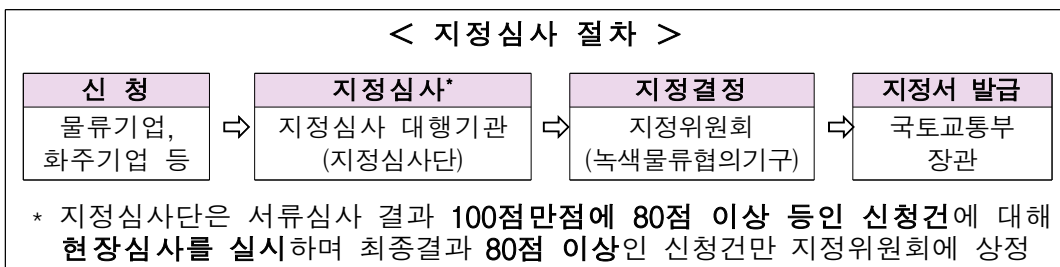
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운영

□ 추진배경

- 위수탁, 다단계거래 등 낙후된 물류산업 구조로 인해 대부분 물류기업의 경우 국가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물류활동에 소극적
- 이에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 화주기업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확산을 도모

□ 사업개요

- (법적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50호, '14. 5.20 제정)
- (신청자격) 화주기업, 물류기업
- (지정요건) 물류분야 에너지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을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획득시
- (지정기업) '16. 19개사(용마로지스, 현대글로벌비스, CJ대한통운 등)
- (인센티브)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녹색물류전환사업 우선 지원
- (지정절차) 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녹색물류협의기구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서 발급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평가기준

- 3개항목 13개지표에 대하여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인 경우 지정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1. 관리범위 및 관리수준 (30점)		
1-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15점)	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대한 관리범위 설정 수준 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경영목표의 설정여부 및 내용 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조직 및 인력 배치, 내외부 이해관계자간 소통·협력 등 추진체계의 구축 범위 및 정도, 장단기 계획 수립현황	5 5 5
1-2.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화물운송량 관리수준(15점)	가.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화물수송량 산정범위 관리수준 나.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화물수송량 산정자료와 정보의 정확성 및 이해관계자간 공유 실천 정도 다.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화물수송량 산정시스템의 기계화 또는 IT화 추진 수준	5 5 5
2.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40점)		
2-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20점)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사업의 과제 수 및 내용, 사업 및 투자 규모(양 또는 비율) 나. 환경친화적 물류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10
2-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율(20점)	가.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설정 나.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또는 효율화 목표 달성율	10 10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효과분석 및 정부보고(30점)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실적의 주기적인 평가 및 효과분석 실시, 정확성 수준 나. 정부보고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실시 여부 다. 환경친화적 물류지표의 설정 및 측정 여부(예, 물류공동화량(울), 전환수송 전환량(울) 등)	10 10 10
합 계		100

□ 지정업체 지원 및 지정효과

- 업체의 차량 등에 지정마크 부착 및 홍보 권한 부여
-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제고
-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기업물류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녹색시장 선점 및 경쟁우위 확보

라. 녹색물류협의기구 운영

□ 추진배경

-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 탄소기반 시장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투자비 부담 등으로 소극적
 - * 물류분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20. 864만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시행('15)
- 이에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 설치·운영
 - * '10년부터 녹색물류협의체 시범운영을 통해 물류정책법상 설치근거를 마련('14. 2. 7시행)

□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 국토부, 산자부, 해수부, 물류나 에너지 관련 협회, 전문기관, 물류기업, 화주기업 등 전문가 15~30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유고시 지명자가 업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국토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기능) 녹색물류 정책 심의·조정(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2항)

【 녹색물류협의기구 기능 】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제안 및 심의·조정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3. 녹색물류 전환사업의 심사 및 선정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 등

- (임기) 2년(연임가능)
- (운영) 반기별 1회, 수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4. 물류전문인력 양성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물류관리사란?

-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

※ 물류관리사에 대한 의무고용 법적근거는 없음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 자격시험 관련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제41조
-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07.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08.2)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14.2)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
-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한국물류협회에서 시행
-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위탁 시행

□ 자격시험 업무 연혁

- '97년 제1회 자격시험 시행 이후 매년 1회씩 연속 시행 중
- '95년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17년(21회)까지 27,608명의 물류관리사 배출

○ 물류관리사 회수별 응시 및 합격자 현황

* 평균 응시율 54.2%, 평균 합격률 19.8%, 총 27,608명 물류관리사 자격 취득

(단위 : 명, %)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접수자	72,021	18,845	19,019	11,683	9,175	7,688	7,030	6,852	9,154	16,063	15,863
응시자(응시율)	30,027(41.7)	8,131(43.1)	8,781(46.2)	5,500(47.1)	4,025(43.9)	3,389(44.1)	3,302(47)	3,379(49.3)	4,880(53.3)	8,732(54.4)	8,042(50.7)
합격자(합격율)	1,109(3.7)	439(5.4)	1,827(20.8)	269(4.9)	618(15.4)	560(16.5)	615(18.6)	454(13.4)	1,243(25.5)	1,221(14.0)	2,181(27.1)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접수자	16,126	16,625	13,550	12,339	13,297	11,160	9,180	8,287	8,061	7,304	309,322
응시자(응시율)	9,217(57.2)	9,524(57.3)	7,676(56.6)	7,570(61.4)	7,041(53.0)	6,232(55.8)	6,333(69.0)	5,919(71.4)	5,528(68.6)	4,870(66.7)	158,098(54.2)
합격자(합격율)	1,722(18.7)	1,891(19.9)	2,303(30.0)	1,231(16.3)	1,861(26.4)	1,328(21.3)	2,179(34.4)	1,727(29.2)	1,173(21.2)	1,657(34.0)	27,608(19.8)

□ 자격시험 개요

○ 시험주기

- 매년 1회 시행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

○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 필기의 방식으로,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응시 자격 제한은 없음

○ 시험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 물류 관련 법규(「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 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물류 관련 규정)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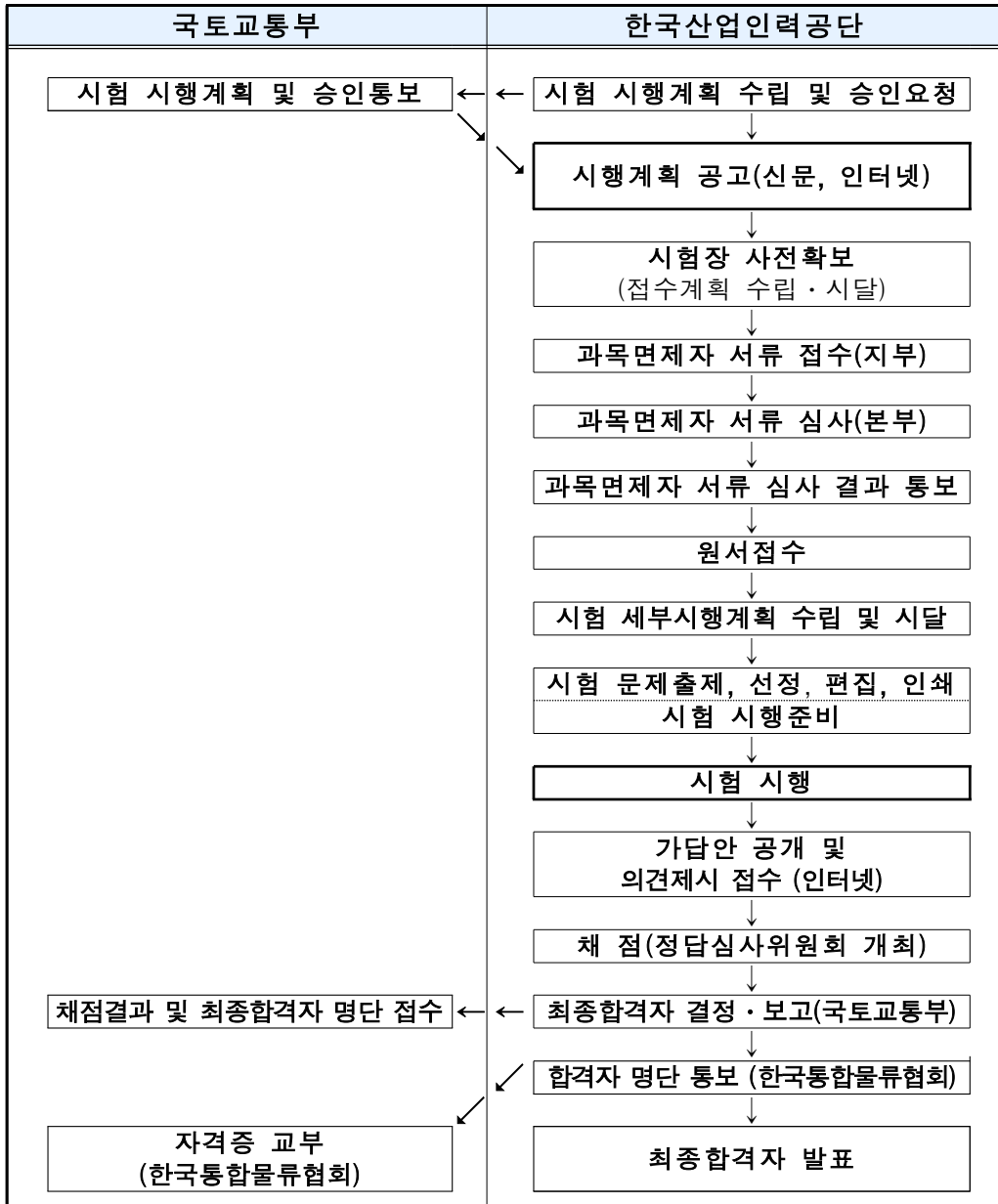
-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

○ 합격기준 : 전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 다만, 자격자 수급 상 필요하여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 수수료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20,000원('12.1.26 시행)

□ 자격시험업무 처리절차



□ 기타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평균 합격율 현황

(단위 : 명, %)

접수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율
43,992	28,882	65.7	8,064	27.9

나.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15~'19)

○ 목적

- 국제 물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물류분야의 해외시장 진출관련 전문지식과 분석능력, 외국어 역량 등을 갖추어 물류기업의 현지진출과 첨단물류시스템 도입을 주도할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물류전문인력

○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 추진경위

-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은 '06년도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추진

* 1단계 : 물류대학원설립 및 육성('06~'10, 인하대, 210명 석·박사 배출, 100억원)
2단계 : 물류특성화인력양성('10~'14, 인천대, 인하대 등 4개교에 51억원 지원)
3단계 : 글로벌물류인력양성('15~'19, 6개교, 50억원 지원 예정, 1,500여명 양성)

- '15년도 제3단계 사업으로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거쳐 6개 대학 선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15.4)

* 협약기관 : 군산대, 대전대, 순천대, 인하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 협약기간 : '15~'19 (5년간)

* 협약내용 : 「물류정책기본법」제50조에 근거한 물류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목적, 적용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사업수행, 사업비 관리, 사업실적 보고, 관계자료의 제출, 협약의 해지, 기타사항)

○ 지원내용

- 국내외 산학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시스템 구축, 해외 물류시스템 분석, 기업실습, 외국어교육, 장학금 등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실적 및 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양성인원	361명	336명	355명	300명	300명
예산액	8.45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13~계속)

○ 목적

- 물류특화 고교·전문대를 대상으로 현장·기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지원으로 인력수급이 시급한 물류현장의 우수한 실무기능인력 양성
- * 터미널,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현장에서 수송, 보관, 하역, 정보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할 인력

○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 추진경위

- '13. 7 : 물류기능인력양성계획 수립
- '13. 8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3. 9 : '13년도 지원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장안대,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 부산항만물류고)
- '14. 5 : '14년도 추가 지원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인천재능대, 서일국제경영고, 한국항만물류고, 근명여자정보고)
- '15. 3 : 협약해지(근명여자정보고)
- '15. 4 : '15년도 추가 지원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경기상업고)
- '16. 3 : 협약해지(경기상업고, 서일국제경영고)
- '16. 4 : '16년도 추가 지원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
- '17. 3 : '17년도 지원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장안대, 부산경상대, 한국항만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 인천세무고)

○ 지원내용

- 국내외 현장견학·실습·인턴, 장학금, 산학연계 강화, 전문가 특강, 물류장비 운용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등 기능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실적 및 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양성인원	528명	1,149명	861명	408명	416명
예산액	1.5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5. 국제물류협력

가. 물류환경 변화와 국가간 협력

□ 세계의 물류환경

- 세계 경제는 NAFTA, EU, ASEAN 등 지역 경제블록의 심화와 자본, 생산, 소비의 글로벌화로 인해 새로운 하나의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 중
- 공급사슬관리(SCM)의 확산으로 글로벌 전문물류기업에 의한 통합물류 서비스 확대
- 국가간 제조업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로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최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에 생산거점 및 판매·유통거점 구축
-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수송 수단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복합일관 수송 서비스 보편화

□ 동북아의 물류환경

-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기지로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
-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8% 이상을 처리하는 커다란 경제권 형성
 - * 동아시아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약 4.3% 성장(세계 물동량 연평균 : 2.7%)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에 있어 중국은 세계 1위, 일본은 세계 3위를 차지
- 동북아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중국발 환적화물 유치 등 상호공존을 위한 협력 패러다임 필요

【한·중·일 3국의 주요 경제 통계 - 2011년 기준】

1. 3국 경제 주요 지수 비교

가. 3국의 경제 규모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GDP	'10	1조 145억불(세계14위)	5조 4,588억불 (세계3위)	5조 9,266억불 (세계2위)
	'11	1조 1,639억불(세계15위)	5조 8,554억불 (세계3위)	6조 9,885억불 (세계2위)
세계GDP 차지비중('10)	3국 전체 : 15.7%('07) → 16.1%('08) → 18.6%('09) → 19.6%('10)			
1인당 GDP	'10	2만 753불	4만 2,325불	4,283불
	'11	2만 3,749불	4만 5,774불	5,183불
GNI('10)	1조 148억불(세계 13위)		5조 6,016억불 (세계 3위)	5조 9,570억불 (세계 2위)
1인당 GNI('10)	1만 9,890불		4만 1,850불	4,270불
경제성장률	3.6%		△0.9%	9.2%
외환보유액	3,064억불 (세계7위)		1조 2,958억불 (세계2위)	3조 1,811억불 (세계1위)
실업률	3.4%		4.6%	4.1%
물가상승률	4.0%		△0.7%	5.4%

나. 투자 및 교역규모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전체교역량	1조 809억불 - 수출 : 5,565억불 - 수입 : 5,244억불 - 수지 : 321.4억불	1조 6,732억불 - 수출 : 8,209억불 - 수입 : 8,523억불 - 수지 : -314억불	3조 6,421억불 - 수출 : 1조 8,986억불 - 수입 : 1조 7,435억불 - 수지 : 1,551억불
투 자	해외투자 : 445억불 외국인투자 : 137억불	해외투자 : 572.2억불 외국인투자 : -13.6억불	해외투자 : 688억불 외국인투자 : 1,160억불
GDP대비 투자비중('10)	해외투자 : 13.8% 외국인투자 : 12.6%	해외투자 : 15.1% 외국인투자 : 3.9%	해외투자 : 5.1% 외국인투자 : 9.9%
인적교류	출국자 : 1,269만명 입국자 : 979만명	출국자 : 1,699만명 입국자 : 622만명	출국자 : 1,552만명 입국자 : 2,711만명

2. 3국간 교류현황

가. 3국간 교역현황

(한국 기준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일→한 (일본은 한국의)	수입 2위국 (683억불)	수출 3위국 (397억불)	교역 2위국 (1,080억불)	적자 2위국 (286억불)
중→한 (중국은 한국의)	수입 1위국 (864억불)	수출 1위국 (1,342억불)	교역 1위국 (2,206억불)	흑자 1위국 (478억불)

(일본 기준 / 출처 : 일본무역진흥회)

한→일 (한국은 일본의)	수입 6위국 (397억불)	수출 3위국 (659억불)	교역 3위국 (1,055억불)	흑자 3위국 (262억불)
중→일 (중국은 일본의)	수입 1위국 (1,834억불)	수출 1위국 (1,615억불)	교역 1위국 (3,449억불)	적자 5위국 (219억불)

(중국 기준, 홍콩제외 / 출처 : 중국해관총서)

한→중 (한국은 중국의)	수입 2위국 (1,627억불)	수출 3위국 (829억불)	교역 3위국 (2,456억불)	적자 2위국 (798억불)
일→중 (일본은 중국의)	수입 1위국 (1,946억불)	수출 2위국 (1,483억불)	교역 2위국 (3,429억불)	적자 4위국 (463억불)

나. 역내 교역비중

(출처 : IMF)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역내 교역비중	25.4%	23.2%	22.6%	21.5%	22.5%	22.1%	21.4%

다. 3국간 투자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회)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투자	對日투자 : 2.6억불 對中투자 : 48.7억불	對韓투자 : 22.8억불 對中투자 : 72.5억불	對韓투자 : 6.5억불 對日투자 : 3.1억불
3국간 투자 누계	對日투자 : 39.5억불('68-'10) 對中투자 : 448.5억불('68-'10)	對韓투자 : 263.5억불('62-'11) 對中투자 : 624.5억불('87-'10)	對韓투자 : 31.5억불('62-'11) 對日투자 : 3.4억불('87-'10)

□ 물류분야 국제협력 방향

-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과 역내 교역활성화를 위해 물류분야 국가간 협력 확대
-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을 통한 역내 협력체계 강화, 러시아 및 ASEAN등으로 협력범위 확대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활동 전개, 복합일관수송 모델의 개발 및 추진

나. 한·중 교통물류협력회의

□ 추진배경

- '05년 한·중간 물류협력증진을 위한 물류협력회의(차관급)를 매년 정례적·윤번제로 상호방문 개최기로 협약체결

□ 회의개요

- 제1회 한중물류협력회의 : '05. 8월, 북경
- 제2회 한중물류협력회의 : '06. 11월, 서울
- 제3회 한중물류협력회의 : '07. 11월, 북경
- 제4회 한중물류협력회의 : '09. 2월, 서울
- 제5회 한중물류협력회의 : '10. 9월, 위해
- 제6회 한중 교통물류협력회의 : '12. 5월, 과천
- 제7회 한중 교통물류협력회의 : '14. 10월, 북경

□ 주요 협력사항

- 물류표준화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 적극 추진키로 합의
- 한·중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제1차 실무회의('07.8), 제2차('07.11), 제3차('08.9), 제4차('10.7) 개최
 - * 트럭페리 : 화물을 실은 화물차가 페리를 통해 해상 이동후 상대국 내륙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일관운송
-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협정 및 1단계 의정서('10.9.7) 합의에 따라 양국간 피견인 트레일러의 상호주행에 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여건을 감안 화물자동차 상호주행 등 협력범위 확대



- 한중 복합운송 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적용항구, 운행허가증 수량, 정보 교환 등 협정실행과 관련된 문제 논의
- 교통·도로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양국 간 협력의 수준을 높임
- 복합운송 시행지역, 육상전원 공급시설, 카페리 운임 및 한중 크루즈 취항,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물류, 해운, 교통분야별 논의 추진

다. 복합일관수송

□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 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10.9.7 체결, '10.11.25 발효)

○ 주요 내용

- ‘한중 복합운송’의 단계적 실시 추진(협정 제2조)

⇒ 1단계 피견인 트레일러 ⇒ 2단계 트랙터+트레일러

- 상대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 조건(협정 제5조), 카보타지 금지(협정 제7조), 보험가입(협정 제8조), 관세담보(협정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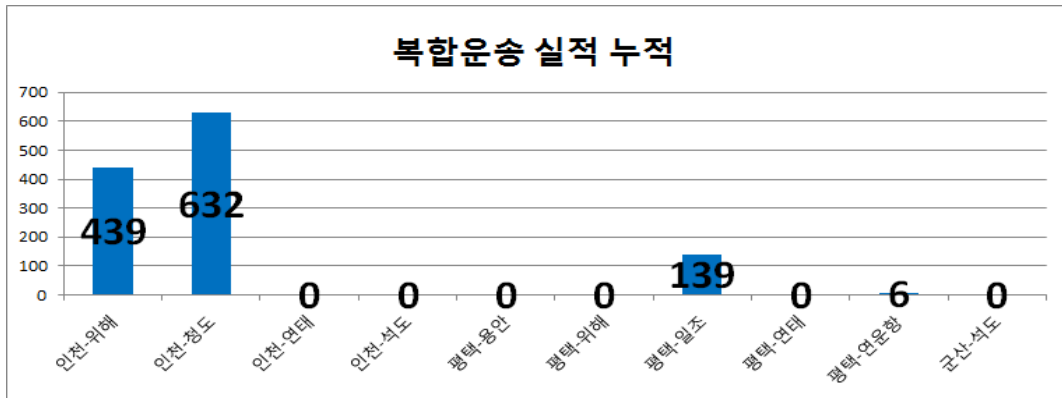
- 양국 운송차량은 협정 및 의정서 규정과 상대국 법령,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협정 제10조)

- 협정 및 관련 의정서의 집행상황 평가 및 상호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협력 위원회 설립·운영(협정 제14조)

⇒ 적용 항구, 운행 구역, 연간 운행허가증 발급 건수 등 협의

○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행 실적(‘10.12~’17.6)

(단위 : 차량대수)



○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합의(‘11.10)

- 특수형 트레일러 상호주행 합의



<재상트레일러>



<일체형 트레일러>



<화물을 꼭집 고박하여 운송>

- 제3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합의('12.10)
 - 적용대상 항구를 산동성 이외 지역 항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평택-연태 노선을 조속히 개통하기로 합의
- 제4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합의('14.2)
 - 적용항구로 중국 강소성 연운항을 추가 개통(現 산동성 6개 항구)하고, 트레일러 운행구역을 강소성 전역으로 확대(現 산동성 이내) 합의
 - * 중국 연운항 개통식 공동 개최('14.7.30)

□ 한일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시범사업 추진

- 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중일 삼국 물류시장 형성에 주도적인 입장을 수행하고자 함
 - '11. 7월 이후 3차례에 걸친 과장급 회의를 통해 양국의 자동차 관련 법령, 등록절차 등을 소개·비교하고, 입장 확인
 - 일본은 현행 법령상 한국차량의 일본 내 주행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국은 피견인 트레일러 시범사업을 위한 MOU* 제안
 - * 일본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차량의 일본내 주행시 등록을 하되, 시범사업의 목적이 양국 차량의 상호주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를 구축하는 것임을 MOU에 명시하기로 합의
- 합의의사록 체결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간의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시범사업을 위한 합의의사록 체결('12.7.15 체결)
- 주요 내용
 -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화물의 범위는 '자동차 부품', 적용 항구는 대한민국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제3조 적용범위)
 - 양국의 트레일러는 상대방 기술, 안전기준, 도로운송 요건 준수(제5조 기술 기준 및 안전기준)
 - 시범사업 실시과정의 문제점, 시범사업 적용화물, 항구, 트레일러 대수, 시행자, 정보교환 등을 상호 협의하기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6. 물류시설 확충

가. 물류단지의 건설

□ 업무연혁

- 1995.12.29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 1996.06.30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
- 1997.10.02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1차) 결정고시
- 1998.02.23 유통단지개발지침 결정고시
- 1998.11.30 대전유통단지 지정승인
- 2000.01.01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예산지원
- 2001.05.30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2차) 결정고시
- 2004.12.17 유통단기관리지침 결정고시 및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2차) 변경고시
- 2007.08.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02.0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08.06.30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결정고시
- 2013.01.07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결정고시
- 2014.06.27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고시(총량제 폐지)
- 2015.06.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실수요 검증 운영 근거 마련)
- 2015.12.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 2016.07.11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

□ 업무개요

○ 사업목적

- 물류구조의 개선과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하여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 업무의 속성 및 업무내용

- 물류단지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정책개발, 재정사업지원, 민원해소 등 물류거점시설개발 전반의 지원업무

□ 추진배경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설치되는 유통관련시설을 한 장소에 집단화, 단지화 함으로써 유통활동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유통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1996년부터 시행)을 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일원화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8. 2. 3 시행)

○ 개별입지 물류시설의 집단화 사유

- 물류시설용지(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창고,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등)와 상류 시설용지(도·소매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등)는 개별입지 형태로 도심지에 위치하여,
- 도시내 교통난 심화, 기업물류비 증가, 운송효율 저하, 도시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 이러한 개별입지 물류시설들을 집단화하려면 높은 토지취득비용, 경직된 토지이용규제 등의 이유로 추진이 곤란

⇒ 따라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각종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 상류시설을 모두 포함)과 금융·보험·정보·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집단화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정책을 시행

□ 업무의 발전방향

- 물류거점시설의 위계화, 계통화, 통합화 지속 추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한 물류체계의 구축
- 물류산업 및 물류기술(정보화, 표준화 등)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류거점의 개발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류시설의 개발

□ 물류단지의 개발목적

- 법률상의 목적
 - 물류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경제적 목적 또는 개발효과(유통단지 개발방안 연구, 1995, 국토연구원)
 - 물류관련 시설의 단지화
 - 다양한 물류시설과 상류시설이 상호유기적인 연관없이 개별적으로 조성 운영되는 경우 불필요한 화물수송을 유발하는 등 물류체계의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 따라서 상호관련이 높거나 보완이 되는 시설과 기능을 한 지역에 집산화 시킴으로써 물류처리와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효과 및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물류거점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 물류시설은 사회간접시설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며, 광역거점시설 (내륙 물류기지, 수출입항만)과 지역거점시설(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집배송단지)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범위의 경제성(economies of scope) 효과에 의한 물류비절감이 가능하다.

- 물류단지까지는 대형화물차, 물류단지에서 도심지까지 소형화물차의 운송 구조 계열화로 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복·교차·중계수송을 감소 시켜 교통혼잡이 완화된다.
- 일관운송체제 구축
 - 컨테이너운송체제가 확대되면서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수송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일관운송 (inter-modal transportation)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화물운송체계를 고려한 물류거점시설의 대형화, 전문화, 통합화, 계열화가 요구된다.
- 물류공동화
 - 동종 또는 연관업체들이 지역내에서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이용할 경우 차량 적재율 향상, 운행차량수 감소, 관리인력 감소, 교통혼잡 완화, 물류 시설 필요면적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점이 있다.

□ 업무처리절차

○ 개발의 기본방향

-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
- 물류단지 내에 배치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크게 물류, 상류, 지원시설로 나뉘어지며 이들 물류시설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류단지시설용지 총면적 중 60%이상 물류시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
- 물류단지의 지정 및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에 있어서는, 100만㎡초과는 국토부장관이, 100만㎡이하의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

- 물류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류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물류단지 지정절차와 물류단지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물류단지계획으로 일원화 함(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2008.09.06 시행)
- 다만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자인 경우는 1,000만㎡, 민간 사업자는 500만㎡ 미만 규모인 경우에만 특례법이 준용된다.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물류단지가 조성된 후 조성용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조성원가의 5%이내)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지원하고 있음

○ 물류단지 개발사업 (특례법 준용)

투자의향서 제출(시행자 →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 물류단지계획 수립(시행자) →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시행자)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공람) 등 → 인허가 절차이행(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해영향평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지정권자) → 물류단지계획승인(지정권자) → 용지보상(사업시행자) → 공사착공 → 사업준공

○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사업시행자)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시·도 승인기관) → 중앙(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국토부, 시·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고시(국토부, 시·도) → 지자체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보조신청(관할 시·도) 및 자체 예산 확보 → 사업시행

※ 광특회계 지역계정 포괄보조 예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진입도로 예산 요구(보조율 : 국고 90%)

□ 개발 지원

○ 토지수용권부여

- 물류단지 지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수용권이 부여됨

○ 인허가 의제처리

-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하여 인·허가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함

○ 세제 및 부담금 경감

- 물류단지 개발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물류사업에 직접 사용시 취득세 50% 경감), 농지조성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 기반시설 국비지원

-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의 9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물류단지의 간선시설 접근성을 높여 교통혼잡 감소효과를 높이고 물류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하여 물류단지를 조기 완성시켜 물류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	-	3	9	2

□ 실수요검증제도 도입

○ 도입배경

- 시·도별로 5년 마다 물류단지의 공급총량을 결정해 온 물류단지 총량제('98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14.6)

* 공급총량이 사전에 결정되어, 계획에 없는 추가수요 발생시 단지 건설이 불가능해
물류단지 적기 공급 및 민간 투자 저해

- 총량제 폐지후, 새로운 물류단지 수요가 있으면 총량 없이 신규단지 지정
→ 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수요검증' 실시

○ 추진경과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발표(장관, '14.3.27)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14.6.27) ⇨ 총량제의 근거 폐지
- 실수요 검증반 구성('14.7.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5.6.22) ⇨ 실수요 검증 법적 근거 마련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운영('16.6. ~)
- 실수요 검증 실시('14. 9. ~ '18. 6, 17회)

* 총 17회에 걸쳐 40개 사업 평가, 22개 사업 검증통과(55.0%)

○ 개선효과

-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 가능
- 수요 발생시 적기에 물류단지 공급 가능, 기업의 물류환경 개선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물류) 전자상거래 발달로 B2C시장 급성장*, 배송전쟁, 단기 보관수요 증가, 택배 분류장 부족 등

* 최근 10년간 연평균 15.9%↑, '15년 택배물량 18억box

- (유통) 물류·유통 통합 추세, 예) Amazon, Alibaba, IKEA 등
옴니채널, 체험쇼핑 도입·확산 움직임

- (첨단산업) '물류·유통 + 인터넷·IT기술·첨단장비' 융합 트렌드

⇒ 유통은 물류비 절감, 유통+IT(전자상거래 등), 물류+산업 융합촉진

○ 기본개념

- 도심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유통시설 활용하여 물류유통 관련 신산업,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단지 조성

- 주시설(물류, 유통, 첨단산업), 지원시설(공공주택, 업무시설 등)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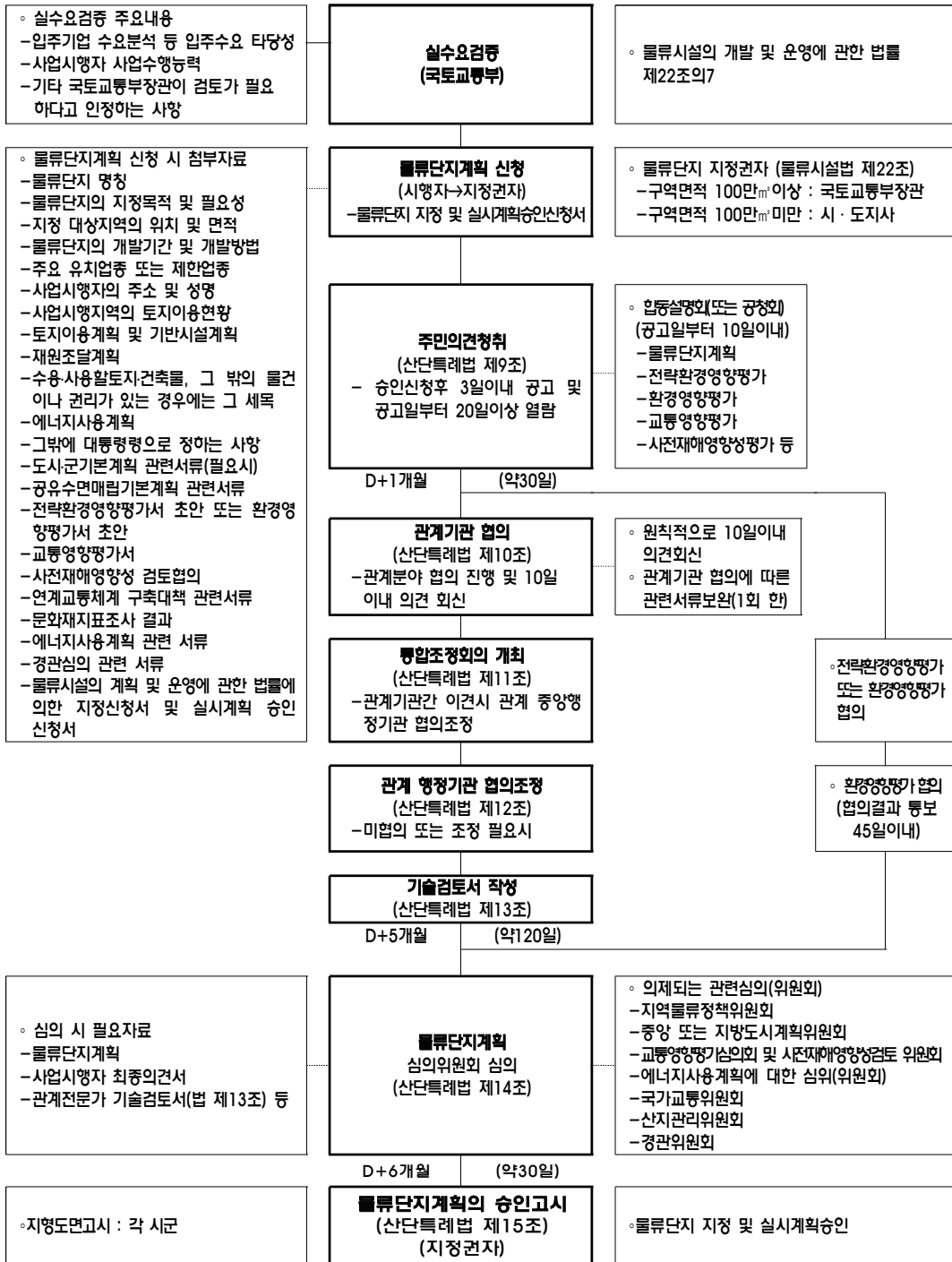
⇒ 첨단물류·첨단산업·쇼핑·전시·유통·IT 등 고부가가치 기능융합, 자동화 물류설비 구축, 온라인몰 산업 연계서비스의 일괄처리

○ 추진경위

- (제도도입)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도입계획 발표

- (법적근거) '15.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6.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시 물류단지 개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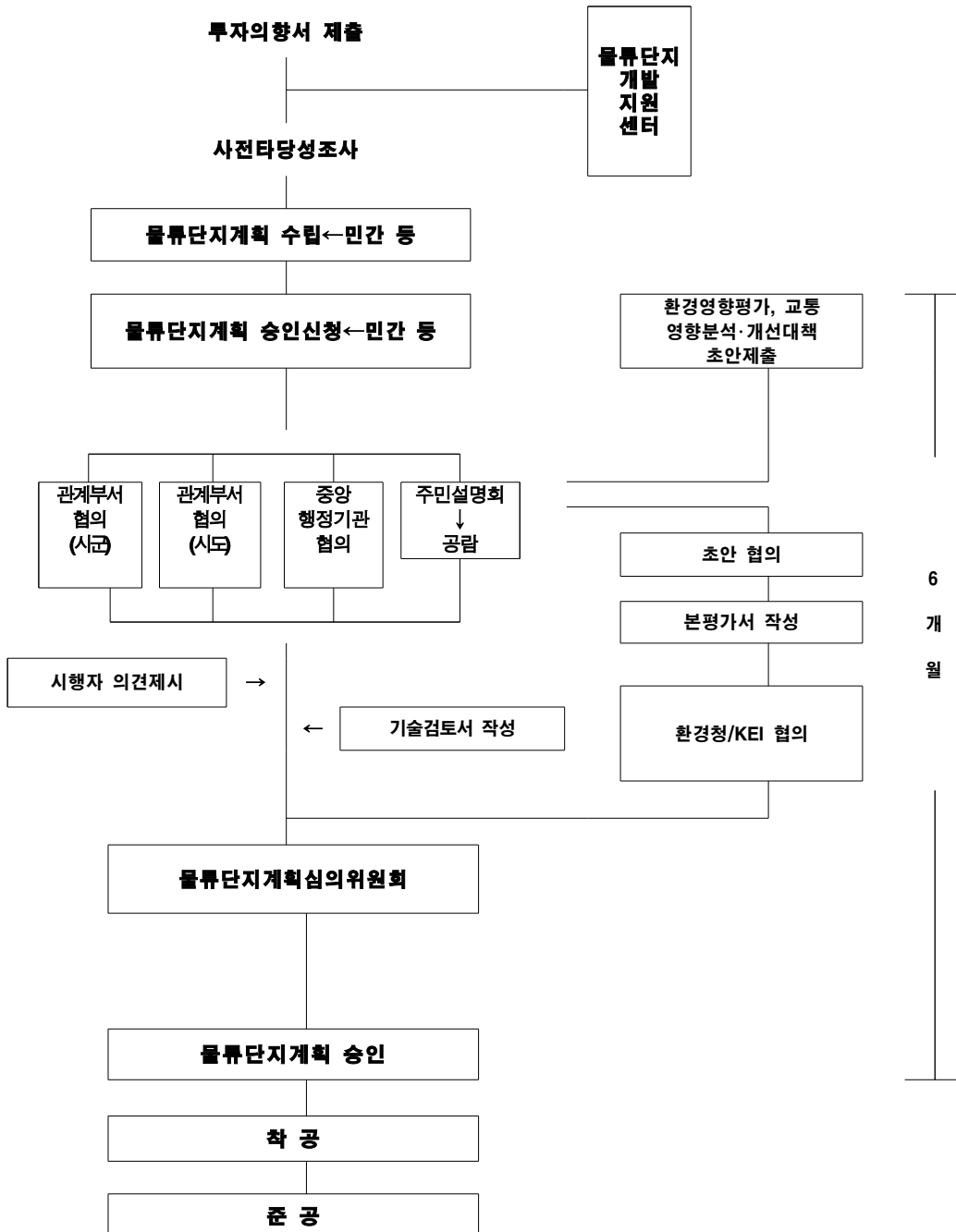


※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

※ 실수요검증 이후 행정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준용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시 물류단지 개발절차

※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 민간사업자는 500만㎡ 미만인 경우 적용



□ 물류단지 입지의 도시계획 부합

○ 도시계획 부합

- 물류단지의 입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등에 입지가능지역에 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는 물류단지 지정이 불가하며,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

○ 도시계획시설의 유통 및 공급시설중 유통업무설비 설치가능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2조)

- 유통업무설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등
- 설치가능 용도지역
 - 주거지역중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전부)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공업지역 : 일반공업, 준공업,
 - 녹지지역중 자연녹지지역 :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에 한함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종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나. 내륙물류기지

□ 업무연혁

- 1991.12.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 1993. 7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운영
- 1994. 7.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 수립공고
- 1994.12.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착공 ('99. 6 운영)
- 1995. 5.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착공 ('98.12 운영)
- 2000. 4.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운영
- 2005. 1.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운영개시(1단계)
- 2007. 4.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시행자 지정
- 2008. 12.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공사 착공
- 2010. 6. 중부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 2010. 11.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 2012. 12.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준공

□ 업무개요

○ 사업목적

- 고속철도와 기존의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망이 교차하는 지점 등 연계수송의 거점에 해당하는 물류결절점에 광역권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거점을 건설

○ 업무의 속성 및 업무내용

-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및 운영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정책개발, 재정사업 지원, 민원 해소 등 물류거점시설개발 전반의 지원업무

□ 추진배경

- 1990년대 초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내·외 수출입물량이 증가하면서 공항, 항만의 적체현상과 국도·고속도로의 혼잡으로 국가물류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비효율이 부각
- 국가경제활동의 증가는 곧 화물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하여, 기존의 개별기업 차원의 재래식 창고 또는 소규모 물류터미널로서는 늘어나는 물류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됨
- 물류시설의 부족은 운송, 보관, 포장 등 각 물류단계에서 독립, 분절된 업무체계를 형성하여 물류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이러한 화물유통체계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화물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1994. 7. 30 「화물유통체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개 거점에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로 구성된 내륙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내륙물류기지의 기능

- 규모의 경제
- 내륙물류기지 안에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대규모로 배치하여 광역권 물류거점의 역할
- 네트워크화
- 내륙물류기지에는 철도를 연결하여 부산, 인천, 광양, 평택 등 주요 항만에서 유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복합일관운송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륙 화물운송의 네트워크화를 개발방향으로 추진

□ 내륙물류기지의 역할

- 복합물류터미널(화물취급장, 화물자동차 정류장), 내륙컨테이너기지(CY, CFS)를 포함, 창고, 집배송센터, 운송수단간 연계시설(철송장), 물류정보센터 등을 모두 수용하며,
- 내륙의 대규모 종합물류거점과 항만의 배후시설로서의 역할 및 해당 도시의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함

【 내륙물류기지의 시설유형 및 내용 】

구분	시설유형		시 설 내 용	기 능	비 고
복 합 물 류 터 미 널	화물취급장		화물취급장, 사무실, 정류장소, 집배차발착장소, 보행 및 운반통로	당일취급 화물처리	국내 화물 취급
	보관 및 배송시설		상·하차 정차대, 보관창고, 배송센터	장기간화물처리 화물보관	
	보조시설		관리동, 편익동, 화물정보센터	부대기능	
	공급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변전소, 급유시설, 세차시설, 주차장	부대기능	
ICD	컨테 이너	주요시설	CY, CFS	부대기능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취급
		보조시설	CY운영건물, CY게이트, 야시장치장	부대시설	
공동지원시설			도로, 공원 및 녹지, 철송취급장, 인입선, 작업선	기간시설	

□ 유치시설

○ 복합물류터미널 (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 물류터미널의 정의

-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복합물류터미널의 정의

- 도로, 철도 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
- 일반물류터미널과 비교하면 통상 철도운송연계가 가능하도록 철도 화물 취급장이 있고 전산정보체계, 화물자동분류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이 다름
- 연계수송 외에도 화물의 집하 및 배송, 보관 및 재고관리, 배송 및 납품 대행, 화물운송 주선 및 수출입화물의 내륙통관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

○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Inland Container Depot)

- 기능

- 해상컨테이너화물이 항만물류터미널을 떠나 내륙으로 이동되어 내륙운송 수단(도로, 철도)과 연계되는 장소로서, 해상컨테이너운송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
- 항만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선적, 양하, 선적대기기능을 제외한 장치보관기능, 집화분류기능, 통관기능을 가지고 있어, 대리점, 포워더, 하역회사, 관세사, 트럭회사, 포장회사 등이 입주하여 내륙항만기능 수행

□ 건설추진절차

○ 개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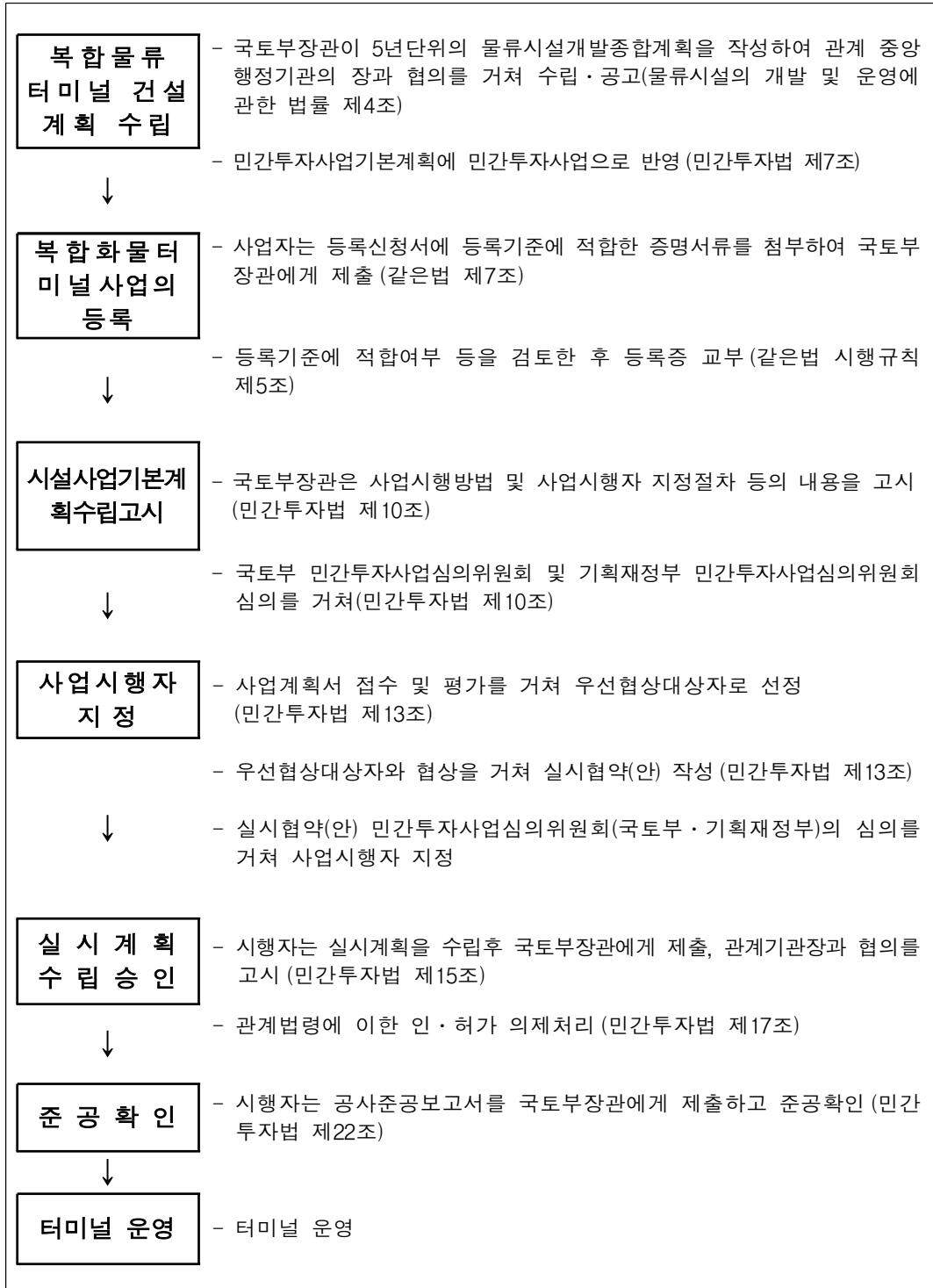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방식

- 내륙물류기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세부사업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국가가 각 권역별 내륙물류기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지를 선정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심사·평가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완공을 거쳐 영업을 개시하게 됨

- 기반시설 건설의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는 내륙물류기지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인입철도시설,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민간 사업자는 단지 내부지조성과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철송장, 컨테이너장치장(CY), 컨테이너 화물작업장(CFS) 등 기지 내 시설 설치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내륙물류기지의 건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 되는 반면, 투자비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송업체, 택배업체, 화주, 선주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민간사업 신청을 하고 있음
- 국가는 민간사업자 사업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토지매입비 전액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민간투자사업비의 15~40%를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재정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음

【 내륙물류기지(복합물류터미널) 건설 절차도 】



【 내륙물류기지 전경 (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



□ 운영 및 건설 추진현황

○ 1단계 (수도권, 부산권)

- 수도권(군포·의왕)과 부산권(양산)에 '94. 11월부터 240만㎡ 규모의 복합물류터미널과 ICD 건설을 추진하여 수도권 2개소는 1998년말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부산권은 1998년부터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 2단계 (호남권·중부권·영남권·수도권 군포확장)

- 호남권·중부권·영남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을 총178만㎡ 규모의 내륙물류기지 조성

< 호남권 >

- 1999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2002년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3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동년 5월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 중이며, 2단계 공사는 물류수요 변화, 시장상황 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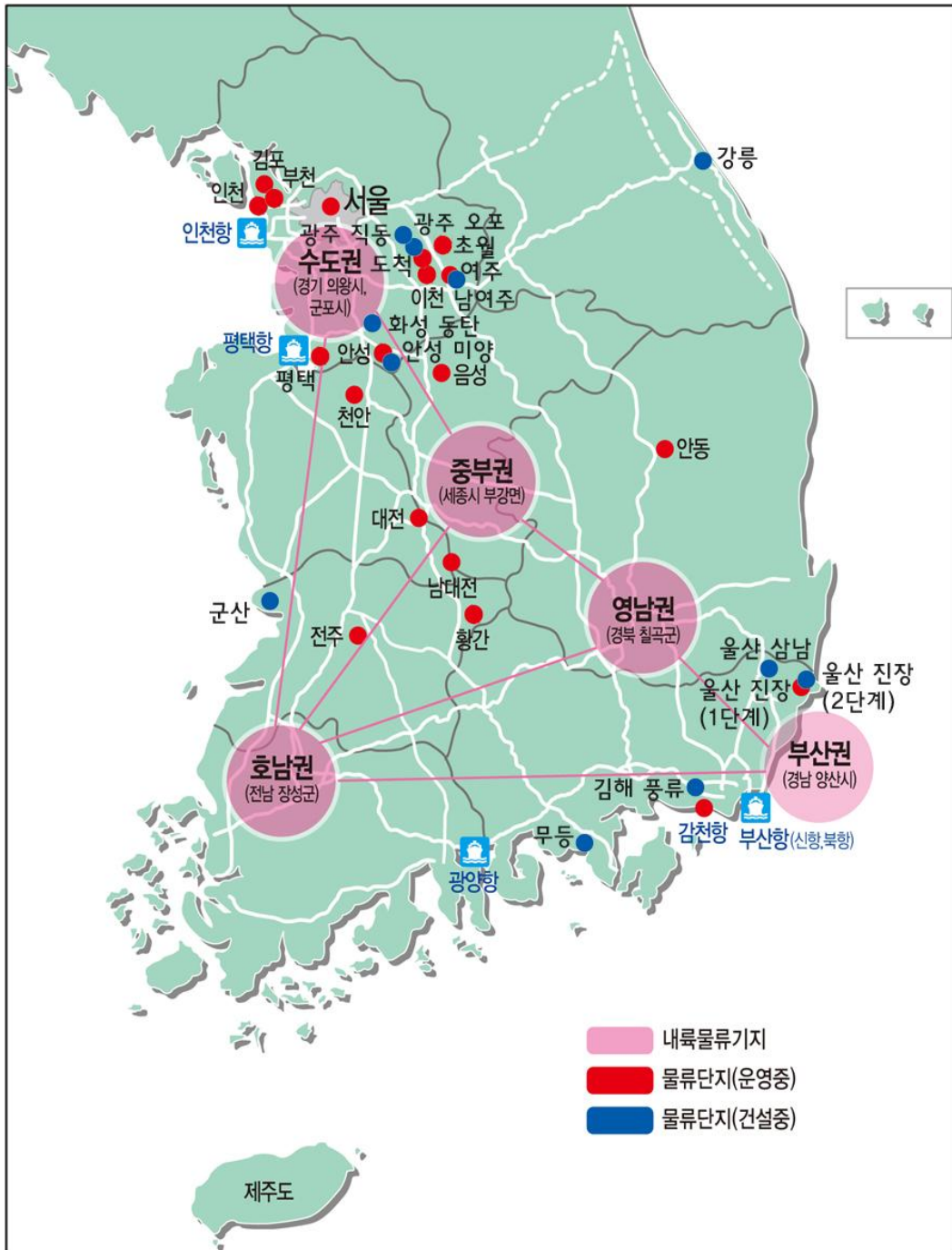
< 중부권 및 영남권 >

- 2005년 3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영남권은 2007년 5월에 중부권은 동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

< 수도권 군포확장 >

- 1998년부터 운영 중인 수도권의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2001년부터 시설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현재 38만㎡인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을 35만㎡ 규모로 확장을 추진, 2006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08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에 완공

【 전국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단지 개발도 】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추진현황 】

('18.4. 현재)

구분	터미널 명칭 /사업자	위 치 (규모)	사업비	기간	주 요 시 설	처리능력
합 계		4,185천 m ²	23,967억 원 (민간15,275, 정부8,692)		임대가능면적 : 1,074천 m ² 컨테이너 : 3,459천 TEU/년	
수 도 권	군포복합물류 터미널/ 한국복합물류(주)	경기 군포 (381천 m ²)	2,477억 원 (민간2,014 정 부463)	'92~'98	· 화물취급장(9동) · 배송센터(8동)	· 임대가능 면적 : 304천m ²
	확장사업/ 한국복합물류(주)	경기 군포 (321천 m ²)	5,973억 원 (민간3,074 정 부2,899)	'06~'12	· 화물취급장(2동) · 복합창고(2동) · 배송센터(7동)	· 임대가능 면적 : 311천m ²
	의왕 ICD/ 경인ICD(주)	경기 의왕 (753천 m ²)	476억 원 (민간298 정 부178)	'92~'96	· 컨테이너작업장(3동) · 컨테이너야드(42만m ²)	· 컨테이너화물: 1,370천TEU/년
부 산 권	양산복합물류 터미널/ 한국복합물류(주)	경남 양산 (291천 m ²)	2,543억 원 (민간2,004 정 부539)	'92~'10	· 화물취급장(7동) · 배송센터(6동)	· 임대가능 면적 : 177천m ²
	양산 ICD/ 양산ICD(주)	경남 양산 (981천 m ²)	2,829억 원 (민간1,582 정 부1,247)	'92~'10	· 컨테이너작업장(17동) · 컨테이너야드(27만m ²)	· 컨테이너화물: 1,069천TEU/년
호 남 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한국복합물류(주)	전남 장성 (521천 m ²)	4,226억 원 (민간2,891 정 부1,335)	'98~'18	· 화물취급장(4동) · 배송센터(10동) · 컨테이너작업장(2동) · 컨테이너야드(9만m ²)	· 임대가능 면적 : 44천m ² · 컨테이너화물: 340천TEU/년
중 부 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중부복합물류(주)	세종시 (480천 m ²)	2,484억 원 (민간1,562 정 부922)	'05~'10, '17	· 화물취급장(4동) · 배송센터(5동) · 컨테이너야드(4만m ²)	· 임대가능 면적 : 92천m ² · 컨테이너화물: 350천TEU/년
영 남 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ICD/ (주)영남권복합물류 공사	경북 칠곡 (457천 m ²)	2,911억 원 (민간1,850 정 부1,061)	'05~'10	· 화물취급장(7동) · 배송센터(3동) · 컨테이너작업장(1동) · 컨테이너야드(9만m ²)	· 임대가능 면적 : 146천m ² · 컨테이너화물: 330천TEU/년

【 물류단지개발 추진현황 】

(2018.6. 현재)

구 분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 계		31개소	12,370,825	52,062		
운영중	부산 감천항	부산 서 구 암남동	206,408	3,761	'91~'09	
	대 전	대전 유성구 대정동	463,887	1,590	'98~'03	
	울산 진장(1단계)	울산 북 구 진장동	453,436	1,102	'00~'07	
	음 성	충북 음성군 대소면	283,934	382	'98~'07	
	안 동	경북 안동시 풍산읍	225,411	185	'05~'07	
	전주 장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89,151	259	'04~'07	
	평택 도일	경기 평택시 도일동	486,062	724	'03~'08	
	여 주	경기 여주군 여주읍	264,242	478	'99~'10	
	광 주	경기 광주시 도척면	278,016	593	'03~'09	
	서울 동남권	서울 송파구 문정동	560,694	8,410	'04~'15	
	천 안	충남 천안시 백석동	451,182	1,518	'00~'11	
	남대전 종합	대전 동 구 구도동	558,868	1,568	'08~'13	
	김포 고촌	경기 김포시 고촌면	894,454	4,432	'10~'13	
	이천 패션	경기 이천시 마장면	796,706	2,459	'09~'13	
	경인아라뱃길 인천	인천 서 구 오류동	1,145,026	3,270	'10~'14	
	안성 원곡	경기 안성시 원곡면	682,398	2,107	'09~'14	
	광주 초월	경기 광주시 초월읍	264,529	1,383	'09~'14	
	영동 황간	충북 영동군 황간면	263,179	235	'09~'15	
	부천 오정	경기 부천시 오정동	457,856	2,496	'08~'17	
	화성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면	460,670	2,957	'10~'17	
	안성 미양	경기 안성시 미양면	136,554	1,035	'14~'18	
소 계		21개소	9,522,663	40,944		
공사중	강 릉	강원 강릉시 구정면	173,898	481	'99~'18	
	울산 진장(2단계)	울산 북 구 진장동	206,760	1,071	'11~'18	
	무 등	경남 고성군 거류면	273,799	370	'13~'20	
	김해 풍유	경남 김해시 풍유동	323,490	1,870	'14~'18	
	울산 삼남	울산 울주군 삼남면	137,227	1,650	'14~'18	
	군 산	전북 군산시 개사동	329,452	838	'14~'18	
	광주 직동	경기 광주시 직 동	571,410	2,684	'16~'19	
	광주 오포	경기 광주시 오포읍	191,417	930	'16~'18	
	남여주	경기 여주시 연라동	206,955	369	'16~'19	
	익산 왕궁	전북 익산시 왕궁면	430,085	855	'13~'18	
	소 계	10개소	2,844,493	11,118		

【 일반물류터미널 운영현황 】

('16. 5 현재)

연번	지역	명 칭	부지(㎡)	건축 연면적(㎡)
계		34 개소	1,531,579	498,088
1	서울	한국화물터미널	96,017	24,792
2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112,111	41,640
3	서울	동부물류터미널	19,463	4,465
4	부산	부산물류터미널(주)	85,667	11,753
5	대구	서부물류터미널	70,022	15,991
6	대구	북부물류터미널	9,878	2,016
7	대구	동부물류터미널	34,510	7,822
8	인천	영창화물트럭터미널	30,460	5,474
9	인천	인천한진전용물류터미널	43,538	12,983
10	인천	인천트럭터미널	45,985	1,879
11	광주	광주화물자동차터미널	35,765	5,997
12	광주	풍암물류터미널	39,304	18,994
13	대전	중부대전물류터미널	59,556	22,074
14	대전	대전공용화물터미널	60,242	36,561
15	울산	울산화물터미널	41,593	13,456
16	경기	한진화물터미널	9,395	3,331
17	경기	안산화물터미널	42,946	19,359
18	경기	안산물류터미널	35,592	3,826
19	경기	평택물류터미널	16,473	4,076
20	경기	중부공용화물터미널	160,086	98,767
21	경기	시화공단공용화물터미널	50,841	8,513
22	경기	한샘물류터미널	60,086	47,845
23	경기	서부공용화물터미널	16,500	4,822
24	충북	청주화물터미널	19,654	4,776
25	충북	보은화물터미널	13,127	568
26	충남	아산공용물류터미널	21,475	545
27	충남	중부물류터미널	33,896	9,821
28	전북	익산종합화물	23,924	4,674
29	전남	여천화물터미널	11,131	2,155
30	전남	여천트럭화물터미널	16,518	4,565
31	전남	여수일반물류터미널	51,268	39,260
32	경북	삼일물류터미널	109,833	5,845
33	경북	구미물류터미널	33,148	6,716
34	경남	진주화물터미널	21,575	2,727

7.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가. 물류표준화

□ 업무연혁

- 2006. 6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계획(안)마련
- 2006.12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계획(안) 공청회
- 2007. 4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계획 확정
- 2007.12~2012 국토해양 R&D 중장기계획 교통체계효율화 사업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으로 추진

□ 추진필요성

○ 선진국 대비 높은 국가물류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물류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10.8%), 미국(9.06%), 일본(8.92%)

☞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물류비를 낮추는 경우 2008년 기준 약 45조원의 물류비 절감가능

○ 글로벌화 및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따른 환경변화

- 국제표준기구의 표준 준수 의무 강화
-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따른 표준화 환경변화
- 일관수송의 기반인 파렛트 표준 선점 경쟁

※ 미국 : 48×40inch(1,219×1,016mm) 위주

유럽 : 1,200×800mm 중심으로 1,200×1,000mm도 사용

중국 : 1,200×1,000mm 사용 권장 및 1,100×1,100mm도 사용

한국, 일본 : 1,100×1,100mm

□ 목표

-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 표준체계 확립
 - 우리나라 물류표준화 현주소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우리나라 물류미래상 구상
 - 물류표준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8%)으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 국제물류 표준화 협력 및 동북아 선도
 - 국제물류 표준활동(ISO 등)에 적극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화에 대응
 - 한·중·일 동북아 물류협의회 운영 선도

□ 사업내용

① 최종목표

- 물류표준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물류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가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표준화 추진을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과 선진국과의 물류표준화 부문에서 경쟁우위 확보
- 개발된 물류표준화 기반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국제 물류표준화 선도



② 사업개요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 사업 목적

- 일관수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등 물류 단위활동과 단위활동간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한 물류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 표준체계 구축
 - 물리적인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물류정보의 일관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 표준화 및 물류보안 표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국제 물류표준화 선도
- 물류표준화 기반 조성
 - 국제물류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물류인프라 설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 물류표준화는 관련 기능간 유기적 ULS(유닛로드시스템)가 이루어져야만 표준화 선진국 진입가능
- ◇ 물류정보 및 보안의 표준화는 물류흐름의 원활유와 같은 존재로서 물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 친환경 물류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의 달성의 기반을 마련

-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 수송, 운반·하역, 보관 분야에 대한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체계와 연동 가능하고 최대 적재효율이 가능한 선진국형 표준 포장 모듈 기술 개발 및 국제 ISO 표준화

- 회수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 물류시스템 구축
- 화차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탈부착식 수송용기 표준 선도기술 개발
- 보관센터 생산성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표준 설계기준 개발 및 설계 지원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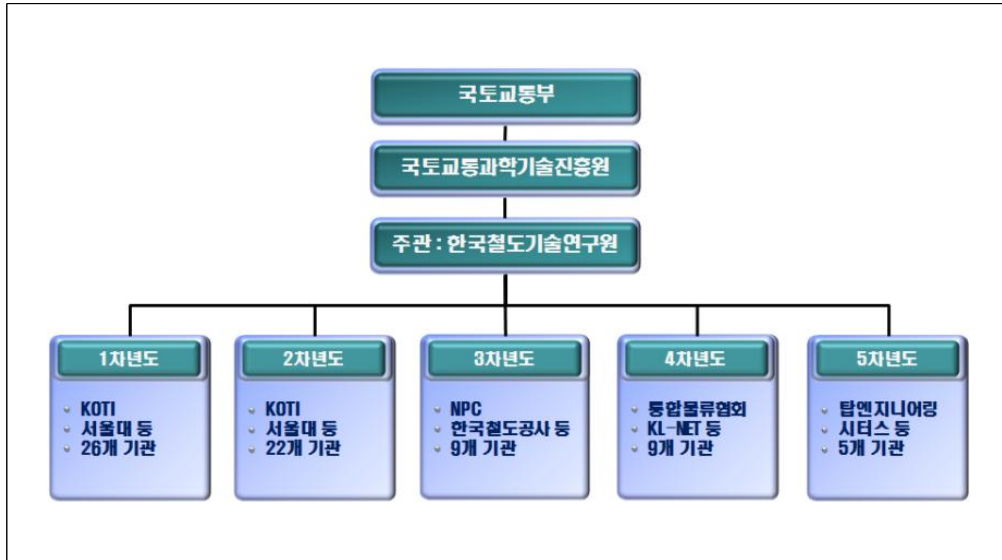
○ 물류정보 표준화 추진 및 물류보안기술의 고도화

- 물류정보의 원활한 공유·유통·활용을 위한 물류관련 코드 및 데이터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 신뢰성 있는 물류DB 구축을 위한 표준체계 개발
- 세계적 보안노력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별 맞춤형 물류보안매뉴얼 구축지원기술 개발

○ 물류표준화 확산 및 친환경적 물류기반 구축

- 수송수단 및 포장모듈과의 적재율 향상 및 국제 표준체계와 연동 가능한 합리적 파렛트 표준 개발
- 물류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개발
- 물류표준화 효과의 정량적 측정 및 평가를 위한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적 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물류프로세스 표준화 및 위험물수송 안전 관리체계 개발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 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 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의 주요성과

① 일관수송체계 표준화

□ 표준 포장모듈 및 포장용기 개발

○ 포장모듈 개발 및 국제/국내 표준화

- 1100×1100mm 및 1200×1000mm 파렛트 모두 99% 이상의 적재효율을 가지는 600×500mm 계열 공용 포장모듈 개발
- 국제표준 : ISO 3394 개정 완료(2012.10)
- 국내표준 : KS T 1002 및 LS A 01531 개정 추진

○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개발 및 시범사업

- 규격 : 1100(L)×1100(W)×1065(H)mm
- 접이식 구조 : 일체형 대비 62.8% 체적 감소
 - * 빈 용기 회수 및 보관시 기존 대비 350% 적재량 증가
- 내륙수송용 제주감귤(가공용)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기술실시계약 체결('10.12, (주)NPC) 및 상용화 완료
 - * 특허 3건 등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 시제품]

□ 수송장비 표준 및 수송용기 개발

○ 탈부착식 수송용기 개발

- 컨테이너 운송과 벌크화물 운송을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차시스템
- ISO 표준컨테이너 규격 준용
- 표준 컨테이너 취급방법과 동일한 취급 가능
-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기술실시계약 체결('11.12, (주)고려차량) 및 상용화 완료
 - * 특허 4건 등록, 2건 출원



[탈부착식 수송용기 시제품]

□ 보관시설 표준 정합시스템 개발

○ 국내 보관시설 표준체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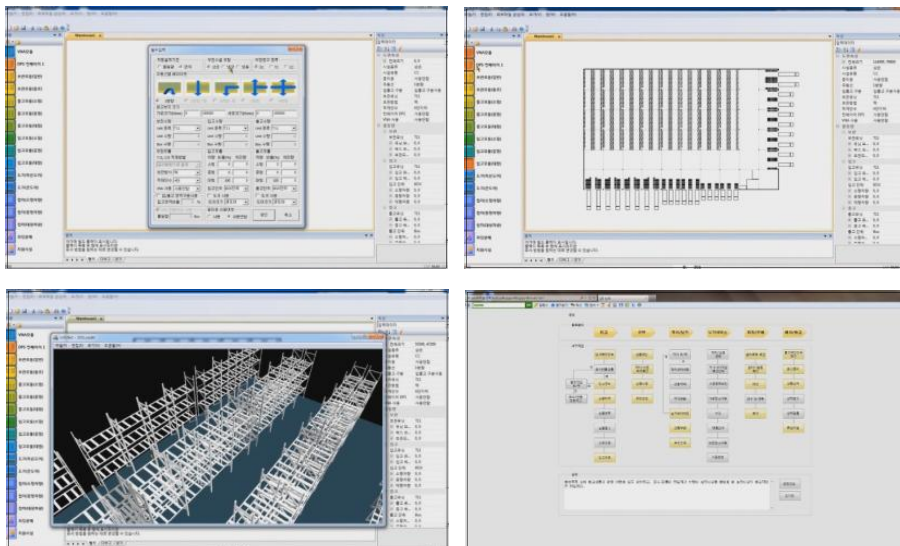
- 보관시설 실측을 통한 현황분석 (388개 보관시설 실측)
- 보관시설 활동 및 인프라 분류체계 제시
-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보급 (2010.1.4 시행)
- 보관시설 관련 KS 제·개정(안) 및 관련법 개정(안) 개발
 -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한 내용 개정



[보관시설의 표준화 대상]

○ 보관시설 설계 지원시스템 개발

- 보관시설의 표준 Layout 설계기준 개발
 - * 10개 설비 및 공간 대상 16개 표준화 대상 선정
 - * 일반상온과 냉동/냉장별로 TC/DC/CC형 단층, CC형 복층 제시
- 보관시설 표준 작업기술서 개발
 - * 6개 물류활동과 36개 작업 분석
- 보관시설의 설계부터 기획, 운영까지의 전반을 지원
 - * 특히 1건 출원



[보관시설 설계 지원시스템]

② 물류 정보/보안 표준화

□ 물류정보 표준체계 개발

○ 물류정보 획득/연계를 위한 물류정보 표준 개발

- 공공 물류정보서비스 통합분석
- 국내 : KS 및 KEC 표준전자문서 개발
- 국제 : UN/CEFACT 표준전자문서 개발

* 전자문서 : BRS(Business Requirements Specification), RSM(Requirements Specification Mapping), CC/BIE(Core Component/Business Information Entity)

○ 국내외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화 : UN/CEFACT ODP 6단계 추진 완료
- 국내표준화 : 국내 단체표준(KEC) 3건 제정 완료(2011.6) 및 국가표준(KS) 2건 제정 추진 중

* UN/CEFACT e-Asia Award Trade Facilitation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1.11)

□ 물류DB 표준체계 개발

○ 물류DB 구조 설계 및 조사방법 개발

- 물류산업분류기준 제시, 물류DB체계 및 제공항목 선정
- 항목별 기 조사/수집여부 확인, 물류DB항목 조사방법 제시
- 통계항목 가공절차, 제공형식, 갱신절차 결정

○ 물류DB항목 조사지침 제시

③ 물류표준화 확산 및 친환경적 물류기반 구축

□ 일관수송용 파렛트 규격 합리화

○ 파렛트 듀얼 표준화 추진

- 국내 일관수송용 파렛트 표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T11형 파렛트(1100×1100mm) 및 T12형 파렛트(1200×1000mm)의 듀얼 표준화

○ 파렛트 듀얼 표준화 관련 표준 개정 진행

- 공청회 개최 (2008.9)
- 국토교통부 방침 확정 및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이관 (2009.3)
- 유닛로도시스템통칙(KS T 0006) 개정 완료 (2013.12)
- 유닛로도시스템통칙 관련 KS 19건, LS 16건 개정 추진 중



□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개발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및 기본해설서 개정(안) 개발

- 산정지침 개정(안) : 7건
- 기본해설서 개정(안) : 일반기준 42건, 간이기준 16건

○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개발

- 국토교통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적용
- 물류비 산정의 편의성 제공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설명회 및 보급

- 설명회 : 전국 대상 7개 거점지역의 320개 기업 대상
- 홈페이지를 통한 보급 : 1,300여개 업체 이상

□ 물류표준체계 구축사업 시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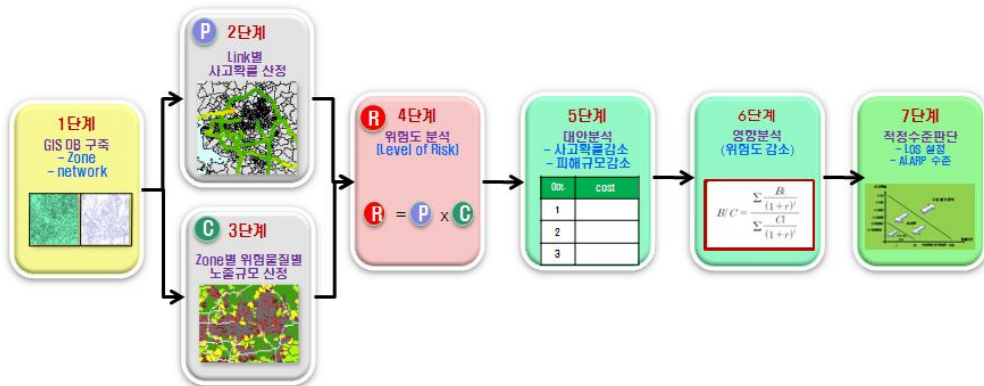
- 물류분야별(수송, 포장, 보관, 하역) 효과지표 정리
- 물류표준화 현황조사 및 효과평가 지침 개발
- 물류표준체계 구축 종합평가모형 구축
- 물류표준화 효과평가 프로그램 개발

	수송	포장	보관	하역
표준화율 개선효과	수송표준화율 변화량	포장표준화율 변화량	보관표준화율 변화량	하역표준화율 변화량
물류표준 개선효과	단위수송비용 감소분	단위포장비용 감소분	단위보관비용 감소분	단위하역비용 감소분
전략적 효과	국제물류표준획득 등 정성적 제시			

[물류표준체계 구축사업 평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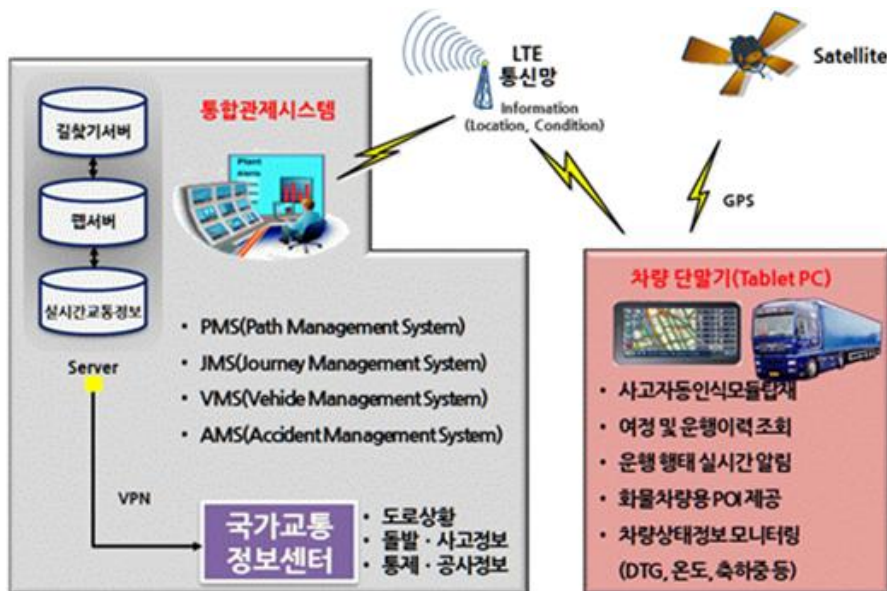
□ 친환경적 물류기반 구축

- 위험물 안전수송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 위험물 수송관리 7단계 표준화 절차 개발



[위험물질별 O-D간 위험물 수송관리 표준화 절차도]

- 위험도 및 통행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수송경로 알고리즘 개발
- 운전자 운전형태 및 차량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사고 자동인식 및 위험물질별 대응체계 개발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 관리시스템]

나. 물류정보화

□ 물류정보화 추진현황

사 업 개 요

◇ 목적

- 육상·해상·항공 분야 물류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도모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 주요 사업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 물류창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07~계속

○ 추진현황

- '07.9 : 물류정책위원회 심의의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 '07.7.30 : 범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확정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포함
- '07.1'0 : 차세대 전자정부지원 사업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포함
- '08.12~'09.12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1~2단계 사업)
- '12.9~'12.11 : 물류창고등록관리시스템 구축(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4단계 사업)
- '08.12 : 당·정IF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 마련(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 '11. 6. 1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11.8~12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기초시스템 개발
- '12.12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고시
- '12.6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위탁운영기관 선정(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 '13.9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13.12 : 화물운송실적관리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기능개선

□ 주요 사업내역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 육·해·공 종합물류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도모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 정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인 『글로벌 통합물류·무역정보망 구축』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지식경제부·관세청 공동 추진

(단위 : 백만원)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비고
구축사업비	583	1,300	1,070	-	-	1,653	-	-	-	-	-	4,606	전자정부 지원사업비
운영비	0	160	180	180	180	180	180	250	250	300	300	2,160	우리부 예산
계	583	1,460	1,250	180	180	1,833	180	250	250	300	300	6,766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신고제·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기준 등과 연계·활용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08.12 당·정TF에서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 마련하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11년)
- '13.1월부터 화물운송 실적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운송·주선사업자가 실적을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12년)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기관(한국교통 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선정 및 콜센터(1899-2793) 운영('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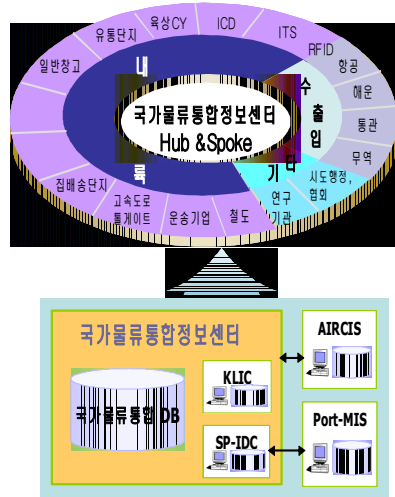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비고
우리부	362	620	495	600	613	874	639	4,203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 **(목적)** 육상·해상·항공 등의 물류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도모하고 물류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민·관의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물류정보 HUB 구축(국가 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 국가물류통합DB를 구축하여 기업 및 정부의 정책결정 지원
- 국가물류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 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
 - 제1단계('07~'08) : 계획수립, 정보화전략 (ISP) 계획 마련, 공공기관 연계 착수
 - 제2단계('09~'10) : 시스템 안정화, 민간 물류망 연계
 - 제3단계('15) : 시스템 고도화, 민간 물류망 연계 추진



* 정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 ☞ KLIC : 국제물류정보센터, SP-IDC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AIRCIS : 항공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 추진현황 및 계획

- 범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확정('07.7.30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7. 9
- 상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 '08. 5 ~ 10
- 시스템 개발·공공부문 연계 등 구축사업 착수 : '08. 10
- 물류창고업 등록관리시스템 개발 : '12.7 ~ '12.11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위탁운영 실시 : '10.11 ~ 계속

□ 물류창고정보시스템

○ 개요

- 화주는 원하는 창고를 쉽게 찾고 창고업체는 공실율을 최소화하도록 인터넷으로 물류창고 DB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목적

- 화주와 창고업체 간 인터넷을 통한 창고정보 공유를 통해 화주는 원하는 창고를 쉽게 찾고, 창고업체는 공실률을 최소화

○ 사업 내용

- 물류창고 수요자 및 공급자가 창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창고정보 시스템 구축 ('14~'15')

- 약 700여개 창고정보DB를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

* (창고정보) 창고 내·외부 시설사진, 냉장·상온 등 보관가능 물품 정보 등

○ 추진현황 및 계획

- 인터넷 물류직거래장터 시범서비스(물류창고) 구축 ('14.12)

* 약 350여개 창고정보DB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

- 물류창고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6.6)

* 민간포털(블로그 및 SNS 등) 연계를 통한 이용자 확대, 창고DB확충(700개→1,000개) 및 정보 검색, 열람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물류창고정보시스템 운영 실시('15~계속)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홍보물 배포 등 활성화, 콜센터 운영 등 시스템 유지관리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

○ 개요

-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통하여 육상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및 운송사의 운송기능 회복 필요
- *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 하여야 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1.6.15), 시행('13.1.1), 벌칙('15.1)]

○ 목적

- 화물운송·주선실적에 대한 등록·관리를 전산화하여 운송주체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물류정책 수립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주체의 신고편의 제고 및 화물운송선진화 관련의무 준수여부 파악·관리 목적

○ 사업 내용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의무화를 최적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11~'13)
- 유관정보망의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투명화 기반 마련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위탁화물관리책임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화물운송 시장의 선진화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추진현황 및 계획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1. 6)
 - * '13년 1월 1일부터 운송·주선·가맹 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국토교통부에 신고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기초시스템 개발('11년)
- 시스템 본격 개발(기초자료구축, 연계망, 클라이언트 개발)('12년)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이중화 구현 및 추가 개발('13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5. 12)
 - * 실적신고 정보보안 강화, 1대사업자 등 실적신고 제외 등
- 실적신고 주기 및 벌칙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 시스템 기능개선('17.12)

8. 육상운송 관리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정 의(법 제2조제3호)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을 말함
-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벤형화물자동차)
 -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4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 유 형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주선사업

□ 개 념(법 제2조 제4호)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차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유 형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 현 황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13,774	13,889	14,036	14,185	14,829	14,094	14,230
이사주선(개)	4,767	4,831	4,900	4,904	4,756	4,400	4,711
일반주선(개)	9,007	9,068	9,136	9,281	10,073	9,694	9,519

* 전국 시·도 자료 취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허가기준(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4)

항 목	허 가 기 준
사 무 실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or 자산평가액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
상용인부	2인 이상(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한다)

○ 허가 업무 및 관할관청

- 화물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4조)→지자체 위임(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호)
-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4조)
- 관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 구비 여부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 교부 후 20일 이내, 법 제4조제1항 결격사유 유무, 허가기준 적합,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허가

○ 공급기준(법 제24조 제6항 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 주선사업의 시장수급 분석결과 초과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에 의해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법 제28조 준용규정에 의한 제16조상의 사업의 양도·양수는 가능

○ 협회 위탁업무(시행령 제15조)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하는 때에는 제외

-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됨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여서는 아니 됨
-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됨
-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함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제도

-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 허가신청 첨부 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허가기준(법 제3조제5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1)

구분 \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기준 대수	○ 1대 이상	○ 1대	○ 1대 이상. 다만, 집화 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최대 적재량 5톤 이 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 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구분 \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허가절차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서류 구비 여부 및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허가증 교부
- 관할관청은 화물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사항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교부
 - 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 차고지설치여부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대장에 기록·관리

□ 운송사업자의 책임(법 제7조)

-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
- 화물이 인도기간을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1조)

-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동시행규칙 제21조 참조)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안됨
- 운송사업자는 제2조 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안됨('05.12.7 신설)
-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됨('05.12.7 신설)
-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는 안됨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13.7.16. 신설)
- 위수탁차주나 1대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함('11.12.16. 신설)
-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함
-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 가입 안됨(법률개정으로 '19.7.1. 삭제예정)
-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 받아서는 안됨(법률개정으로 '19.7.1. 삭제예정)
-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함(법률개정으로 '19.7.1. 삭제예정)
- 최대 적재량 1.5톤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함('15.6.22 신설)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동의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14.5.28 신설)
-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 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14.5.28 신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14.5.28 신설)
- 운송사업자는 과적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15.6.22 신설)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법 제11조의2, '13.1.1. 시행)

- 2대 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50/10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다만 위수탁차주와 1년 이상 장기계약한 경우(연간 운송횟수가 96회 이상일 것)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 다만 위수탁차주와 1년 이상 장기계약한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 정보망이나 법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한 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30/10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법 제12조)

- 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2013.7.16. 신설)
- 안전운전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고 운행
 -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할 것
 -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 개선명령 및 업무개시명령(법 제13조, 제1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 운송약관의 변경
 -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

□ 실적신고 및 관리 등(법 제47조의2, '13.1.1 시행, '15.1.1. 행정처분)

-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화주와 계약한 실적과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함('13년 및 '14년은 연간 시장평균운송 매출액의 10/100 이상, '15년은 15/100 이상, '16년부터는 20/100 이상 최소운송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적신고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 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폐차 금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2.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제1호 외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3. 제2호에 따른 대차는 제1호에 따른 대차가 완료된 이후 대차를 허용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대·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협회,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차와 관련한 별도의 배정기준 및 세부절차(대차순서, 대차시기 등)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 관할관청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다음 공급기준 고시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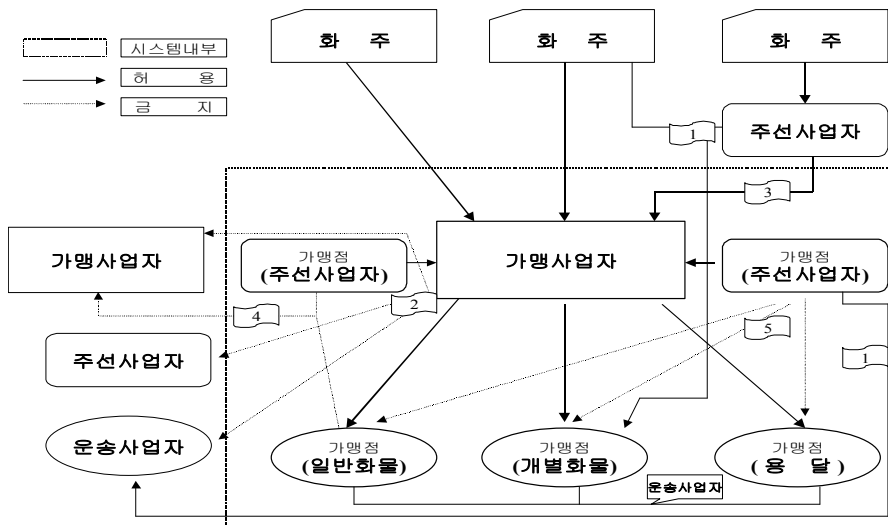
□ 개 념(법 제2조 제5호)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가맹점(운송사업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 목 적

-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과정을 축소하여 거래비용 절감 및 거래과정의 투명화 유도
-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네트워크로 화주와 영세 운송·주선업체간 직거래 유도 필요
- 영세한 운송·주선업체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 질의 제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화물운송가맹사업 체계도



- ①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은 화주로부터 직접 물량수주 가능하고 주선사업자인 가맹점은 가맹사업체계 밖의 운송사업자에게 주선 가능
- ② 가맹사업자는 확보한 운송물량을 외부 가맹사업자, 주선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제공금지

- ③ 가맹사업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로 보지 아니함
- ④ 가맹점이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 가맹계약체결 금지
- ⑤ 가맹점인 주선사업자는 가맹점인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운송물량 제공 금지

□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항 목	허 가 기 준
허가기준대수	500대이상(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이상 분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운송시설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 허가신청은 화물운송가맹사업허가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 허가절차
 - 허가신청서 접수시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허가증 교부
 -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 교부
 - 가맹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 및 일반화물연합회에 통지
-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업체 현황 : 총 13개업체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허가일	비고 (차량대수)
1	카고넷(주) 박성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1	'05.3.24.	656
2	한국로지스폴(주) 서병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05.9.23.	839
3	내트릭(주) 김선박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1306호	'06.4.25.	719
4	케이엘(주) 강전석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178 비전탑 907호	'09.8.26.	725
5	(주)한진 서용원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11.7.25.	2,110
6	한국통운(주) 김춘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13.7.3.	1,987
7	세방(주) 박홍수	부산 남구 북항로 141(감만동 624)	'13.11.11.	670
8	CJ대한통운(주) 박근태, 손관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대한통 운빌딩	'14.3.4.	554
9	(주)한트릭 김영진	부산 중구 대교로 155, 7층(중앙동 4가, 삼호중앙)	'14.4.9.	591
10	(주)한익스프레스 이재현	경기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03	'15.7.30.	519
11	(주)티피엠로지스 민화영	부산 중구 총장대로5번길 8, 4층	'16.8.30.	621
12	(주)이맥스물류 이주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2(중앙 동4가, 유창빌딩 11층)	'16.12.02.	717
13	(주)미래티엘에스 장중택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영통동 1021-4번지) 청명타운텔 402호	'17.6.01.	630
14	동원산업(주) 이명우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 빌딩 8층	'17.9.11.	649

마. 화물운송사업의 차고지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등)

-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는 차고지의 임대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 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 면제 가능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 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면제 가능

※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비고 중 차고지 관련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바. 창고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상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당해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운송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시·군·구)

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청장은 화물터미널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사용계약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차가능면적의 판단은 당해 터미널내에서 건립된 건물 및 부대시설, 화물하차장, 조경면적 등을 제외한 실제 주차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나. 인근 시·도 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확보한 법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사용을 허용해야 함.

다.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공한지, 고수부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등 운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바. 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제도

□ 필요성

-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년마다 신고

□ 제도의 내용

- 허가사항 신고제도(법 제3조제9항, 제24조제7항, 제29조제4항)
 - 화물운수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허가취소 또는 정지 처분 및 개선명령

□ 허가기준 및 영업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부실업체의 퇴출 촉진

-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M&A)등 지원방안 강구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

《 시행령 》

-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신고주기를 규정 : 5년

《 시행규칙 》

- 신고기한과 신고서에 첨부될 서류 규정
 -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제외)

- 차량대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확보면적,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첨부서류 필요

□ 5년마다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등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필요
- 최저 자본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케 하여 건실한 운수사업을 육성하고
- 사업자의 형식적인 차고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도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음

□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마다 신고
- 건설업의 등록말소
 - 신고를 허위로 한 때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마다 신고 건설업의 등록취소
 - 신고를 허위로 한 때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

사. 적재물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 개 요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물류소비자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한 이용확대, 이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경영안정과 물류서비스 향상 및 보험요율 차등제 등을 통한 자율적 피해예방체제 구축 유도 등의 부수적 효과 기대
- 적재물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손해 보험사 등의 적재물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 적재물보험의 구성
 - 상품명칭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 보상내용 :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을 운송, 보관,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서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 보상범위 : 수탁화물의 가액 및 사고처리 제비용
 -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사업자별로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각각 2,000만원(이사 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
 - 취급회사 :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사업자

□ 가입대상 :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벤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

-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제2005-53호, 2005.3.10.)한 차량

- 시멘트(시멘트 혼합물 포함) 수송전용, 사료 및 곡물 수송전용,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전용, 석유류 수송전용 차량
- 고철류 수송전용, 목재 수송전용, 골재(모래, 자갈, 흙 등) 수송전용, 석탄 수송전용, 아스콘·아스팔트유 수송전용 차량
-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 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진개차, 물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큇카), 오일통분쇄차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미만인 화물차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 (운송주선사업자) 이사화물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

□ 책임보험계약 공동 체결

○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아래의 경우 다수의 보험회사 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 가능

-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보험회사 등의 의무사항

- 보험회사 등은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법 제36조)
- 보험등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등은 아래의 경우외 에는 책임보험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안됨(법 제37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 말함)된 경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명령을 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 말함)된 경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 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의무(법 제38조)
 -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계약의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함.
 - 계약기간의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함.

-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함.
- 통지내용 : 운송사업자의 상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 포함

□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 가입대상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함

○ 화물자동차운송주선담보

- 가입대상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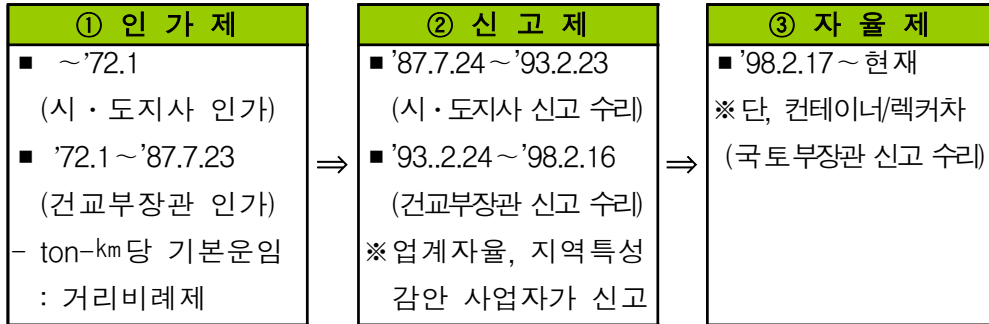
○ 특별약관

- 초과적재 허가범위 확장 특별약관
- 구간운송 특별약관
- 화물운송부수업무 담보 특별약관
-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Ⅰ),(Ⅱ)
-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 안심운송 특별약관
- 분담금 분납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벌칙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사업자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대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참조

아. 화물자동차의 운임제도 변천과정



*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에 처벌(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과징금 10~20만원)

① 인가운임제(~'87.7.23)

- 「공로부문 업종별 운임요금 조정기준 및 준수요령」('81.6)에 따른 정부 인가운임제 시행
- ton-km당 기본운임에 따른 거리비례제, 지역별 차등 및 거리체감제 운임 등 변천 시행
- ⇒ 운송(주선)시장의 경직성(정기, 구역, 노선), 업계의 자율성 훼손 등에 따른 운임제도 변경 요구로 신고요금제로 전환('87.7)

② 신고운임제('87.7.24~'98.2.17)

- 업계 자율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운임결정 등을 위해 구역화물 및 특수화물차 운임을 시·도지사 신고운임으로 전환('87.7)
- 운임산정 기준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신고운임의 수리주체를 교통부장관으로 환원('93.10)

③ 시장자유경쟁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요금제로 전환('98.2)

* 단, 컨테이너운송 또는 렉카차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예정

□ 도입배경

-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운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낮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과로·과속·과적 운행** 및 **집단운송거부** 지속

* 부산→의왕 40FT 편도('16) : 신고 75만원, 시장 44만원(신고의 58%)

** 집단운송거부 피해 : 총 10.1조원 (('03) 1.3조, ('08) 8.5조, ('12) 0.2조, ('16) 35억)

-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8.3.30)

□ 도입방안

- 2개 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해 3년 일몰제 도입('20.1.1~'22.12.31)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운임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도 병행 추진

- 국토부가 원가를 조사하여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시하면,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말** 다음연도에 적용할 원가 및 운임을 **공표**

* 구성(안) : 화주 대표, 운송업계 대표, 화물차주 대표 등 총 15명 이내

□ 향후계획

- '19년도 원가조사 예산확보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18.12)

- 원가조사('19.1~9) 및 안전운임위원회 심의('19.10)

-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20.1.1)

차.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

(1) 유류세 연동보조금

□ 도입 배경

- 유종 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100:50:30('01.6) ⇒100:85:50('07.6)

- '13.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한시적 지급** 중

* 경유 유류세(528.75원/ℓ) = 교통·에너지·환경세(375원/ℓ) +
교육세(56.25원/ℓ) + 자동차세(97.5원/ℓ)

* LPG 유류세(221.36원/ℓ) = 개별소비세(275원/kg) + 교육세(41.25원/kg) +
판매부과금(62.283원/kg) = 378.533원/kg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직영은 운송사업자 위·수탁 차량은 차주 수령)

□ 지급 현황

- 지급단가('12.1월 이후)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 산출기준 : '01.6월 당시 유류세 인상분의 100%

【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단위: 원/ℓ)

구분		01.1~ 01.6	01.7~ 01.12	02.1~ 02.6	02.7~ 03.6	03.7~ 04.2	04.3~ 04.6	04.7~ 05.6	05.7~ 06.6	06.7~ 07.22	07.23~ 08.3.9	08.10~ 08.10.6	08.11~ 08.12	09.1~ 09.5.20	09.6~ 10.1	10.2 ~11.12	12.1 ~현재
경유	교통·에너지· 환경세	155	185	191	232	261	255	287	323	351	358	335	328	364	375	375	375
	유류세	183.21	234.03	241.6	294.64	339.17	339.15	391.75	448.97	494.19	522.77	470.95	470.85	519.88	520.83	518.18	528.75
	보조금	-	50.8	58.4	55.7	100.24	100.22	152.83	210.04	283.11	342.20	287.73	287.63	336.67	337.61	334.97	345.54
LPG	개별소비세 (원/kg*)	23.39 (40)	66.67 (114)	66.67 (114)	118.71 (203)	173.69 (297)	173.69 (297)	223.39 (382)	178.95 (306)	178.95 (306)	160.82 (275)	147.37 (252)	147.37 (252)	160.82 (275)	160.82 (275)	160.82 (275)	160.82 (275)
	유류세	23.39	87.68	87.68	151.48	216.64	216.67	282.18	241.93	241.93	221.36	205.90	205.90	221.36	221.36	221.36	221.36
	보조금	-	64.2	64.2	64.1	129.2	129.2	194.71	154.46	186.50	197.96	182.50	182.50	197.97	197.97	197.97	197.97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 '01~'16년까지 17.7조 원('16년 1조 719억 원) 지급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 체	281,611	1,441	2,411	5,648	11,186	14,769	18,584	22,639	21,801	19,901	19,477	22,957	24,498	24,334	24,053	22,786	25,126
화물차	176,978	342	635	1,895	4,374	6,428	9,439	12,911	14,123	15,038	14,872	15,297	16,092	16,099	15,863	16,379	17,191
버 스	40,605	400	584	1,381	2,283	3,045	3,832	5,376	3,666	1,054	1,053	3,277	3,263	3,038	3,037	2,114	3,202
택 시	64,028	699	1,192	2,372	4,529	5,296	5,313	4,352	4,012	3,809	3,552	4,383	5,143	5,197	5,153	4,293	4,733

○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10.2.1.~)

(단위: ℓ/월, 원/월)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지급 기준량(경유)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경유 차량 (345.54원/ℓ)	한도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한도금액	236,004	350,378	534,550	767,099	932,958	1,057,007
LPG 차량 (197.97원/ℓ)	한도량*	1,024	1,521	2,320	-	-	-
	한도금액	202,721	301,112	459,290	-	-	-

* LPG 차량 한도량은 경유 차량 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

○ 소요재원 :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시·군세)

□ 근거법령

○ 지급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동법 제44조제3항)

○ 유가보조금 산정

- 경유(345.54원/ℓ): '10.2월 유류세(528.75원/ℓ) - '01.6월 유류세(183.21원/ℓ)
* '12년부터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2%)에 대한 유류세 면제 폐지
- LPG(197.97원/ℓ): '09.1월 유류세(221.36원/ℓ) - '01.6월 유류세(23.39원/ℓ)
-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

□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 산정

- 익년도 시·군별, 업종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 시·도 : 12월)

② 당해연도 자동차세 세입추정액 확정

-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당해연도 자동차세 세입추정액 산정(1월 중)

③ 각 시·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산정

- 시·도로부터 받은 시·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과 자동차세 세입 추정액을 기초로 시·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 비율 산정
- 안분비율 및 안분금액에 대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및 각 시·도에 통보(2월 중순까지)
-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시·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에 따라 자치단체예산 편성

④ 자동차세 세입액 안분

- 자동차세 세입징수관할 시장·군수(11개)는 정유공장으로부터 매월말 일괄 징수한 자동차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부
- 울산시장은 자동차세 세입액을 총합하여 매월25일까지 시·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시·군에 배분

⑤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

카.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제도

□ 개 요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질향상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 도입
-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및 교육, 자격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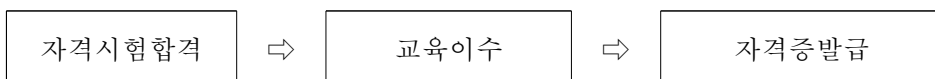
□ 자격시험 대상 및 면제대상

- 자격시험 대상
 - '04.1.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차 운전 가능
- 자격시험 면제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04.1.20)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한 자
 - '04.7.21~'05.1.20 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접수 마감일 기준, 소형 운전면허 제외)
 -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기준 :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운전적성정밀 검사 기준(신규검사)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취득 * 필기시험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취득 가능

< 필기시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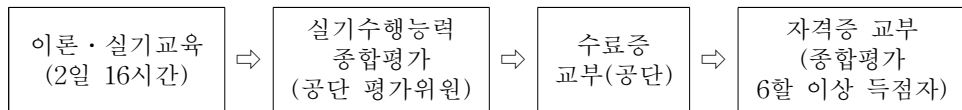
- 자격증 취득절차



- 자격시험합격기준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 교육이수기준 : 8시간 교육 이수
- 교육사항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②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③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④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⑤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시험과목(4과목)
 - ①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② 화물 취급 요령
 - ③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④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체험교육 >

- 자격증 취득절차



- 교육기관(장소)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 합격기준
 - 평가기준 : 「교통안전체험교육 운영 및 평가요령」
 - 평가내용 : 4개 과목, 4개 유형에 대한 실기수행능력
 - 평가방법 : 교육생 개인별 체험교육 담당교수가 직접 평가
- 교육이수기준 : 교육과정 총 16시간(2일)을 이수하고, 실기수행능력 종합 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교육과목 : 이론교육(관계법령 등) 5시간, 실기교육(화물취급 실습 등) 9시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2시간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 공고일 전 또는 교육 공고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시험 공고일 전 또는 교육 공고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자격의 취소(법 제23조)

- 내용 :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의 효력 정지
-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시

- 업무개시 명령 거부시
- 화물운송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자격 정지기간 중에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유사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1차-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사업자에게 과징금 60만원), 2차-위반차량 감차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과태료 50만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 자격 취소(법 제23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3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과징금 : 일반 운송사업 10만원, 개별·용달 운송사업 5만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0만원)

타. 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

(1) 운송실적신고제

□ 도입목적

- 직접 운송의무제도와 최소운송기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운송실적신고제 도입

□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운수사업자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와 계약한 실적
 -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차량으로 운송한 실적 및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운송 실적을 포함함)

□ 추진경위 및 현황

- 2008년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화물운송제도 T/F 구성
2008년 12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2011년 6월 15일 운송실적신고제 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항)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고시('12.12)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14.3)
 - ※ '14년까지 위반 시 제제 규정 마련 후 '15년부터 행정제재 시행
- 영세한 1대 운송사업자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16.1)
- 실적신고 마감주기를 분기별(연4회)에서 연간(연1회)으로 조정('17.12)

(2) 직접운송의무제

□ 도입목적

-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으로 화물운송 거래단계 축소

□ 주요내용

- 2대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연간 운송계약화물의 100분의 50이상(주선겸업 운송사업자인 경우는 100분의 30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 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 차량(연간 운송횟수가 96회 이상일 것)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직접 운송으로 봄
-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아래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금지
 - 다른 운송사업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 단,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추진경위 및 현황

- 2008년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화물운송제도 T/F 구성, 2008년 12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2011년 6월 15일 직접운송의무제 근거 마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 직접운송의무비율(50%)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1.12)·시행('13.1), 직접운송 기준 고시('12.12)
- ※ '14년까지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후 '15년 부터 행정제재 시행

(3) 최소운송비율

□ 도입목적

- 운송사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부실 운송업체 퇴출 유도

□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는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의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최소운송기준에 관한 특례(시행규칙 부칙 제2조) : 2013년 및 2014년도 적용기준 : 100분의 10이상, 2015년 적용기준 : 100분의 15이상, 2016년 이후 적용기준 : 100분의 20이상>

- 이 일정기준 이상의 기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화주와 계약한 실적
 - 운송주선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 다른 운송사업자(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계약한 실적
 - 운송가맹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 추진경위 및 현황

- 2008년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화물운송제도 T/F 구성, 2008년 12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2011년 9월 16일 최소운송기준 근거 마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 2011년 6월 15일 최소운송비율 근거 마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 최소운송비율(20%)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1.12) · 시행('13.1),
- ※ '14년까지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후 '15년 부터 행정제재 시행

파. 기타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1) 화물차 휴게시설 건설·운영

□ 사업 목적

- (화물차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사용으로 도시내 불법 주·박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및 민원예방
 - 총사업비의 70%('09년까지 30%, '13년까지 90%) 지자체 보조('04년~)
- (화물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설 및 수면공간을 제공하여 차량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 총사업비의 30%('13년 신규사업 부터는 민투제외 사업비의 30%) 지자체 보조('05년~)

□ 지자체 보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	258,168	1,500	6,800	2,635	2,449	3,847	7,666	21,986	12,300	18,333	34,050	56,188	31,863	41,618	16,933
공영차고지	233,280	1,500	2,500	1,400	1,049	750	5,251	17,086	12,300	18,333	32,370	55,009	28,979	41,208	15,545
휴게소	23,609	-	4,300	1,235	1,400	3,097	2,415	4,900	-	-	1,680	1,179	2,884	410	109

□ 화물차 휴게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운 영	건 설
합 계	68	46	22
휴게소	30	28	2
• 고속도로	18	17	1
• 항만·국도	12	11	1
공영차고지	38	18	2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8개소(운영18, 건설20)

구분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편의시설 유무)
			시작	준공				
운영중 (18)	제주도	제주	'05	'09.03	33,448	246	12,160	○
	대구시	금호	'05	'09.06	29,408	305	7,000	○
	경남도	진해	'06	'10.09	14,219	92	3,600	
	전남도	목포	'09	'11.01	4,115	86	1,995	
	대전시	남대전	'09	'11.10	16,627	285	12,900	○
	전남도	순천	'08	'12.01	41,956	341	22,009	○
	전남도	강진	'07	'12.06	146,975	904	11,000	
	인천시	계양	'10	'13.09	21,320	192	8,860	
	강원도	춘천	'09	'13.12	89,140	302	20,400	
	광주시	진곡	'11	'14.03	52,648	430	23,900	○
	부산시	회동	'11	'15.12	80,419	391	46,787	
	전남도	광양	'09	'16.03	33,058	226	16,368	○
	부산시	노포	'10	'16.12	42,764	243	26,900	
	경남도	거창	'13	'16.12	18,721	135	4,409	
	전북도	정읍	'14	'16.12	29,421	178	5,000	○
	전북도	고창	'13	'17.12	3,773	85	3,324	
	전북도	남원	'14	'17.05	24,000	219	4,800	
	충남도	서천	'14	'17	13,085	123	3,228	
건설중 (20)	광주시	평동	'14	'18	31,036	273	18,000	
	경남도	진주	'13	'19	50,702	449	34,000	○
	전북도	전주	'15	'19	41,680	350	12,562	
	대구시	신서	'15	'18	22,188	140	26,000	○
	전남도	나주	'12	'19	49,083	341	15,000	○
	전남도	목포	'16	'18	91,510	600	36,000	○
	전남도	구례	'16	'18	5,454	52	1,900	
	경북도	경주	'16	'18	26,520	449	6,751	
	인천시	계양(확충)	'17	'20	31,070	180	29,000	
	대구시	달성	'17	'19	82,000	600	1,383	○
	경기도	수원	'17	'19	20,612	204	10,300	○
	충남도	아산	'17	'19	18,198	150	6,100	
	전남도	장성	'17	'18	4,399	38	1,411	
	부산시	미음	'18	'20	49,867	350	38,000	○
	경북도	구미	'18	'20	43,000	303	19,386	○
	경남도	김해	'18	'18	3,650	50	200	
	경남도	양산	'18	'20	42,563	323	19,810	○
	경남도	고성	'18	'19	21,268	248	4,038	○
	전북도	부안	'18	'19	10,501	50	1,980	
	전남도	광양	'18	'20	45,700	397	16,500	○
	전남도	영광	'18	'20	47,698	306	8,000	○

* '10년 ~ 13년 신규사업부터('09년 예산신청분)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국고보조

* '09년 신규사업까지 30%, '14년 신규사업부터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국고보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 30개소(운영28, 건설2)

○ 항만·국도 휴게소 현황 : 12개소(운영 중 11, 건설 중 1)

유형	구분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비고
				시작	준공				
항만 (8)	운영 (8)	부산시	부산항감만	'05	'08.11	14,850	108	16,250	건교부
		YGPA	광양항	'05	'06.1	26,697	120	5,200	해수부
		IPA	인천항	'05	'07.9	58,235	549	10,300	해수부
		BPA	부산신항	'07	'11.9	52,242	400	14,600	해수부
		BPA	부산항용당	'11	'12.12	42,955	371	10,500	해수부
		YGPA	광양항 황금	'15	'16.5	33,000	362	5,400	해수부
		BPA	부산신항남권	'15	'16.7	34,650	345	8,000	해수부
		평택청	평택	'15	'16.7	16,830	177	4,600	해수부
국도 (4)	운영(3)	울산시	울산남구	'06	'11.3	49,166	454	16,382	
		전남도	여수	'06	'14.1	46,942	396	23,465	
		울산시	울산북구	'13	'17	41,969	377	19,938	
	건설(1)	김해시	김해 진영	'15	'18	52,416	391	15,090	

* '05년 ~ '12년 총사업비의 30%, '13년부터 총사업비(민투자 제외)의 30%범위에서 국고지원

○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 18개소(운영 중 17, 건설 중 1)

구분	시행	노선	사업명 (방향)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운영 (17)	도로공사	경부	입장(서울)	'96	'97.6	104,133	313	9,162	
	도로공사		청원(서울)	'02	'03.12	88,196	292	9,800	
	도로공사		신탄진(서울)	'98	'99.9	63,846	283	15,358	
	도로공사		옥산(부산)	'02	'03.12	53,901	277	9,270	
	도로공사		옥천(부산)	'98	'99.12	9,033	145	9,330	
	도로공사		옥천(만남)	'11	'12.8	27,468	169	7,600	
	도로공사		김천(서울)	'07	'08.10	39,930	193	14,400	
	도로공사		김천(부산)	'08	'10.8	40,012	193	14,522	
	도로공사		칠곡(부산)	'96	'97.12	85,560	313	11,908	
	도로공사		경주(부산)	'03	'04.1	72,564	225	10,300	
	도로공사	중부	고성(통영)	'04	'05.12	42,121	188	20,646	
	도로공사	중부 내륙	문경(양평)	'03	'04.12	58,347	177	14,774	
	도로공사		문경(마산)	'03	'04.12	73,575	169	16,648	
	도로공사	대구 포항	영천(포항)	'03	'04.12	74,189	266	10,700	
	도로공사		영천(대구)	'03	'04.12	81,214	299	10,700	
	도로공사	호남	이서(천안)	'08	'10.9	31,350	91	19,462	
	도로공사		이서(순천)	'08	'10.9	27,720	90	19,930	
건설 (1)	도로공사	서해안	목포(양방향)	'17	'18.2	174,779	400	40,800	

*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

(2)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실시

□ 현황

- 유가보조금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카드사가 수익의 일부(정상 매출액의 0.2%)를 출연하여 **기금***을 적립기로 협약('03.12)

* '17.12월말까지 752억원 적립

- 동 기금을 재원으로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설립('10.4)하고, 화물운전자 대상 장학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시행
 - '10년 32억원 지원 3,355명 수혜, '11년 30억원 지원 4,657명 수혜
 '12년 32억원 지원 5,376명 수혜, '13년 43억원 지원 7,233명 수혜
 '14년 52억원 지원 9,207명 수혜, '15년 48억원 지원 7,899명 수혜
 '16년 78억원 지원 13,363명 수혜, '17년 63억원 지원 9,459명 수혜

□ '18년 사업계획 : 복지사업 지속 추진(64.75억원, 10,045명 수혜)

- (장학사업) 화물운전자 및 자녀에게 장학금, 교복구매 등 지원(3,870명, 27.85억원)
 - (장학) 2,870명, 24.85억원 / (교복지원) 1,000명, 3억원
 - (건강검진) 화물운전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3,000명, 12억원)
 - (생계지원)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 생계지원금(60명, 3억원)
 - (치료비지원) 화물운전자 중 4대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500명, 10억원)
 - (문화누리) 화물운전자 문화생활 지원(1,500명, 3억원)
 - (녹색물류)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1,000명, 3억원)
 - (기타) 교통안전 지원, 교육 및 홍보, 유관업체 기탁사업 등(5.9억원)
- ※ 화물운송 직거래를 위한 화물정보망 운영('14년~), 대출보증사업 추진('17년~)

(3)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

☐ 화물차 통행료 할인 확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1~3종)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최대 50%) 시행('16.7.6~)

※ 중소형 화물차 심야할인 시행 사례 ('08.7.1~'09.8.6)

- 고유가 문제 및 화물연대 파업 종결 위해 한시적 도입
- 할인금액 및 시스템 설치비용 등 보조금 지급(388억원)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17. 2월 기준)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비사업용	2,906,148	105,743	72,528	14,970	12,085	3,111,474
사 업 용	159,313	74,546	40,977	35,798	79,709	390,343
계	3,065,461	180,289	113,505	50,768	91,794	3,501,817

*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 예상금액 : 196억원(재정구간)

☐ 할인시간 : 21:00~06:00 (단 개방식 : 23:00~05:00)

☐ 할인율 : 최대 50%, 30%, 20%

할인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인시간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할인단계	1단계 (할인율 50%)	2단계 (할인율 30%)	3단계 (할인율 20%)	4단계 (할인율 0%)
1종	10,050원	14,070원	16,080원	20,100원
2종	10,200원	14,280원	16,320원	20,400원
3종	10,600원	14,840원	16,960원	21,200원

참고자료

물류정책 주요통계

2018. 6.

물 류 정 책 관

목 차

1. 국가별 화물 수송실적	159
2. World Bank 물류경쟁력	166
3. 물류관리사 현황	167
4. 사업용 화물자동차(화물+특수) 등록대수	168
5. 화물자동차 등록대수(화물+특수)	168
6. 차량보유대수별 운송업체 현황	169
7. 화물운송 종사자 현황	169
8. 주요 구간의 컨테이너 운임	170
9. 업종별 주요 구간 화물 운임	171
10. 화물차주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유가보조금 포함)	172
11. 월평균 순수입(컨테이너·개별·용달)	172
12. 주요 택배업체 물량 및 시장점유율	173
13. 택배시장 규모	173

1. 국가별 화물 수송실적

□ 한국

○ 화물수송실적(국내, 톤 기준)

(단위: 천 톤, %)

구 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 계				
2003	744,125	723,431	1,467,556	47,110	145,327	423	1,660,415
	(44.82)	(43.57)	(88.38)	(2.84)	(8.75)	(0.03)	(100.00)
2004	763,182	741,958	1,505,140	44,512	115,636	409	1,665,697
	(45.82)	(44.54)	(90.36)	(2.67)	(6.94)	(0.02)	(100.00)
2005	805,279	782,886	1,588,165	41,669	119,410	372	1,749,616
	(46.03)	(44.75)	(90.77)	(2.38)	(6.82)	(0.02)	(100.00)
2006	820,195	797,386	1,617,581	43,341	117,805	355	1,779,082
	(46.10)	(44.82)	(90.92)	(2.44)	(6.62)	(0.02)	(100.00)
2007	827,362	804,354	1,631,716	44,531	120,079	316	1,796,642
	(46.05)	(44.77)	(90.82)	(2.48)	(6.68)	(0.02)	(100.00)
2008	776,444	754,852	1,531,296	46,806	126,964	254	1,705,320
	(45.53)	(44.26)	(89.80)	(2.74)	(7.45)	(0.01)	(100.00)
2009	759,575	738,453	1,498,028	38,898	120,032	269	1,657,226
	(45.83)	(44.56)	(90.39)	(2.35)	(7.24)	(0.02)	(100.00)
2010	802,334	780,022	1,582,356	39,217	124,225	262	1,746,060
	(45.95)	(44.67)	(90.62)	(2.25)	(7.11)	(0.01)	(100.00)
2011	841,553	818,151	1,659,704	40,012	125,588	281	1,825,585
	(46.10)	(44.82)	(90.91)	(2.19)	(6.88)	(0.02)	(100.00)
2012	845,091	821,591	1,666,682	40,309	119,057	265	1,844,524
	(45.82)	(44.54)	(90.36)	(2.19)	(6.45)	(0.01)	(100.00)
2013	848,629	825,031	1,673,660	39,822	117,860	253	1,831,595
	(46.33)	(45.04)	(91.38)	(2.17)	(6.43)	(0.01)	(100.00)
2014	882,188	857,655	1,739,842	37,379	117,920	283	1,895,425
	(46.54)	(45.25)	(91.79)	(1.97)	(6.22)	(0.01)	(100.00)
2015	893,063	868,228	1,761,291	37,094	128,611	288	1,927,283
	(46.34)	(45.05)	(91.39)	(1.92)	6.67	(0.01)	(100.00)
연평균 증감률	1.53	1.53	1.53	▽1.97	▽1.01	▽3.15	1.25
전년대비 증감률	1.23	1.23	1.23	▽0.76	9.07	1.77	1.68

주: 1. ()는 전체 대비 비중.

2.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KTDB)에서 2001~2014년 물동량 통계 전면 수정(2015)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역간 화물 통행량 분석』, 각 연도.

○ 화물수송실적(국내, 톤-km 기준)

(단위: 백만 톤-km, %)

구 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 계				
2003	68,590	29,783	98,373	11,057	33,884	166	143,480
	(47.80)	(20.76)	(68.56)	(7.71)	(23.62)	(0.12)	(100.00)
2004	70,461	30,596	101,057	10,641	25,840	164	137,701
	(51.17)	(22.22)	(73.39)	(7.73)	(18.77)	(0.12)	(100.00)
2005	73,679	31,994	105,673	10,108	26,590	151	142,522
	(51.70)	(22.45)	(74.15)	(7.09)	(18.66)	(0.11)	(100.00)
2006	76,005	33,003	109,008	10,554	26,478	145	146,184
	(51.99)	(22.58)	(74.57)	(7.22)	(18.11)	(0.10)	(100.00)
2007	73,365	31,857	105,222	10,927	27,998	129	144,276
	(50.85)	(22.08)	(72.93)	(7.57)	(19.41)	(0.09)	(100.00)
2008	70,726	30,711	101,437	11,566	29,590	103	142,696
	(49.56)	(21.52)	(71.09)	(8.11)	(20.74)	(0.07)	(100.00)
2009	69,089	30,000	99,089	9,273	25,249	111	133,722
	(51.67)	(22.43)	(74.10)	(6.93)	(18.88)	(0.08)	(100.00)
2010	71,682	31,126	102,808	9,452	23,281	107	135,648
	(52.84)	(22.95)	(75.79)	(6.97)	(17.16)	(0.08)	(100.00)
2011	72,845	31,631	104,476	9,997	27,220	115	141,808
	(51.37)	(22.31)	(73.67)	(7.05)	(19.20)	(0.08)	(100.00)
2012	77,763	33,766	111,529	10,271	25,804	109	147,713
	(52.64)	(22.86)	(75.50)	(6.95)	(17.47)	(0.07)	(100.00)
2013	82,680	35,902	118,582	10,459	30,476	104	159,621
	(51.80)	(22.49)	(74.29)	(6.55)	(19.09)	(0.07)	(100.00)
2014	86,911	37,739	124,650	9,564	29,900	111	164,224
	(52.92)	(22.98)	(75.90)	(5.82)	(18.21)	(0.07)	(100.00)
2015	92,302	40,080	132,382	9,479	31,841	112	173,815
	(53.10)	(23.06)	(76.16)	(5.45)	(18.32)	(0.06)	(100.00)
연평균증감률	2.51	2.51	2.51	▽1.28	▽0.52	▽3.23	1.61
전년대비증감률	6.20	6.20	6.20	▽0.89	6.49	0.90	5.84

주: 1. ()는 전체 대비 비중.

2.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KTDB)에서 2001-2014년 물동량 통계 전면 수정(2015)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역간 화물 통행량 분석』, 각 연도.

□ 일본

○ 화물 수송실적(톤 기준)

(단위: 천 톤, %)

구 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2002	2,830,173	2,389,557	5,219,730	56,592	497,251	1,001	5,774,574
	(49.01)	(41.38)	(90.39)	(0.98)	(8.61)	(0.02)	(100.00)
2003	2,843,911	2,269,573	5,113,484	53,602	445,544	1,033	5,613,663
	(50.66)	(40.43)	(91.09)	(0.95)	(7.94)	(0.02)	(100.00)
2004	2,833,122	2,120,129	4,953,251	52,194	440,252	1,065	5,446,762
	(52.01)	(38.92)	(90.94)	(0.96)	(8.08)	(0.02)	(100.00)
2005	2,858,258	1,983,974	4,842,232	52,473	426,145	1,082	5,321,932
	(53.71)	(37.28)	(90.99)	(0.99)	(8.01)	(0.02)	(100.00)
2006	2,899,642	1,937,380	4,837,022	51,872	416,644	1,099	5,306,637
	(54.64)	(36.51)	(91.15)	(0.98)	(7.85)	(0.02)	(100.00)
2007	2,927,928	1,883,959	4,811,887	50,850	409,694	1,145	5,273,576
	(55.52)	(35.72)	(91.25)	(0.96)	(7.77)	(0.02)	(100.00)
2008	2,808,664	1,792,088	4,600,752	46,225	378,705	1,074	5,026,756
	(55.87)	(35.65)	(91.53)	(0.92)	(7.53)	(0.02)	(100.00)
2009	2,686,556	1,652,982	4,339,538	43,251	332,175	1,024	4,715,988
	(56.97)	(35.05)	(92.02)	(0.92)	(7.04)	(0.02)	(100.00)
2010	3,069,416	1,410,779	4,480,195	43,647	366,734	1,004	4,891,580
	(62.75)	(28.84)	(91.59)	(0.89)	(7.50)	(0.02)	(100.00)
2011	3,153,051	1,343,904	4,496,954	39,886	360,983	960	4,898,783
	(64.36)	(27.43)	(91.8)	(0.81)	(7.37)	(0.02)	(100.0)
2012	3,011,839	1,354,088	4,365,927	42,340	365,992	973	4,775,236
	(63.07)	(28.36)	(91.43)	(0.89)	(7.66)	(0.02)	(100.0)
2013	2,989,496	1,356,256	4,345,752	44,101	378,334	1,016	4,769,204
	(62.68)	(28.44)	(91.12)	(0.92)	(7.93)	(0.02)	(100.0)
2014	2,934,361	1,381,475	4,315,836	43,424	369,302	1,024	4,729,586
	(62.04)	(29.21)	(91.25)	(0.92)	(7.81)	(0.02)	(100.0)

주: ()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kamotsu_list.html, 日本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 화물 수송실적(톤-km 기준)

(단위: 백만 톤-km, %)

구 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계
	영업용	비영업용	소계				
2002	262,305	48,309	310,614	22,131	235,582	991	569,317
	(46.07)	(8.49)	(54.56)	(3.89)	(41.38)	(0.17)	(100.0)
2003	274,364	46,102	320,466	22,794	218,191	1,027	562,478
	(48.78)	(8.2)	(56.97)	(4.05)	(38.79)	(0.18)	(100.0)
2004	282,151	44,064	326,215	22,476	218,833	1,058	568,582
	(49.62)	(7.75)	(57.37)	(3.95)	(38.49)	(0.19)	(100.0)
2005	290,773	42,751	333,524	22,813	211,576	1,075	568,988
	(51.1)	(7.51)	(58.62)	(4.01)	(37.18)	(0.19)	(100.0)
2006	302,182	42,853	345,035	23,192	207,849	1,094	577,170
	(52.36)	(7.42)	(59.78)	(4.02)	(36.01)	(0.19)	(100.0)
2007	310,185	43,134	353,320	23,334	202,962	1,145	580,760
	(53.41)	(7.43)	(60.84)	(4.02)	(34.95)	(0.2)	(100.0)
2008	302,816	42,123	344,939	22,256	187,859	1,078	556,132
	(54.45)	(7.57)	(62.02)	(4)	(33.78)	(0.19)	(100.0)
2009	293,227	39,954	333,181	20,562	167,315	1,043	522,100
	(56.16)	(7.65)	(63.82)	(3.94)	(32.05)	(0.2)	(100.0)
2010	213,288	29,862	243,150	20,398	179,898	1,032	444,479
	(47.99)	(6.72)	(54.7)	(4.59)	(40.47)	(0.23)	(100.0)
2011	202,441	28,620	231,061	19,998	174,900	992	426,951
	(47.42)	(6.7)	(54.12)	(4.68)	(40.96)	(0.23)	(100.0)
2012	180,336	29,620	209,956	20,471	177,791	1,007	409,225
	(44.07)	(7.24)	(51.31)	(5)	(43.45)	(0.25)	(100.0)
2013	184,840	29,252	214,092	21,071	184,860	1,049	421,072
	(43.90)	(6.59)	(50.84)	(5)	(4.90)	(0.25)	(100.0)
2014	181,160	28,848	210,008	21,029	183,120	1,050	415,207
	(43.63)	(6.95)	(50.58)	(5.06)	(44.10)	(0.25)	(100.0)

주: ()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 http://www.mlit.go.jp/statistics/details/kamotsu_list.html, 日本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 미국

○ 화물 수송실적(톤기준, 천톤)

구 분			1997	2002	2007	2012
단일 모드 (single mode)	도 로	영업용	3,402,605	3,657,333	4,075,136	4,390,790
		비영업용	4,137,294	4,149,658	4,703,576	3,799,335
		소계	7,700,675	7,842,836	8,778,713	8,190,126
	철도		1,549,817	1,873,884	1,861,307	1,851,276
	수상		563,369	681,227	403,639	510,654
	항공		4,475	3,760	3,611	4,676
	파이프라인		618,202	684,953	650,859	720,067
	계		10,436,538	11,086,660	11,698,128	11,276,799
복합운송(multiple mode)			216,673	216,686	573,729	347,784
기타(Other and Unknown)			436,521	364,573	271,567	70,880
총 계			11,089,733	11,667,919	12,543,425	11,695,463

주: 1) Commodity Flow Survey는 2002년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함

2) 통계발표 표준 미충족(높은 표본 변동성 또는 응답품질 저하)으로 결과값 발표 안함
(본 연구에서는 단일모드 소계에서 각 모드별 실적을 제외하여 산정)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Commodity Flow Survey, 2013

○ 화물 수송실적(톤-마일기준, 백만톤-마일)

구 분			1997	2002	2007	2012
단일 모드 (single mode)	도 로	영업용	741,117	959,610	1,055,646	1,071,878
		비영업용	268,592	291,114	286,457	192,468
		소계	1,023,506	1,255,908	1,342,104	1,264,346
	철도		1,022,547	1,261,612	1,344,040	1,477,623
	수상		261,747	282,659	157,314	208,316
	항공		6,233	5,835	4,510	6,341
	파이프라인		69,440	61,924	46,283	52,009
	계		2,383,473	2,867,938	2,894,251	3,008,635
복합운송(multiple mode)			204,514	225,715	416,642	310,752
기타(Other and Unknown)			73,376	44,245	33,764	279
총 계			2,661,363	3,137,898	3,344,658	3,319,666

주: 1) Commodity Flow Survey는 2002년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함

2) 통계발표 표준 미충족(높은 표본 변동성 또는 응답품질 저하)으로 결과값 발표 안함
(본 연구에서는 단일모드 소계에서 각 모드별 실적을 제외하여 산정)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Commodity Flow Survey, 2013

□ 중국

○ 화물수송실적(톤 기준)

(단위: 만 톤, %)

구 분	철 도	도 로	수 운	항 공	파이프라인	총 계
2001	192,580	1,056,312	132,675	171	19,439	1,401,177
2002	204,246	1,116,324	141,832	202	20,133	1,482,737
2003	221,178	1,159,957	158,070	219	21,998	1,561,422
2004	249,017	1,244,990	187,394	277	24,734	1,706,412
2005	269,296	1,341,778	219,648	307	31,037	1,862,066
2006	288,224	1,466,347	248,703	349	33,436	2,037,060
2007	314,237	1,639,432	281,199	402	40,552	2,275,822
2008	330,354	1,916,759	294,510	408	43,906	2,585,937
2009	333,348	2,127,834	318,996	446	44,598	2,825,222
2010	364,271	2,448,052	378,949	563	49,972	3,241,807
2011	393,263	2,820,100	425,968	557	57,073	3,696,961
2012	390,438	3,188,475	458,705	545	62,274	4,100,436
2013	396,697	3,076,648	559,785	561	65,209	4,098,900
2014	381,334	3,113,334	598,283	594	73,752	4,167,296
2015	335,801	3,150,019	613,567	629	75,870	4,175,886
연평균 증가율	4.05	8.12	11.56	9.75	10.22	8.11
전년 대비	-11.94	1.18	2.55	5.92	2.87	0.21

자료: China Statistics Press, 2015 China Statistics Yearbook. 2016

○ 운송수단별 분담률(톤 기준)

(단위: %)

구 분	철 도	도 로	수 운	항 공	파이프라인
2001	13.74	75.39	9.47	0.01	1.39
2002	13.77	75.29	9.57	0.01	1.36
2003	14.17	74.29	10.12	0.01	1.41
2004	14.59	72.96	10.98	0.02	1.45
2005	14.46	72.06	11.80	0.02	1.67
2006	14.15	71.98	12.21	0.02	1.64
2007	13.81	72.04	12.36	0.02	1.78
2008	12.78	74.12	11.39	0.02	1.70
2009	11.80	75.32	11.29	0.02	1.58
2010	11.24	75.52	11.69	0.02	1.54
2011	10.64	76.28	11.52	0.02	1.54
2012	9.52	77.76	11.19	0.01	1.52
2013	9.68	75.06	13.66	0.01	1.59
2014	9.15	74.71	14.36	0.01	1.77
2015	8.04	75.43	14.69	0.02	1.82

자료: 전게서.

○ 화물수송실적(톤·km 기준)

(단위: 억 톤-km, %)

구 분	철 도	도 로	수 운	항 공	파이프라인	총 계
2001	14,575	6,330	25,989	44	653	47,710
2002	15,516	6,783	27,511	52	683	50,686
2003	17,247	7,100	28,716	58	739	53,859
2004	19,289	7,841	41,429	72	815	69,445
2005	20,726	8,693	49,672	79	1,088	80,258
2006	21,954	9,754	55,486	94	1,551	88,840
2007	23,797	11,355	64,285	116	1,866	101,419
2008	25,106	32,868	50,263	120	1,944	110,300
2009	25,239	37,189	57,557	126	2,022	122,133
2010	27,644	43,390	68,428	179	2,197	141,837
2011	29,466	51,375	75,424	174	2,885	159,324
2012	29,187	59,535	81,708	164	3,211	173,804
2013	29,174	55,738	79,436	170	3,496	168,014
2014	27,530	56,847	92,775	188	4,328	181,668
2015	23,754	57,956	91,773	208	4,665	178,356
연평균 증가율	3.55	17.14	9.43	11.79	15.08	9.88
전년 대비	-13.72	1.95	-1.08	10.81	7.79	-1.82

자료: 전게서.

○ 운송수단별 분담률(톤-km 기준)

(단위: %)

구 분	철 도	도 로	수 운	항 공	파이프라인
2001	30.83	13.83	53.55	0.113	1.43
2002	30.55	13.27	54.47	0.092	1.37
2003	30.61	13.38	54.28	0.102	1.35
2004	32.02	13.18	53.32	0.108	1.37
2005	27.78	11.29	59.66	0.103	1.17
2006	25.82	10.83	61.89	0.098	1.36
2007	24.71	10.98	62.46	0.106	1.75
2008	23.46	11.20	63.39	0.115	1.84
2009	22.76	29.80	45.57	0.108	1.76
2010	20.67	30.45	47.13	0.103	1.66
2011	19.49	30.59	48.24	0.126	1.55
2012	18.49	32.25	47.34	0.109	1.81
2013	16.79	34.25	47.01	0.094	1.85
2014	17.36	33.17	47.28	0.101	2.08
2015	15.15	31.29	51.07	0.103	2.38

자료: 전게서.

2. World Bank 물류경쟁력(2016.6. 발표)

□ 발표 개요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통관·물류비용·물류인프라 분야 등 6개 지표를 평가하여 각국의 물류경쟁력 조사·발표

* 160여개국, 1,200여개 포워더와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세계은행은 물류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효율적 운송루트, 해외시장 접근성이 높다고 평가

□ 세계 주요국의 물류경쟁력 순위

1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1위	독일	11위	스위스	21위	이탈리아
2위	룩셈부르크	12위	일본	22위	노르웨이
3위	스웨덴	13위	아랍에미레이트	23위	스페인
4위	네덜란드	14위	캐나다	24위	대한민국
5위	싱가포르	15위	핀란드	25위	대만
6위	벨기에	16위	프랑스	26위	체코
7위	오스트리아	17위	덴마크	27위	중국
8위	영국	18위	아일랜드	28위	이스라엘
9위	홍콩	19위	호주	29위	리투아니아
10위	미국	20위	남아공	30위	카타르

3. 물류관리사 현황

□ 물류관리사 개요

- 자격증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 개념 :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
- 연혁 : '97년 제1회 시험 실시('17년 제21회 시험) / 총 27,608명 배출

□ (물류관리사 응시 및 합격 현황) 평균 응시율 51.1%, 평균 합격률 17.5%

(단위 : 명, %)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접수자	72,021	18,845	19,019	11,683	9,175	7,688	7,030	6,852	9,154	16,063	15,863
응시자 (응시율)	30,027 (41.7)	8,131 (43.1)	8,781 (46.2)	5,500 (47.1)	4,025 (43.9)	3,389 (44.1)	3,302 (47)	3,379 (49.3)	4,880 (53.3)	8,732 (54.4)	8,042 (50.7)
합격자 (합격율)	1,109 (3.7)	439 (5.4)	1,827 (20.8)	269 (4.9)	618 (15.4)	560 (16.5)	615 (18.6)	454 (13.4)	1,243 (25.5)	1,221 (14.0)	2,181 (27.1)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접수자	16,126	16,625	13,550	12,339	13,297	11,160	9,180	8,287	8,061	7,304	309,322
응시자 (응시율)	9,217 (57.2)	9,524 (57.3)	7,676 (56.6)	7,570 (61.4)	7,041 (52.9)	6,232 (55.8)	6,333 (68.9)	5,919 (71.4)	5,528 (68.6)	4,841 (66.3)	158,069 (51.1)
합격자 (합격율)	1,722 (18.7)	1,891 (19.9)	2,303 (30.0)	1,231 (16.3)	1,861 (26.4)	1,328 (21.3)	2,179 (34.4)	1,727 (29.2)	1,173 (21.2)	1,657 (34.2)	27,608 (17.5)

□ 물류관리사 취업 현황(2002~2012년)

구분	합격자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기타
'12년	1,861명	882명 (47.4%)	516명 (27.7%)	261명 (14.0%)	202명 (10.9%)
'11년	1,231명	620명 (50.4%)	345명 (28%)	114명 (9.3%)	152명 (12.3%)
'10년	2,303명	839명 (36.4%)	924명 (40.1%)	173명 (7.5%)	367명 (16.0%)
'09년	1,891명	742명 (39.2%)	812명 (42.9%)	187명 (10.0%)	150명 (7.9%)
'08년	1,722명	575명 (33.4%)	861명 (50.0%)	256명 (14.9%)	30명 (1.7%)
'07년	2,181명	683명 (31.3%)	1,168명 (53.6%)	223명 (10.2%)	107명 (4.9%)
'06년	1,221명	296명 (24.3%)	762명 (62.4%)	121명 (9.9%)	42명 (3.4%)
'05년	1,243명	339명 (27.3%)	753명 (60.6%)	93명 (7.5%)	58명 (4.6%)
'04년	454명	177명 (39.0%)	225명 (49.6%)	35명 (7.7%)	17명 (3.7%)
'03년	615명	315명 (51.2%)	188명 (30.6%)	89명 (14.5%)	23명 (3.7%)
'02년	560명	323명 (57.7%)	168명 (30.0%)	52명 (9.3%)	17명 (3.0%)
계	15,282명	5,791명 (37.9%)	6,722 (44%)	1,604 (10.5%)	1,165명 (7.6%)

*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합격증 교부시 작성된 합격자카드를 근거로 작성(기타는 무응답, 미등록자), '13~'17년은 미 실시

4. 사업용 화물자동차(화물+특수) 등록대수('17년) : 450,449대

(단위 : 대)

구 분	'97	'99	'03	'04	'12	'13	'14	'15	'16	'17
합 계	202,742	236,863	349,504	357,276	400,479	416,137	429,568	437,501	446,701	450,449
연 증가율	6.4%	16.8%	4.5%	2.2%	1.4%	3.9%	3.2%	1.8%	2.1%	0.8%
화물자동차 합계	175,874	210,011	314,864	321,104	354,010	367,566	378,583	383,063	389,424	391,168
화물일반형 계			236,348	238,386	235,383	239,362	242,358	243,309	245,187	245,294
화물덤프형 계			3,966	3,981	2,955	2,808	2,571	2,339	2,203	2,128
화물밴형 계			18,209	18,892	18,663	17,829	17,059	15,474	14,077	12,327
화물특수용도형 계			56,341	59,845	97,009	107,567	116,595	121,941	127,957	131,419
특수자동차 합계	26,868	26,852	34,640	36,172	46,469	48,571	50,985	54,438	57,277	59,281
구난차 계			6,249	7,140	7,170	7,185	7,206	7,341	7,357	7,265
견인차 계			27,082	28,853	30,488	31,283	31,917	32,905	33,817	33,871
특수작업형 계			1,309	5,402	8,811	10,103	11,862	14,192	16,103	18,145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자동차정책과) / ** 화물특수용도형에는 피견인차 54,758대 포함

* '99년 등록제 전환, '04년 허가제 시행

5. 화물자동차 등록대수(화물+특수)

(단위 : 대)

구 분	화물 차량대수	자가용	사업용	관용
2012	3,351,705	2,905,466 (86.7%)	416,137 (12.4%)	30,102 (0.9%)
2013	3,351,705	2,905,466 (86.7%)	416,137 (12.4%)	30,102 (0.9%)
2014	3,423,772	2,963,485 (86.6%)	429,568 (12.5%)	30,719 (0.9%)
2015	3,507,900	3,038,925 (86.6%)	437,501 (12.5%)	31,474 (0.9%)
2016	3,572,652	3,093,585 (86.6%)	446,701 (12.5%)	32,366 (0.9%)
2017	3,626,233	3,142,284 (86.7%)	450,449 (12.4%)	33,500 (0.9%)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자동차정책과)

6. 차량보유대수별 운송업체 현황

(일반화물, '17. 12월)

구 분		전 체	1대	2~10	11~20	20대 초과				
						계	21~30	31~50	51~100	100초과
업체	업체수	11,593	3,316	4,201	1,361	2,715	840	882	743	250
	비율(%)	100	28.6%	36.2%	11.7%	23.4%	7.2%	7.6%	6.4%	2.2%
보유 차량	대수	189,593	3,316	19,441	19,749	147,087	20,491	34,381	50,919	41,296
	비율(%)	100	1.7%	10.3%	10.4%	77.6%	10.8%	18.1%	26.9%	21.8%

* 화물운송연합회 내부조사자료

7. 화물운송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3	'04	'09	'10	'11	'12	'13	'14	'15	'16
합 계	319,405	351,567	350,166	360,455	370,746	358,493	372,141	368,665	378,944	384,369
일반	179,071	208,580	201,082	207,773	214,465	204,634	200,655	187,227	194,930	195,187
개별	60,407	63,316	66,094	67,198	68,302	68,294	70,600	72,286	72,956	74,264
용달	79,927	79,671	82,990	85,484	87,979	85,565	100,886	109,152	111,058	114,918

* 자료 :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17.12)」 ('10년 기준 종사자현황은 통계조사 미발간, 추정치 적용)

8. 주요 구간의 컨테이너 운임

(단위 : 원)

구 간	년도	분기	20ft 운임				40ft 운임			
			편 도	비율	왕 복	비율	편 도	비율	왕 복	비율
신고운임 (부산↔수도권)	'05.11.21시행		521,000	100%	905,000	100%	579,000	100%	1,006,000	100%
	'08. 6. 1시행		568,000	100%	987,000	100%	631,000	100%	1,097,000	100%
	'12. 8. 1시행		675,000	100%	1,174,000	100%	750,000	100%	1,304,000	100%
실질시장운임 (부산↔수도권)	2013	1/4	309,886	46%	696,667	59%	451,420	60%	790,128	61%
		2/4	364,043	54%	702,857	60%	459,161	61%	823,226	63%
		3/4	314,054	47%	649,412	55%	450,949	60%	813,000	62%
		4/4	351,250	52%	N/A	-	470,094	63%	789,808	61%
	2014	1/4	356,071	53%	672,500	57%	482,929	64%	848,690	65%
		2/4	390,769	58%	N/A	-	496,535	66%	860,327	66%
		3/4	385,169	57%	749,559	64%	457,063	61%	849,412	65%
		4/4	388,704	58%	804,167	68%	484,000	65%	867,143	66%
	2015	1/4	353,839	52%	633,864	54%	472,000	63%	806,222	62%
		2/4	397,571	59%	N/A	-	462,202	62%	726,176	56%
		3/4	389,032	58%	631,000	54%	456,714	61%	756,071	58%
		4/4	364,609	54%	705,455	60%	454,603	61%	751,311	58%
	2016	1/4	384,167	57%	N/A	-	444,783	59%	741,639	57%
		2/4	354,375	53%	660,500	56%	440,138	59%	740,625	57%
		3/4	357,213	53%	N/A	-	447,319	60%	779,077	60%
		4/4	344,444	51%	650,833	55%	438,559	58%	736,923	57%
	2017	1/4	362,547	54%	676,667	58%	439,619	59%	726,667	56%
		2/4	359,068	53%	691,250	59%	437,852	58%	717,692	55%
		3/4	374,091	55%	657,143	56%	448,031	60%	730,000	56%
		4/4	368,750	55%	740,714	63%	468,201	62%	804,938	62%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 수도권 : 서울 강남을 기준 / * () = 신고운임대비 ('12. 2/4까지 '08.6.1 시행, 그이후 '12.8.1시행) 운임비율

9. 업종별 주요 구간 화물 운임

(단위 : 원)

구 간	년도	분기	일 반(기타)			개 별	용 달
			5톤상-8톤만	8톤상-12톤만	12톤이상		
수도권 → 수도권	2013	1/4	96,400	174,792	165,183	82,366	51,049
		2/4	108,857	154,868	183,103	83,381	51,158
		3/4	134,528	150,370	179,273	90,681	54,989
		4/4	101,538	151,971	150,862	80,049	47,851
	2014	1/4	110,952	146,884	167,824	85,803	48,707
		2/4	120,303	139,865	167,908	80,597	48,439
		3/4	110,000	157,200	156,988	80,367	49,706
		4/4	122,069	152,755	171,092	79,141	46,689
	2015	1/4	100,455	121,100	141,614	76,156	46,200
		2/4	101,111	121,854	157,581	90,556	48,605
		3/4	115,750	120,750	157,846	93,077	56,685
		4/4	116,696	134,375	142,824	90,598	50,356
	2016	1/4	117,283	145,382	150,130	84,212	50,852
		2/4	119,000	138,721	162,064	84,248	49,160
		3/4	107,692	118,860	152,473	82,188	47,123
		4/4	110,000	141,639	156,557	85,597	51,788
	2017	1/4	100,488	124,185	157,991	83,487	50,258
		2/4	106,087	136,806	152,288	88,511	48,907
		3/4	100,000	141,533	145,323	86,564	51,529
		4/4	107,500	128,382	153,984	85,709	50,194
수도권 → 대전권	2013	1/4	188,462	188,333	216,000	141,750	95,294
		2/4	208,462	187,778	220,000	153,667	102,945
		3/4	192,632	N/A	230,000	139,208	102,283
		4/4	201,579	N/A	220,000	150,465	102,368
	2014	1/4	201,429	217,273	271,786	163,250	93,309
		2/4	194,545	203,636	237,500	157,736	99,063
		3/4	187,857	220,000	243,438	144,828	99,107
		4/4	198,750	206,000	277,692	159,844	99,815
	2015	1/4	202,500	188,182	232,500	159,020	102,457
		2/4	195,556	228,889	247,308	148,500	99,348
		3/4	205,714	195,833	218,333	165,957	103,846
		4/4	184,286	N/A	222,500	154,889	104,545
	2016	1/4	199,167	175,000	207,692	160,000	103,438
		2/4	195,625	N/A	194,545	135,000	90,098
		3/4	189,730	217,500	228,750	160,000	108,293
		4/4	172,000	N/A	221,364	128,485	93,214
	2017	1/4	N/A	N/A	211,000	142,727	96,667
		2/4	N/A	N/A	-	148,750	99,333
		3/4	N/A	N/A	N/A	115,714	108,750
		4/4	163,333	219,688	215,476	130,000	95,625
수도권 → 부산권	2013	1/4	348,594	375,556	465,325	308,475	188,261
		2/4	330,545	379,600	469,082	322,676	243,333
		3/4	353,400	384,828	447,558	317,368	197,308
		4/4	345,351	389,375	471,273	340,357	197,647
	2014	1/4	374,194	375,263	479,100	345,854	197,368
		2/4	358,837	402,059	458,624	325,254	192,667
		3/4	355,227	411,754	465,741	368,235	226,364
		4/4	335,106	391,000	447,000	333,651	210,909
	2015	1/4	340,800	408,276	445,730	348,305	182,667
		2/4	340,962	381,379	440,582	337,273	201,818
		3/4	339,524	381,679	428,791	318,750	212,353
		4/4	336,327	372,174	431,406	308,070	198,571
	2016	1/4	318,333	358,636	405,522	310,909	208,889
		2/4	333,800	358,462	423,043	302,174	225,625
		3/4	325,476	349,500	411,525	322,436	187,500
		4/4	320,455	368,250	429,802	319,459	216,000
	2017	1/4	323,208	366,154	433,438	322,619	193,333
		2/4	307,917	353,684	408,793	318,222	200,000
		3/4	342,157	358,000	412,500	333,200	196,250
		4/4	332,923	359,200	424,359	327,143	200,000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 "N/A"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 표시(샘플수 부족 등)

10. 화물차주 차종별 월평균 순수입(유가보조금 포함)

(단위 : 만원)

년도	분기	일반 화물차주						개별	용달
		평 균	컨테이너	BCT	탱크로리	카 고 형	기 타	화물차주	화물차주
2013	1/4	189	184	90	203	197	255	152	82
	2/4	233	204	270	248	230	241	176	86
	3/4	220	215	198	267	205	235	172	99
	4/4	244	245	247	246	263	264	171	84
2014	1/4	227	291	68	233	220	214	155	84
	2/4	258	333	155	220	251	247	190	95
	3/4	293	291	244	314	304	303	99	85
	4/4	239	307	169	214	213	283	187	96
2015	1/4	243	269	84	297	238	285	163	86
	2/4	282	318	276	309	234	330	170	92
	3/4	290	294	223	361	264	349	190	106
	4/4	302	309	231	364	277	346	205	118
2016	1/4	291	335	86	410	269	325	186	105
	2/4	309	330	245	385	297	323	200	111
	3/4	301	333	148	408	282	354	189	128
	4/4	309	307	260	340	297	371	215	127
2017	1/4	264	312	30	332	277	306	170	110
	2/4	278	306	212	345	253	314	193	112
	3/4	285	305	147	363	285	306	190	127
	4/4	292	322	204	346	286	295	200	110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11. 월평균 순수입(컨테이너·개별·용달)

(단위 : 만원)

년도	분기	컨테이너			개별			용달		
		운수수입	유가보조	순수입	운수수입	유가보조	순수입	운수수입	유가보조	순수입
2013	1/4	97	87	184	118.3	33.7	152	66.3	15.7	82
	2/4	109	95	204	139.4	36.6	176	69.7	16.3	86
	3/4	121	94	215	136.8	35.2	172	82.1	16.9	99
	4/4	150	95	245	135.3	35.7	171	67.9	16.1	84
2014	1/4	192	99	291	119.0	36.0	155	66.1	17.9	84
	2/4	233	100	333	153.5	36.5	190	78.0	17.0	95
	3/4	195	96	291	59.3	39.7	99	66.3	18.7	85
	4/4	208	99	307	148.5	38.5	187	78.1	17.9	96
2015	1/4	178	91	269	128.9	34.1	163	71.2	14.8	86
	2/4	225	93	318	136.7	33.3	170	76.6	15.4	92
	3/4	201	93	294	154.7	35.3	190	90.5	15.5	106
	4/4	219	90	309	170.1	34.9	205	101.2	16.8	118
2016	1/4	248	87	335	155.3	30.7	186	90.4	14.6	105
	2/4	241	89	330	166.7	33.3	200	95.9	15.1	111
	3/4	241	92	333	150.4	38.6	189	111.4	16.6	128
	4/4	216	91	307	182.0	33.0	215	111.2	15.8	127
2017	1/4	217	95	312	137.1	32.9	170	95.3	14.7	110
	2/4	213	93	306	158.0	35.0	193	95.7	16.3	112
	3/4	211	94	305	155.8	34.2	190	110.7	16.3	127
	4/4	227	95	322	166.8	33.2	200	94.4	15.6	110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12. 주요 택배업체 물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만개, %)

구 분	CJ대한 통운	현대 택배	한진 택배	우체국	로젠	상위5개사 합계	택배시장 전체	상위5개사 시장점유율
'08	26,621	12,057	10,618	9,942	7,454	59,238	89,188	74.78%
'09	36,507	13,355	13,664	11,113	8,155	74,639	107,966	76.69%
'10	41,010	15,190	14,989	11,968	9,511	83,157	119,818	77.34%
'11	45,580	16,794	15,192	12,981	10,372	90,548	129,906	77.69%
'12	53,290	18,337	15,846	12,402	10,655	99,876	140,598	78.61%
'13	53,470	19,344	17,530	15,435	11,881	105,778	150,932	77.96%
'14	61,739	20,889	18,669	14,495	12,692	115,792	162,325	79.15%
'15	75,042	23,043	22,806	13,730	13,880	148,501	181,596	81.78%
'16	90,389	24,416	24,344	16,473	14,851	170,473	204,666	83.3%
'17	105,493	29,332	28,201	18,871	16,509	198,405	231,946	85.5%
증가율	20.45%	5.96%	6.74%	19.98%	7.00%	14.80%	12.70%	1.86%

13. 택배시장 규모

년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물량 (만박스)	40,469	52,550	65,799	79,951	89,188	107,966	119,818	129,906	140,598	150,931	162,325	181,960	204,666	231,946
매출액 (조원)	1.273	1.556	1.847	2.138	2.324	2.723	2.990	3.292	3.523	3.735	3.976	4.344	4.744	5.215
평균매출단가 (박스당, 원)	3,146	2,961	2,807	2,675	2,609	2,524	2,505	2,534	2,506	2,475	2,449	2,396	2,318	2,248
물량 증가율(%)	17.9	29.8	25.2	21.5	16.9	15.5	11	8.4	8.2	7.3	7.5	11.87	12.70	13.33

* 국토부 인정 15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 한진, KG로지스(드림택배), 로젠, 일양, 웅마, 고려, 성화기업, 동진특송, 천일, 대신, 경동, 합동, 협동조합) 및 우체국 물량 기준